

제 출 문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 EU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6. 12.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사업』에 관한 용역 중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2차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연구진

〈연구 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진 병 진 (책임연구원)

〈연구진〉

임 병 호 (연구원)

황 정 애 (연구원)

황 정 훈 (연구보조원)

목 차

| | |
|----------------------------|----|
| 제1장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 1 |
| 1. 보고서의 배경 | 1 |
| 2. 보고서의 목적 | 2 |
| 3. 보고서의 성격 | 3 |
| 4. 보고서의 범위 | 4 |
| 5. 보고서의 구성 | 7 |
| 제2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사례분석 | 8 |
| I.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및 특징 | 10 |
| 1. 근거 법령 | 10 |
| 2. 사전심사 대상 | 16 |
| 3. 사전심사 동향 | 44 |
| 4. 주요 특징 | 46 |
| II. EU 사전심사제도 및 특징 | 49 |
| 1. 근거법령 | 49 |
| 2. 사전심사 대상 | 53 |
| 3. 사전심사 동향 | 68 |
| 4. 주요 특징 | 74 |

| | |
|---------------------------|-----|
| Ⅲ. 양국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75 |
| 1. 근거법령 | 75 |
| 2. 사전심사대상 및 특징 | 75 |
| 3. 사전심사의 법적 효력 | 82 |
| 4.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시사점 | 84 |
| | |
| Ⅳ. EU 사전심사 결정사례 분석 | 86 |
| 1. 사전심사 대상품목 선정 | 86 |
| 2. 품목별 EU 사전심사 결정사례 | 89 |
| 가. 식품산업 | 89 |
| 나. 화학산업 | 105 |
| 다. 섬유산업 | 117 |
| 라. 금속산업 | 132 |
| 마. 기계산업 | 159 |
| 바. 전기기기산업 | 180 |
| 사. 자동차산업 | 211 |
| 아. 정밀기기산업 | 223 |
| 자. 생활용품산업 | 243 |

제1장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1. 보고서의 배경

- WTO회원국들은 2001년부터 약 14년간 합의를 거쳐, 2014년 비로소 무역원활화 협정 최종합의문에 서명
 -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은 WTO협정문 부속서 1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다음에 위치하도록 추가
- ‘무역원활화’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WTO 공식의제에 오른 것은 전 세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UNCATD에 의하면 1932년 세계(단순)관세율이 59%였으나, 2001년 기준 선진국 산업별 수입가중 평균관세율은 3.1%, 개도국은 11.0%로 나타남
 - 또한 국제교역에 따르는 각종 거래비용의 규모는 국제교역 총 금액의 약 2~15%로 추정됨
- 무역원활화협정 제3조(사전심사)에 따라 회원국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전심사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¹⁾
 - 제3조 9항에서는 물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과 관련한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 동 협정으로 인하여 FTA협정문에 사전심사 조항이 없었던 협정(한-EFTA, 한-아세안)에는 사전심사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관세당국 및 수출입자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 규정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 및 이를 활용한 통관장벽의 제거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임

1)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조건: WTO회원국의 2/3이상(108개국) 수락시 발효. 2016년 6월 24일 현재 총 84개국 수락

2. 보고서의 목적

-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분석보고서 (이하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수출시 발생하는 통관상의 문제점의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작성되었으며, 2016년 현재 총 4번째 보고서로서 작성됨
- 보고서는 FTA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통관사례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분석의 범위 및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상이함이 존재



- 2013년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총 9개 FTA협정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제시한 통관애로민원 현황을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3개의 카테고리 로 구분하여 분석함
- 2014년에는 통관애로민원 현황분석을 지속하고, FTA체약상대국이 협정 문상 국내법 위임사항을 자국내에서 적절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함

- 2015년은 한-아세안 FTA의 주요 통관애로사항인 원산지증명서 서명·인장문제의 해결에 주목함.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서명을 아세안 당사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명·인장의 통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와 동시에 품목분류 상이사례를 통관애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이전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와 해외의 통관애로 상이사례 100건을 선정 함

3. 보고서의 성격

- 2016년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현재까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나, 보다 실무적인 활용도를 위하여 최근(2015년)의 사전심사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1. 현재까지 통관애로분석보고서는 수출자가 직접 애로사항을 보고하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후조치의 성격이 존재
2016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체결상대국 사전심사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애로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짐
2. 2016 통관애로보고서에는 사전심사사례 분석을 통하여 수출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출통관하고자 하는 수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성격을 가진**
이를 위해서 사례물품의 구체적인 설명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통관할 물품이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국이 통관시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산업별로 구분, 정리하였음

4. 보고서의 범위

- 2016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FTA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분석을 범위로 함
 -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로, FTA와 관련성이 깊은 분야인 '사전심사'와 '통관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을 보고서의 범위로 한정
 - (사전심사) 주로 미국과 EU의 사전심사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사례요약, 주요쟁점, 동일·유사사례, 수출자 시사점을 제시함
 - 특히 FTA 원산지과 관련한 통관애로의 해결에 주목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 문제와 관련한 사전심사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통관규제) 사전심사 대상물품 산업관련 통관규제에 대한 조사
- 일반적으로 무역장벽(Trade Barrier)은 관세장벽(Tariff Barrier)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구분
 -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이외의 장벽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는 다르게 정의
 - 가장 대표적인 분류방식 중 1970년에 발표된 볼드윈의 분류방식은 12개 카테고리로 '지역적 영업관행', '제한적인 이민정책', '선별적 통화통제 및 환율 정책' 등 국가 내부 정책이 다수 포함
 - UNCTAD는 비관세장벽을 7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수량, 금융, 가격통제조치가 가장 무역제한적이고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판단하여 이 3가지를 핵심비관세장벽(core non-tariff barriers)으로 규정
 - GATT/WTO는 비관세장벽을 6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체계는 특정 장벽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사용
 -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NTE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총 10개의 카테고리로 무역장벽을 분류함

< 표 > 무역장벽의 분류

| 구분 | 볼드윈 | UNCTAD | WTO(GATT) | 주요국 | | |
|-------------|---|-----------------|-----------------------|------------------------|----------------------------|--------------------|
| | | | | 미국 | EU | 일본 |
| 세금차별 | 선별적 간접세 | | | 수입정책 | 관세 이외 세금 | |
| 수입허가 | | 자동허가조치 |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 | | 수입감시 | |
| 수량규제 | 쿼터, 국영무역정책 | 수량통제 | | |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량규제 | 수량규제 |
| 통관절차 | 무역계약적 통관절차 | |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 | 등록, 서류, 통관절차 | |
| 무역구제법 | 반덤핑 규제 | | | | 반덤핑 등 무역구제법 | |
| 가격통제 | | 가격통제정책 | | | 최소수입가 | |
| 독점행위 | | 독점적 조치 | | 독점방지관행 | 국영무역기업 수입카르텔 | |
| 기술장벽 | 행정 및 기술규제 | 기술조치 | 제품기준 |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 (환경포함) | 표준 및 기술적 요건 | 표준, 적합성평가 원산지규정 |
| 수출제한 | 수출세 | | | | 수출제한 | |
| 정부보조 | 수출보조금 선별적 국내보조금 | | 정부관여 | 수출보조금 | 보조금 | |
| 정부조달 | 차별적 정부조달 | | | 정부조달 | 정부조달 | 정부조달 |
| 투자장벽 | 외국인 투자 제한 | | | 투자장벽 | 투자관련조치 | 무역관련 투자규정 |
| 지적재산권 | | | |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 지재권 관련조치 | 지재권보호 |
| 서비스업 제한 | | | | 서비스업 장벽 | | 서비스교역 |
| 전자상거래 제한 | | | | 전자상거래 장벽 | | |
| 기타 | 지역적 영업관행, 제한적 이민정책, 선별적 통화통제 | 금융통제정책, 기타조치 | 가격규제, 기타규제 | 기타 | 로컬콘텐츠 규정 수입밸런싱 규정 | 차별관행 |

자료: 비관세장벽 포털(<http://www.ntb-portal.or.kr>)

- FTA 원산지규정 및 이와 관련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은 기존의 무역장벽 분류기준상 적절한 분류기준이 없는 상태이나, 미국 및 WTO는 통관절차 또는 수입정책 카테고리 구분
 - 미국의 NTE보고서의 경우 '수입정책(Import Policy)'카테고리에 원산지 및 원산지 검증 관련사항을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함
 -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는 특혜관세율 인하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나, 기준 자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법령 및 통관관행 등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며,
 -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역시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비관세장벽 제거의 일환으로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통관애로 해결방안은 크게 정부당국간 비관세장벽 철폐의 합의, 또는 무역거래 당사자의 통관애로 사전예방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무역장벽 중 하나인 통관애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해당 통관애로가 발생하는 정부당국의 규제를 관련당국 간의 협의와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임
 - 이러한 시도는 장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해결 불가
 -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 규정된 무역장벽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통관 전 또는 이후에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2016 통관애로분석 보고서는 상기 중 두 번째 방안의 일환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순응하여 통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거래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보고서의 구성

- 조사대상을 통관애로 물품 기준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산업, 기계산업, 전기산업, 자동차부품, 정밀기기산업의 7개 산업으로 구분
 - 각 산업별로 산업동향 분석, 통관규제 현황, 사전심사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의 순서로 목차를 구성
 - 산업동향 분석에서는 7대 산업의 개괄과 우리나라 및 체약상대국의 생산동향, 수출동향을 조사하였음
 - 통관규제 현황에서는 7대 산업에 속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준수해야 할 통관규제를 요약 정리하였음
 - 사전심사사례분석 및 대응방안은 다시 품목분류사전심사, 원산지결정기준사전심사 및 기타(재수입 면제)로 구분됨
 - 각 사전심사별 실제 우리나라 수출자가 신청한 사전심사사례를 요약 번역·정리하였으며,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우리나라 사전심사사례와 비교하였음. 또한 사례분석 후 우리나라 수출자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향후 수출시 통관애로 사전예방을 도모함

제2장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사례분석

I.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및 특징

II. EU 사전심사제도 및 특징

III. 양국 비교 분석 및 시사점

IV. EU 사전심사 결정사례 분석

I.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및 특징

1. 근거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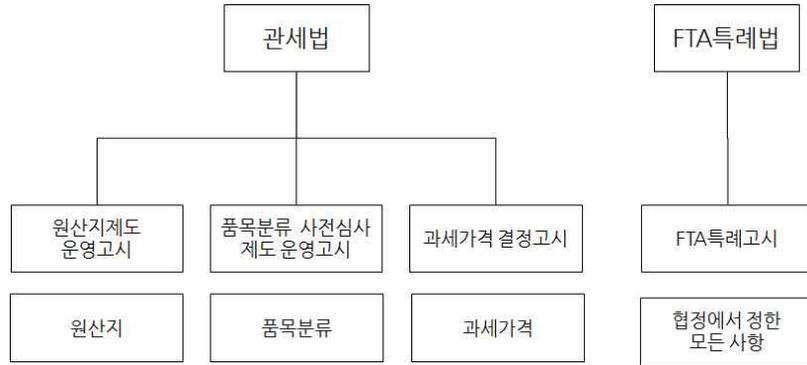
가. 개요

- 사전심사(advance rulings) 제도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수입자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세관당국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신고 전 물품에 대한 세율, 원산지 지위, 과세가격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음으로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있음
-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심사제도로 구분
 - 원산지의 경우 관세법과 FTA특례법 모두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 FTA 특례법의 경우 각 협정에 대한 특혜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원산지 결정인 반면, 관세법의 원산지 규정은 FTA를 제외한 특혜 및 비특혜 규정에 적용
 - FTA 특례법의 사전심사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제도로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음
 - 또한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이외에도 품목분류와 과세가격결정을 위한 사전심사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표 >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의 비교

| 구분 | 관세법 | | | FTA특례법 |
|-------|--|--|---|--|
| | 품목분류 | 원산지 | 과세가격 | FTA 원산지 등 |
| 근거 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87조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 관세법 제37조 | FTA특례법 제31조 FTA특례법 시행령 제38조 |
| 고시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 |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고시 |
| 신청자 | 수출입자, 제조자, 관세사 등 | 수입자 | 납세신고인 | 계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와 그 대리인, 수입자 |
| 심사 대상 | 신청물품의 품목분류 | 1.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 등 2.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 기초가 되는 사항 | 1. 법정가산요소 2. 1방법 배제요건 3.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 1.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 2.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원가결정 3. 제조과정 부가가치산정 4. 관세의 환급, 감면 5. 원산지 표시 6.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
| 심사 기간 | 신청일부터 30일 (FTA 검증확인 등 필요시 15일) | 신청일부터 60일 | 가산요소, 공제요소, 1방법 배제요건 등 : 1월 특수관계자간 결정 : 1년 | 신청일부터 90일 |
| 변경 사유 | 법령개정, 품목분류 체계수정, 허위자료 제출 등 (허위자료, 유리한 경우 등 소급적용) |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허위자료, 누락 등 신청인 귀책사유시 소급적용) | 법령개정, 거래관계 법령 |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소급적용 불가, 적용 유예 가능-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

< 그림 > 우리나라 사전심사 관련 법 체계



나. 관세법상 사전심사 제도

- 관세법상에는 품목분류, 원산지와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까지 규정하고 있음
 - 적용 법령을 살펴보면, 품목분류의 경우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원산지 사전심사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과세가격결정의 경우 「관세법」 제37조²⁾ 에서 각각 규정
-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 원산지확인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심의 가능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관세법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함³⁾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 관세분야는 ACVA, 내국세 분야에서는 APA가 있음

3)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관세심사위원회는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 과거 감면물품의 사전심사를 위한 ‘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는 2014년 10월 30일자로 폐지됨
 - 감면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세청장 고시 형태로 2001년에 도입되었으나, 이용 실적이 전무⁴⁾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폐지됨
 - 관세행정상 불필요한 제도 운영에 관하 고시를 폐지하여 고시 유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시를 폐지함
 - 이에 따라 감면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한-미 FTA협정문에 따라 시행되는 FTA특례법상의 사전심사만 남게 됨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4) 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 운영 고시 폐지 제정요약서(2014. 10. 30)

다. FTA특례법상 사전심사 제도

- 협정문을 근거로 한 FTA특례법에서도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와 관련한 사전심사 제도를 규정
 - FTA특례법에서 특혜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제도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환급·감면, 원산지표시, 쿼터 등 포괄적 범위에 관하여 사전심사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는 2013년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WTO의 범주에 속하는 지역무역협정인 FTA협정에도 무역원활화 협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FTA 특례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사항이 모든 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FTA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만 특례법상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야 함
 - 현재까지 체결한 FTA 협정중, 대부분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협정으로는 한-EFTA FTA가 있음
- 각 협정별 규정은 대부분 FTA 특례법에 수용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됨
 - 다만, 일부 규정에 한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정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세부적 사전심사 적용범위가 협정별로 구분되므로, 사전심사 신청시 신청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심사에 관한 제도는 모든 협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 표 > WTO 무역원활화 협정 사전심사 적용대상

| 품목분류 | 관세평가 | 원산지 | 관세감면 | 관세할당 |
|------|------|-----|------|------|
| 의무 | 권고 | 의무 | 권고 | 권고 |

- 품목분류와 원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협정별로 상이함
 - 한-미 FTA의 경우 모든 분야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관세평가와 환급·감면에 있어서는 협정별로 확인이 필요

< 표 > FTA 협정별 사전심사 적용대상

| 협정명 | 근거 조항 | 원산지 | 품목 분류 | 관세 평가 | 환급 감면* | 원산지 표시 | 쿼터 |
|------|-----------------|-----|-------|-------|--------|--------|----|
| 칠레 | 제5.9조 원산지 사전 관정 | ○ | ○ | ○ | ○ | X | X |
| 아세안 | 제4조의 2 사전심사 | ○ | ○ | ○ | X | X | X |
| 싱가포르 | 제5.8조 사전관정 | ○ | ○ | ○ | X | X | X |
| 인도 | 제5.8조 사전심사 | ○ | ○ | ○ | X | X | X |
| EU | 제6.6조 사전심사 | ○ | ○ | X | X | X | X |
| 페루 | 제5.7조 사전심사 | ○ | ○ | X | X | X | X |
| 미국 | 제7.10조 사전심사결정 | ○ | ○ | ○ | ○ | ○ | ○ |
| 터키 | 제3.8조 사전심사 결정 | ○ | ○ | X | X | X | X |
| 콜롬비아 | 제4.9조 사전심사 | ○ | ○ | ○ | X | X | X |
| 호주 | 제4.7조 사전심사결정 | ○ | ○ | ○ | X | X | X |
| 캐나다 | 제4.10조 사전심사 결정 | ○ | ○ | ○ | ○ | X | X |
| 뉴질랜드 | 제4.9조 사전심사 | ○ | ○ | X | X | X | X |
| 베트남 | 제4.10조 사전심사 | ○ | ○ | ○ | X | X | X |
| 중국 | 제4.10조 사전심사 | ○ | ○ | X | X | X | X |

*환급감면에는 재반입에 따른 무관세 대우자격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포함한다.

- 또한 사전심사서 발급기한도 FTA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
 - 협정문에서 별도로 발급기한을 규정하지 않는 협정이 대부분이나, 일부 협정에서는 구체적 발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 칠레 90일, 싱가포르 90일, 페루 120일, 미국 90일, 콜롬비아 90일, 베트남 90일, 뉴질랜드 (품목분류 40일, 원산지 90일)
 - 그러나 FTA특례법상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으로 발급기한을 규정하여 90일 이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전심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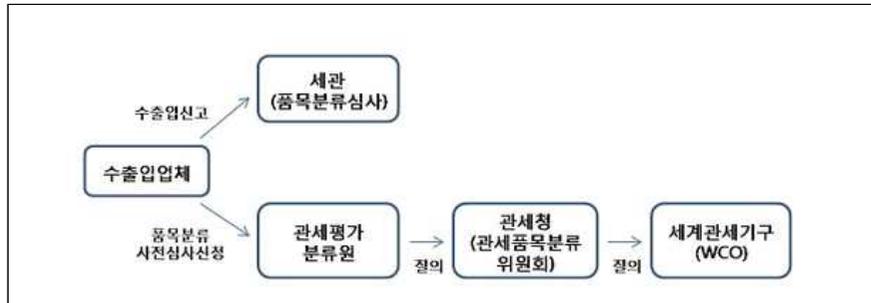
- 본 절에서는 사전심사의 대상을 크게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그리고 FTA특례법 사전심사로 구분하여 살펴봄
- 관세법에서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에 관한 고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반면, FTA특례법 사전심사는 FTA특례고시를 두어 통합적으로 운영 중

가. 품목분류

1) 개요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자 · 관세사 · 관세사 법인 · 통관취급법인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심사받는 제도
- 신청한 당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품목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세액부담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완화 가능

<그림> 품목분류 결정 절차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품목분류 결정 내용이 그 성격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통관 전에 품목분류를 확정하기 위한 것
-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문구에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결정함

- 사전심사서를 받은 물품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결정내용이 사전심사서 발급 이후부터 적용됨
-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와 FTA특례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음
- 세율확인을 위한 품목분류로서 관세법 및 해당 고시⁵⁾에 근거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FTA적용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물품 및 원재료 품목분류는 특례법 및 특례고시⁶⁾에 근거하여 신청 가능
 - 품목분류를 위한 사전심사제도로서 목적은 동일하나, 신청양식과 발급기한, 수수료 등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2) 신청(관세법 제86조)⁷⁾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과 건본 및 기타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번호를 정하여 신청인 및 통관예정 세관장에게 그 내용, 설명자료, 건본을 통보하고, 결정내용을 고시함
-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 가능
-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 · 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관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 FTA적용을 위한 품목분류는 원산지 사전심사에서 설명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 | 처리기한 15일/30일 | |
|---|---|---|-----------|
| ① 신청인 구분 |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input type="checkbox"/> 수출 제조자 | ② 수출입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수입 | |
| 신청인 | ③ 회사(업체)명 | ④ 대표자 성명 | |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⑥ 관세사부호 | |
| | ⑦ 주소 +1000-0000 | ⑨ 전화 번호 | |
| | ⑧ 담당자 성명 | ⑩ FAX 번호 | |
| 수출입자등 | ⑩ 휴대폰번호 | ⑬ 처리과정수신방법 <input type="checkbox"/> 이메일과 SMS <input type="checkbox"/> 통보안함 | |
| | ⑫ 전자 메일 | ⑮ 담당자 성명 | |
| | ⑭ 수출입업체명 | ⑯ 전화 번호 | |
| | ⑰ 사업자등록번호 | ⑲ 전자 메일 | |
| 신청물품 | ⑱ 홈페이지 | ⑳ 상 호 | |
| | ⑳ 홈페이지 | ㉑ 홈페이지 | |
| | ㉒ 품 명 | ㉓ 품 명 | |
| | ㉔ 모 델 | ㉕ 규 격 | |
| 기타 | ㉖ 원 산 지 | ㉗ 거 래 가 격 | |
| | ㉘ 물 품 설 명 |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읍지)에 기재 | |
| | ㉙ 검 토 품 목 번 호 | ㉚ 통 관 예 정 세 관 | |
| | ㉛ 신 청 사 유 | <input type="checkbox"/> 세율·세액 확인 <input type="checkbox"/> 관세환급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요건 확인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기타 | ㉜ 신 속 심 사 요 청 사 유 | <input type="checkbox"/>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input type="checkbox"/>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 |
| | ㉝ 건 본 제 출 여 부 | <input type="checkbox"/> 제 출 <input type="checkbox"/> 건 본 반 환 <input type="checkbox"/> 반 환 불 요 <input type="checkbox"/> 반 환 요 | |
| | ㉞ 결 과 비 공 개 (제10조제1항 제1호에 한함) | 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규·계획단계물품 <input type="checkbox"/> 성분·제조비법 물품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 |
| | ㉟ 수 수 료 | 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품목당 W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 |
|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 | |
|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p>※ 필수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서식 읍지 <p>※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적조사나 불법(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절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물품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영우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확인 과정 중에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는 1품목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임박,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상 등 신속한 품목분류사전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사유기재와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할용품))

3) 결정 및 적용(관세법 제86조 및 동법 영 제106조)

-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며,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5일로 함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면서 통관예정지의 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설명자료와 함께 송부해야 함
- 관세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사전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
 - 그러나 재심사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함
-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할 의무가 있음
 -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통지한 물품과 같을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함

4) 재심사 및 변경(관세법 제86조)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① 관계법령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② 품목분류체계 변경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③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는 경우
 - ④ 재심사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5) 유예기간(관세법 제86조 제5항의1)

- 유예기간(period of grace)이란 재심사 등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선의의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변경된 사전심사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임
 -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각 국은 자국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번호가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 적용이 가능

6) 소급적용(관세법 제86조 제5항의2)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리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함

- ①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 단, 법령의 개정이나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②에 따른 소급적용을 할 수 없음
- 기타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은 관세법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 정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제외한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업무에 적용하는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7)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변경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 임명하는 자가 될 수 있음

다. 원산지⁸⁾

1) 개요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과 FTA특례법 양쪽에 모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관세법에서는 TNDC, APTA 등 FTA를 제외한 특혜세율의 적용 및 비특혜 원산지 사전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FTA특례법에는 FTA특혜적용을 위한 사전심사를 규정
 - ①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
 - ② 조약 또는 협정 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 ③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구체적 원산지 사전확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①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 ② 아태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 ③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 ④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관세
 - ⑤ 기타 특혜관세 적용

8)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에 근거한 원산지 사전심사

⑥ 원산지표시 대상여부

2) 신청(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

-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①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 ②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 ③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 ④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 신청인은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현품(사진) 등 참고자료를 붙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청⁹⁾
 -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9)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본부 및 직할세관장에 위임.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1. 상호 | | | 2.대표자 | | |
| | 3. 주소 | | | | | |
| | 4. 담당자 | | 5.전화번호 | | 6.이메일 | |
| 7.제조자 /수출자 | | | | | 8.적출국 | |
| 9. 수입예정품명 | | <input type="checkbox"/> HS <input type="checkbox"/> 품명 <input type="checkbox"/> 규격 | | | | |
| 10. 수입예정시기 | | | | 11. 수입통관예정세관 | | |
| 12.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사유 | | | 13. 신청 원산지 | | | |
| ①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input type="checkbox"/> ② 아태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input type="checkbox"/> ③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input type="checkbox"/> ④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관세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특혜관세 적용() ⑥ 원산지표시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 | | | | | |
| 14. 원산지 확인기준 | | | | | | |
| <input type="checkbox"/> 완전생산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번변경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기준(외국원재료공제법, 역내누적법) <input type="checkbox"/> 가공공정기준 <input type="checkbox"/> (공정:) <input type="checkbox"/> 단순가공 제외 기준 <input type="checkbox"/> | | | <원산지확인 충족을 위한 기초사항>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구성 원재료의 인정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원재료 가격산출의 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기초사항 <input type="checkbox"/> | | | |
| 15. 신청내용 설명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 | | |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제1항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관 세 청 장 귀하 | | | | | | |
| 첨부서류 1. 견본(규격별) 각 점 2. 공정내역 설명서 3. BOM(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 | | | | | |

3) 결정 및 적용(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 제2항)

-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사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 신청사항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 원산지 사전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해서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음
- 세관장은 수입신고 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

4) 재심사 및 변경(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 제4항)

-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
 - 이의제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관세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의 변경 발생시 사전심사 적용 불가

- 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 변경가능
-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함.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

5) 유예기간

- 원산지 사전확인서의 변경으로 인한 적용 유예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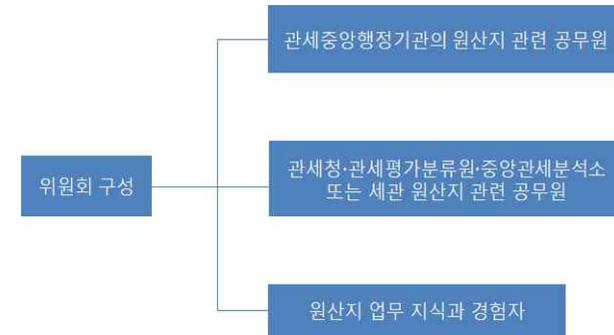
6) 소급적용(원산지운영고시 제45조 제3항)

- 사전확인서를 받은 물품과 그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전확인서는 사용이 불가함
- 또한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

7) 원산지확인위원회(원산지운영고시 제52조)

- 원산지사전확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원산지확인위원회를 설치
- 원산지확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그림 > 원산지 확인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 가능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 간사는 관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1) 개요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란 납세신고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과세가격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는 관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FTA특혜협정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기준 적용 및 원재료 가격에 관한 사전심사는 FTA특례법에 근거를 둠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는 신청 대상에 따라 일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로 구분함
 - 특수관계의 정의는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사전심사 규정을 둠
 -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① (가산요소)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에 의문이 있을 경우
 - ② (제1평가방법 배제요건)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경우, 해당 물품의 거래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여부,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지 궁금한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 ③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 표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심사 대상

| | |
|-----------------------|---|
| 심사대상 | 가산요소 |
| |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산정 시 가감 금액 |
| |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 제한 여부 |
| | 물품의 거래성립 또는 가격결정에 금액 계산 불능 조건 혹은 다른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
| | 물품 수입 이후 전매처분, 사용 수익 일부의 판매자 직간접 귀속 여부 |
| |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특수관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

2) 신청(관세법 제37조 및 과세가격결정고시 제53조)

□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며,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해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사전심사 신청서,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서류들

[별지 제12호 서식]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일반용】 | | | |
|---|------------------------------------|------------|-------|
| 신청인 | ① 상호 | | ② 대표자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④ 수입 예정 물품 | | | |
| ⑤ 수입 예정 시기 | | ⑥ 통관 예정 세관 | |
| 신청내용 |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 금액 | | |
| |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에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 | |
| |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⑥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 | | |
| 「관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3) 결정 및 적용(관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도 통보해야 함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류가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 가능
 - 신청인은 보완자료를 해외로부터 수집하거나 번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을 신청 가능
 - 또한 신청인이 해당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 신청 반려 가능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대로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 단, 사전심사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야 되고, 사전심사인의 신청내용과 동일하며,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어야 함
- 세관장은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면제 가능

4) 재심사 및 변경(과세가격결정고시 제58조 제2항)

-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사전심사 신청을 준용함
-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

를 받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해야 함

5) 유예기간

- 과세가격 결정방법 변경에 따른 사전심사변경시 적용될 수 있는 유예기간에 관하여 규정된 것은 없음

<표 > 일반물품 및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비교

| 구분 | 일반수입물품 사전심사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사전심사(ACVA) |
|---------|--|--|
| 심사대상 | 일반 수입물품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
| 심사기간 | 1개월 | 1년 |
| 시행시기 | '90.12.31 | '08.1.1 |
| 신청자격 | 국의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 한국 소재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자 |
| 심사절차 | 일방 결정 | - 납세자와 협의 - 납세자의 동의 |
| 심사담당 |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분류원 ※ACVA사전심사반 별도구성 |
| 주요 심사사항 | -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 공제요소의 확인 -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제한, 사후귀속 이익, 특수관계 영향여부 확인)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 서 정한 사항을 사전심사 |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신청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의 타당성 여부 -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 과세가격적정성여부 ※ APA승인 또는 신청내역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
| 사후관리 | 보고의무 없음 | 연례보고서제출 |

자료 : 관세청

라. FTA 특례법상 사전심사

1) 개요

- FTA별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원산지 등의 충족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업체에게는 사전심사를 이용하는 것이 FTA 특혜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
- FTA특례법상 사전심사 대상은 원산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협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포함함
 - 관세법과는 달리 품목분류, 원산지, 재료의 가치 등 협정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은 FTA특례법상 사전심사 제도를 통하여 미리 결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과 FTA특례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예를 들어,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인 경우, 신청인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 FTA특례법상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특례법 제31조 및 동법 영 제37조)

-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 신청 가능
 - FTA특례법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
 -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대상은 다음을 말함
 1.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3.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6.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관세법과 달리 신청인은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하므로, 계약상대국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원산지사전심사 제도 신청 가능

< 표 > FTA특례법상 사전심사 대상

| 심사 신청자 |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 및 그 대리인 | 비고 |
|--------|-----------------------------------|------------|
| 심사 대상 |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협정에 따라 구분됨 |
| |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
| | 당해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
| |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 |
| | 관세감면의 적용여부 | |

- FTA특례법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물품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해야 함

3) 결정 및 적용(특례법 제31조 및 동법 영 제37조)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함

- 사전심사기관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함
- 그러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관세청장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 할 수 있고 보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가 가능
-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
 - 종전 FTA특례법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이 3년이었으나 2013년 규칙 개정으로 기간 제한이 삭제
-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의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가능
- FTA사전심사를 통해 원산지를 인정받은 물품의 경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FTA 특혜적용을 신청 할 수 있음

4)재심사 및 변경(특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 수출입업자의 납세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결정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사전심사서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능
 - 이의제기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 서류는 이의제기 신청서,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전심사서 사본.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사전심사

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들을 포함

< 표 > 이의제기 신청서류 및 기재사항

| | |
|------|------------------------|
| 신청서류 | 이의제기신청서 |
| |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사전심사서 사본 |
| 기재사항 |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 |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
| |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
| |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 사전심사서를 교부한 이후 사전심사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내역이나,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의 변경, 철회가 가능

- 사전심사내용의 변경 또는 철회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 부가가치비율 등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 쟁송의 결과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

< 표 > 사전심사 변경 및 철회 사유

| | |
|-----------|---|
| 변경 및 철회사유 |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 |
| | 품목분류 등이 변경 |
| | 부가가치비율 등 산정에 착오 |
| |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착오 |
| | 쟁송의 결과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름 |

□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

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변경 이유 및 법적근거,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목록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등을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

5) 유예기간(특례법 시행령 제40조)

□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면,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수입자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함

○ 사전심사 신청인이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일정기간 변경내용 적용을 유예함

○ 그러나, 변경적용의 유예는 모든 협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 사전심사서 변경일로부터 다음의 기간 범위 내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 할 수 있음

1. 칠레: 90일
2. 싱가포르: 60일
3. 캐나다: 90일

6) 소급적용(특례법 제32조)

□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

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함

7) 위원회(FTA특례고시 제52조)

사전심사기관장은 다음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사 처리 가능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사전심사신청서

처리기간 90일

| 사전심사 신청서 | | | | |
|--|---|----------|---|------|
| 1. 신청인 |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small>(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small> | | | |
| 2. 수입자 | <small>(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small> | | | |
|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 <small>(알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small> | | | |
| 4. 신청물품 | | | | |
| 품 명 | HS번호(6단위) | 조정가격(\$) | 물품 설명 <small>구성, 생산과정, 용도 및 건본(가능한 경우)</small> | |
| 5. 원재료 내역 | | | | |
| 원재료 품명 | HS번호(6단위) | 가격(\$) | 원산지(결정근거) | 생산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6. 사전심사 신청내용 | | | | |
| ①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②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③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④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또는 물품의 조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⑤ 중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⑥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처리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세 기재) | | | | |
| 7. 물품의 법적지위 | | | | |
| <small>(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설명자료 첨부)</small> | | | | |
| ① 원산지 검증 <input type="checkbox"/>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input type="checkbox"/>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input type="checkbox"/> ④ 사전심사요청 <input type="checkbox"/> | | | | |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된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 | | |
| 신청인 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 | | | |
|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 | | | | |

※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다른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사전심사 동향

가. 사전심사 신청

-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2011년 2,618건에서 2015년 6,6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과세가격 사전심사 역시 42건에서 1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반면,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5년째 한 자리 수준에서 정체로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10월) |
|------|-------|-------|-------|-------|-------|---------------|
| 과세가격 | 42 | 60 | 72 | 168 | 136 | 105 |
| 품목분류 | 2,618 | 5,207 | 6,413 | 6,665 | 6,681 | 6,828 |
| 원산지 | - | 8 | - | 4 | 2 | 4 |



자료: 관세청

- 2012년 3월은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으로서, 2012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증가는 한-미 FT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나. 사전심사 지수

- OECD에서는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지표(Trade Facilitation Indicator, 이하 TFI)를 개발하여, 주요국의 TFI 지수를 공표함¹⁰⁾
- TFI는 총 12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사전심사는 TFI(c)로서 표기됨
- TFI(c) 사전심사지표(Advance Ruling Indicator)는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됨
 - OECD는 회원국 관세당국의 각 지표에 따른 응답수준(Answer)에 따라 0점~2점을 부여하여 총 20점을 산정

| ID | 코드 | 사전심사 지표 |
|----|------|---|
| 24 | C.24 | Issuance of advance rulings |
| 25 | C.25 |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tariff classification |
| 26 | C.26 |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origin |
| 27 | C.27 |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total) |
| 28 | C.28 |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advance ruling is valid (duration) |
| 29 | C.29 | Publication of average issuance time |
| 30 | C.30 | Percentage of advance rulings issued within the published time period |
| 31 | C.31 | Publication of advance rulings of general interest |
| 32 | C.32 | Possibility to request a review of an advance ruling or its revocation / modification |
| 33 | C.33 | Refusal to issue or revocation of advance ruling are motivated |

자료: OECD

- OECD의 사전심사 지표로 우리나라 무역원활화 사전심사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우수(2점)항목으로서는 사전심사 발급여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

10) OECD는 사전심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전심사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OECD 각국의 사전심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

수, 재심사 가능성 등이 있음

- Issuance of advance rulings
-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tariff classification
- Publication of advance rulings of general interest
- Possibility to request a review of an advance ruling or its revocation / modification
- Refusal to issue or revocation of advance ruling are motivated
- 보통(1점)항목으로서는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 평균발급기간, 기간 내 발급비율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Number of advance ruling requests on origin
 - Publication of average issuance time
 - Percentage of advance rulings issued within the published time period
- 미흡(0점)으로 평가된 항목으로는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3년)이 있음
 -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advance ruling is valid (duration)

4. 주요 특징

- WTO TFA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전심사제도 구축
 - WTO FTA는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세감면에 관한 사전심사 사항을 권고 사항으로 규정
 -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으로서 이미 모든 종류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FTA협정 체결 수의 증가에 따라 FTA협정문에도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대부분의 협정에 사전심사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협정의 경우 사전심사조항이 없으나 추가협상 등을 통하여 사전심사조항을 삽입·개정하고 있음¹¹⁾

11)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5년 개정협상을 통하여 사전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관세법과 FTA특례법으로 이분화된 사전심사 시스템

-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상의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와 FTA특례법상의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로 구분됨
 - FTA특례법상의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에는 원산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품목분류, 부가가치기준, 관세감면, 수량적용 등 다양한 부문의 사전심사를 포함함
 - 다만, 관세법상의 원산지는 비특혜 및 일반특혜 사전심사를, FTA특례법상 사전심사는 FTA특례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
- 이분화된 사전심사 시스템으로 인하여 제도이용 목적상 중복성이 존재하며, 사전심사 신청인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사전심사제도가 하나의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고 두 개의 법령 및 다수의 고시에 규정됨에 따라 신청인은 적용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존재함
- 품목분류 결정기간 30일, 과세가격 결정방법 1월, 일반특혜 원산지 결정기간 60일, FTA특혜 원산지 결정기간 90일 등 파편화된 법 규정
 - 상이한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각 사전심사별 결정기간과 유효기간에 차이가 존재함
 - 이로인한 피해는 사전심사 신청인이 미리 법령과 신청방법 및 결정기한 등을 숙지한 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낮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건수
 - 우리나라 사전심사 신청동향 분석결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최근 5년 내 한자릿수 신청 건수를 기록
 - 2015년 기준 품목분류 6,681건, 과세가격 136건, 원산지 2건으로 나타남
 - 낮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FTA활용률에도 영향을 미침
 - 원산지 확인이 안된 상태로 통관되면, 추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협정관

세 배제 및 관세추징 등 리스크가 존재

- FTA특례고시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FTA활용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II. EU 사전심사제도 및 특징

1. 근거법령

가. EU의 법 체계¹²⁾

- 리스본 조약에 따라 복잡한 형태의 법 규범 대신, 입법행위와 비입법행위간 구분이 명시됨
- EU의 법규범은 규정(regulations), 지침(directives), 결정(decisions), 권고(recommendations), 의견(opinions)으로서, 결정의 경우는 객체를 특정하지 않을수도 있음.(TEU 제288조)
- 상기 5 종류의 법규범은 입법행위일 수도 비입법행위일 수도 있는바, 동 구분은 채택절차에따름.
- 입법행위
일반 입법절차 또는 특별 입법절차에 따른 채택(TFEU 제289조)으로, 일반 입법절차는 공동결정절차, 특별입법절차는 이사회의만장일치 및 경우에 따라 유럽의회와의 협의 또는 유럽의회 동의 요건이 추가되며, 기타 passerelle clauses에 따른 일반입법절차의 변형 형태의 입법행위도가능
- 비입법행위
 - 비입법절차에 따라 채택되는 규범으로서 다음이 해당
 - i) 조약의 특별 규정에 따른 채택,
 - ii) 입법행위의 비핵심요소 보완 또는 개정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부분내에서의 위입행위,
 - iii) EU법의 통일된 적용을 위한 집행위 또는 이사회의 이행행위 (implementing acts)

12) 리스본 조약에 따른 EU법 체계 변화. 2010.

나. UCC Regulation 952/2013

- 2013년 10월 유럽의회(EU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는 새로운 EU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EU) No 952/2013」을 관보에 공포함¹³⁾
 - 이로서 기존의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 CCC)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해놓고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세관현대화법률(Modernized Customs Union; MCC)¹⁴⁾은 폐지
 - 또한 「Regulation (EEC) No 3925/911」, 「Regulation (EEC) No 2913/92」(Community Customs Code; 유럽관세법), 「Regulation (EC) No 1207/20012」는 2016년 5월 1일자로 폐지함
 - 다만 2013년 발효시에는 UCC의 기본골자만 밝혔으며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규정은 2016년까지 유보함
 - 새로운 EU관세법이 발효된 날(2013년 10월 30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법령(delegated and implementing acts)을 채택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
 - 2015년 7월 28일 EU집행위는 UCC 세부 집행 규정을 2016년 5월 1일까지 완비하기로 함으로써, 2016년 5월 1일부터 UCC의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천명¹⁵⁾
 - 이에 따라 UCC의 전면적인 시행은 2016년 5월1일부터임
- UCC 주요 개정사항
 1. BTI, BOI 유효기간 단축 6년에서 3년(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최신기술 발달 속도를 반영함)
 2. 유효한 BTI 및 BOI 소지자는 신고서에 당해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13) [KOTRA]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14) Regulation (EC) No 450/2008. EU 회원국 세관당국과 수출입 기업체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라 EU 집행위에 집행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의 간소화,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등을 사유로 그 적용이 연기되어 왔음

15) 2013년 10월 UCC 발효 당시에는 세부 집행 규정 제정을 통한 전면 시행을 2016년 6월 1일부터 예정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1달을 앞당기기로 최종 결정한 것임.

3. 동종물품(one type of goods)의 개념 삽입(유사한 특징을 지닌 물품으로서 품목분류와는 관계없는 물품)

4. 발급기한 한정(기존에는 발급기한이 없었으나 120일로 한정)

다. 위임규정

- EU회원국간이 통일된 EU관세법 집행을 위하여 이행위원회(EU Commission)에 위임규정의 제정권 등을 채택하도록 하였음
 - UCC에서는 대부분의 세관절차에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함
 - EU 전체에 적용되는 세관행정을 EU집행위에 위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행규정(IA)과 위임규정(DA)는 EU집행위에서 제정
 - UCC 제2조에서 “EU 집행위는 세관신고, 역내물품 또는 역외 물품의 증명, 역내물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역내 환적절차의 이용에 대한 위임법령(delegated acts)의 제정권을 위임받음”을 규정
- 위임행위와 실행행위는 비입법행위로서 입법행위(UCC)의 비 본질적 요소를 보충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음¹⁶⁾
 - 다만 위임행위에 대해서는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의 철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 발생
 - 실질행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유럽연합의 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이 권한을 가지나, 통일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채택권한을 가짐
- UCC에 규정된 사전심사 사항은 EU 28개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사항임
 -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규정(Implementing Act Regulation 2015/2447 및 Delegated Act Regulation 2015/2446)을 두고

16)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4권 제4호.

있음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¹⁷⁾
- EU를 대외적으로 대표(TEU 제17조1항)하여 EU법 이행을 감시함(TEU 제17조1항)
 - 입법 발의권을 독점(TEU 제17조2항)
 -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선출,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임명함(TEU 제17조7항)

2. 사전심사 대상

1) 개요

- EU의 사전심사제도는 크게 품목분류 사전심사(BTI)와 원산지 사전심사(BOI)로 구분됨(UCC 제33조(1))
- EU는 UCC Regulation 952/2013(이하 UCC)에 의거 EU사전심사제도인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이하 BTI) 및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 이하 BOI)를 운영하고 있음¹⁸⁾
- BTI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로서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며, BOI는 원산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모두 동 법령의 적용을 받음
- 사전심사서 신청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신청시기)BTI BOI는 수출입신고 전에만 가능하며, 통관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사전심사가 소급되어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
 - (신청대상)신청 품목당 하나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신청장소)통관예정인 세관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여러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EU의 특성상, 국가별 BTI 및 BOI에 관한 의견차이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신청인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은 BTI발급 전에는 관련 사항을 질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없음

17) 리스본 조약에 따른 EU법 체계 변화. 2010.

18) EU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Binding Valuation Information) 제도는 없음(Workshop on Advance Ruling for Customs Valuation and Challenges with Transfer Pricing)

2) 신청

① 신청인

□ 품목분류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Applicant)은 당사자(Holder)가 됨

- 신청인은 곧 당사자가 되며, 신청은 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해당 관세당국에 제출되거나 또는 해당 BTI가 사용될 회원국의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UCC 제22조(1))
- 만일 다른 회원국에 소재하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국의 세관은 그 사실을 접수일로부터 7일 내 통지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30일 내에 회신해야 함(IA 제16조(1))

② 기존 사전심사의 확인

□ 사전심사 신청서에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사례 참조여부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을 규정(신청양식 BOX 12)

-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사전심사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신청인이 발급된 사전심사서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함께, 세관에서도 발급된 사전심사서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함

□ 기존 이미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사전심사서가 발급된 BTI 또는 BOI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UCC 제33조(1))

□ 기존 BTI에 대한 확인여부 표시 필요

- 신청인은 신청시 기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BTI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하여야 함. 이러한 신청요건은 다국적 기업들과 같이 동일한 물품을 사전심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삽입되었음.(신청양식 BOX 11)
- 또한 동일한 물품을 다른 신청자가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도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신청양식 BOX 12)

-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러한 모든 사항을 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동 사항을 체크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음

③ 2이상의 신청

□ 동일인이 동일물품에 대하여 2이상의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

- 이러한 경우는 BTI 쇼핑이 의심되는 사례로서, 신청서 자체는 모두 접수될 수 있으나, BTI 사전심사 결정서는 발급되지 않음(UCC 제33조(1)(a))
- 대신 세관은 해당 신청인에 그가 이미 보유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함

- 이러한 경우, 동 사례는 EU위원회에 보고되어 BTI 사례로 집계됨

□ 2인 이상이 동일물품에 대하여 2이상의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서 자체는 모두 접수되며, 2건의 사전심사 신청 모두 발급되어야 함
- 다만, 이들 세관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일관된 사전심사 결정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공동세관등록번호

□ 신청인은 반드시 EORI 번호(공동세관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 신청인은 대리인(Representative)을 지정할 수 있으나, 동 지정인은 EU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EU영역 외부에 소재하는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EORI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EORI를 발급받은 세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⑤ EBTI 시스템

- 일관성 있는 사전심사 및 전자적 기록의 보관을 위하여 EBTI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함
 - EU는 국가들간 일관성 있는 사전심사 및 BTI 쇼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 있음(IA 제16조(4))
 - 위험요소(Risk Indicators)로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 하나 이상의 품목번호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
 -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큼
 - 수입라이센싱, 쿼터, 반덤핑관세 등 기타 다른 EU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사전심사 담당 세관원은 일관성 있는 사전심사를 위하여 신청된 사전심사서가 기존 결정된 사항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접수통지를 함
- 사전심사 신청사항은 세관에서 별도의 검토 없이 자동적으로 EBT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나, 이것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의미는 아님
 - 자동적으로 접수된 신청사항은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예외없이 EBTI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이러한 원칙은 추후 사전심사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BTI기록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임

⑥ 수수료

- 사전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나, 시간 외 근무시간에 신청하는 경우, 물품 또는 보고서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물품의 반송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수료는 부과할 수 있음(UCC 제52조(2)(b))

분석이 필요한 경우

- 물품의 성분분석이 필요한 경우(Determining the composition of a product)
 - 신청인이 제시한 정보 및 관련된 민간품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Confirming information coming from the applicant and concerning sensitive products)
 - 품목분류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Specifying the justification of classification)
- 분석은 특히 품목분류에 관한 문제가 물품의 정확한 구성(예: 농산물, 음식품, 음료, 광물성 오일 등)에 관한 것인 경우 필요함
- 분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신속히 샘플을 제출하여야 함

< BTI 신청 양식 >

ANNEX 2

EUROPEAN UNION

APPLICATION FOR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 | |
|--|---|
| <p>1. Applicant (full name and address)</p> <p>Telephone number: Fax number: Customs ID/EORI No:</p> | <p>For Official use</p> <p>Registration Number: Place of Receipt: Date of Receipt: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BTI Application language: Images to be scanned: Yes <input type="checkbox"/> # ... No <input type="checkbox"/></p> <p>Date of issue: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Issuing officer:</p> <p>All Samples returned: <input type="checkbox"/></p> |
| <p>2. Holder (full name and address) (Confidential)</p> <p>Telephone number: Fax number: Customs ID/EORI No:</p> | <p>Important note</p> <p>By signing the declaration, the applicant accepts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given on this form and on any continuation sheet(s) lodged with it. The applicant accepts that this information and any photograph(s), sketch(es), brochure(s) etc. can be stored on a databas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at the data, including any photograph(s), sketch(es), brochure(s) etc., submitted with the application or obtained (or obtainable) by the administration, and which have not been marked in boxes 2 and 9 of the application as being confidential can be disclosed to the public via the internet.</p> |
| <p>3. Agent or Representative (full name and address)</p> <p>Telephone number: Fax number: Customs ID/EORI No:</p> | <p>4. Reissue of a BTI</p> <p>If you are applying for the reissue of a BTI, please complete this box.</p> <p>BTI Reference Number: Valid from: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 <p>5. Customs Nomenclature</p> <p>Please indicate in which nomenclature the goods are to be classified:</p> <p><input type="checkbox"/> Harmonized System (HS) <input type="checkbox"/> Combined Nomenclature (CN) <input type="checkbox"/> TARIC <input type="checkbox"/> Refund nomenclature <input type="checkbox"/> Other (Specify):</p> | <p>6. Type of transaction</p> <p>Does this application relate to an import or export actually envisaged?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7. Classification envisaged</p> <p>Please indicate where in your view the goods are classified. Nomenclature Code:</p> |
| <p>8. Description of goods</p> <p>Include where necessary the precise composition of the goods, the method of analysis used, the type of manufacturing process undergone, the value including the components, the use of the goods, the usual trade name and where appropriate, the packaging for retail sale in the case of sets of goods (Please use a separate sheet if more space is required).</p> | |

| | | | |
|--|--|--|--|
| <p>9. Commercial denomination and additional information (*) (Confidential)</p> | | | |
| <p>10. Samples etc.</p> <p>Please indicate which if any of the following are enclosed with your application.</p> <p>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Brochures <input type="checkbox"/> Photographs <input type="checkbox"/> Samples <input type="checkbox"/> Other</p> <p>Do you wish your samples to be returned?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Special costs incurr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as a result of analysis, expert reports or the return of samples, may be charged to the applicant.</p> | | | |
| <p>11. Other BTI Applications (*) and other BTI held (*)</p> <p>Please indicate if you have applied for, or been issued with BTI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at other Customs offices or in other Member State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If yes, please give details and enclose a photocopy of the BTI:</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p>Country of Application: Place of Application: Date of Application: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td> <td style="width: 50%;"> <p>Country of Application: Place of Application: Date of Application: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td> </tr> </table> | | <p>Country of Application: Place of Application: Date of Application: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p>Country of Application: Place of Application: Date of Application: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 <p>Country of Application: Place of Application: Date of Application: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p>Country of Application: Place of Application: Date of Application: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 |
| <p>12. BTI issued to other Holders (*)</p> <p>Please indicate if you are aware of BTI for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already issued to other holder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p> <p>If yes, please give details:</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p>Issuing country: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td> <td style="width: 50%;"> <p>Issuing country: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td> </tr> </table> | | <p>Issuing country: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p>Issuing country: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 <p>Issuing country: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p>Issuing country: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Nomenclature Code:</p> | | |
| <p>13. Date and Signature</p> <p>Your reference: Date: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Mon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Da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p> <p>Signature:</p> | | | |
| <p>For Official Use:</p> | | | |

(*) Please use a separate sheet of paper if more space is required.

< BOI 신청 양식 >

APPLICATION TO THE REVENUE COMMISSIONERS FOR BINDING ORIGIN INFORMATION (BOI) UNDER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AND COMMISSION REGULATIONS (EU) NO. 2015/2446 AND 2015/2447

(please read notes overleaf before completing)

| | | | |
|---|--------------------------------------|---|------------------------------------|
| 1. Applicant: (Name & Address in full) | | 2. Designated Holder of the BOI: (Name & Address in full) (Only if different from Box 1) | |
| 3. Legal framework: (preferential/non-preferential) | | | |
| 4. (a) Description of Goods | | 4. (b) Tariff Classification: | |
| 5. Composition of Goods: * | | 6. Ex-work price: * | |
| 7. Country of Origin envisaged by applicant: | | | |
| 8. Rule considered to be satisfied: (see notes overleaf) * | | | |
| Principal Materials Used | Country of Origin | HS Heading/CN Number | Value |
| 9. Enclosures being submitted to assist with BOI of the goods: (tick "4")* | | | |
| Samples <input type="checkbox"/> | Photographs <input type="checkbox"/> | Diagrams <input type="checkbox"/> | Brochures <input type="checkbox"/> |
| | | Other <input type="checkbox"/> | |
| * Indicate any particulars in respect of which confidentiality is being sought | | | |
| 10. Have you previously applied for BOI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either here or in any other Member State ? | | | |
| Yes <input type="checkbox"/> | | No <input type="checkbox"/> (tick "4") | |
| If yes, please give details | | | |
| 11. Are you aware of the existence within any other Member State of BOI or BTI for these or similar goods ? | | | |
| Yes <input type="checkbox"/> | | No <input type="checkbox"/> (tick "4") | |
| If yes, please give details | | | |
|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 agree to supply a translation of any document if so requested, and I accepted that the information supplied, save for those particulars indicated as being confidential, may be stored on a database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us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ons No. 952/2013, 2015/2446 and 2015/2447. | | | |
| Name: _____ | | Signature: _____ | Date: _____ |
| | | (BLOCK CAPITALS) | |
| Telephone: _____ | | Fax: _____ | E-Mail Address: _____ |

3) 결정 및 적용

① 접수확인통보

□ 세관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전심사내역에 대한 형식적 요건 확인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건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통지를 보내야 함(UCC 제22조(2))

○ 형식적 요건확인통지는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여 사전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후 실질적 심사기간이 시작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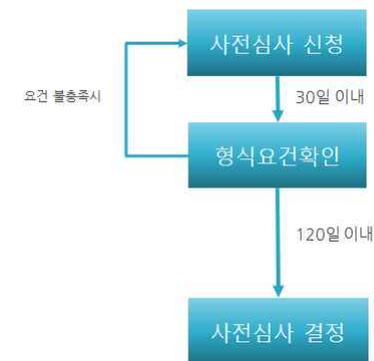
- 만일 세관에서 접수확인통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요청할 사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발급기간이 시작됨

② 결정

□ 세관 확인통지가 되면, 해당 일자로부터 발급기간(issuing period)가 시작됨을 의미. 발급기간은 확인통지일로부터 120일(UCC 제22조(3))

○ 또한 세관당국은 사전심사를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심사기간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연장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함

< 그림 > EU 사전심사 신청 절차



③ 결정의 범위

- BTI 결정은 오직 “한 종류의 물품(one type of goods)”에만 적용가능
 - “한 종류의 물품”이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품들로서 그러한 특성들은 품목분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물품임을 의미함) (IA Art. 16(2) and Case C-199/09 Schenker SIA vs. Valsts ienemumu denests)
 - 한 종류의 물품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제6914호의 원예용 것으로서 다양한 치수의 장식되지 않은 테라코타 화분 (Undecorated terracotta flowerpots of various dimensions for horticultural use of heading 6914)
 - 비접이식 테이블 칼(제8211호의 손잡이의 구성재료와 관계없음)(Non-folding table knives regardless of the constituent material of their handles of heading 8211)
 - 설명된 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인 경우에만 실제 사전심사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물품설명은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함
 - 따라서 사전심사서의 물품과 ‘한 종류의 물품’이라면,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④ 상이한 결정

- EU국가의 특성상, BTI결정주체가 다수이므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
 - 이러한 경우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CIRCABC를 통해서 기타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음
 - 상이한 결정사실이 EU위원회에 의하여 발견되는 경우 EU 위원회는 즉시 BTI발급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즉시 CIRCABC에 업로드 함
 - EU위원회는 발급중지를 통보한 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 상이한 BTI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10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함(IA 제23조(1)(2), DA 제20조(1))

⑤ 적용

- 사전심사서 구속대상(UCC 제33조(2)(a) 및 (b))
 - BTI가 최초로 도입된 1991년의 경우, 사전심사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의사에 달려 있었음
 - 그러나 UCC가 발효된 이후부터는, 해당 BTI결정을 신청한 자는 해당 사전심사서를 수출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
 - 사전심사서가 관세당국 및 신청인 모두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
 - 신청인을 구속하는 이유는 동일인이 동일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사전심사서를 이용하는 이른바 BTI쇼핑(BTI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함
 - BTI의 경우 EU에서 운영하는 EBTI에서 온라인으로 결정사항 조회가 가능하므로 신청인은 고의로 2개 이상의 사전심사를 신청해서는 안됨
- BTI 및 BOI는 신청한 물품과 실제 수출입하는 물품이 모든 면에서 동일해야 함을 조건으로 함(UCC 제33조(4))
 -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물품은 하나의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여기서 유사한 특성(similar characteristics)은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결정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야 함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BTI 및 BOI 당사자와 결정서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당사자의 경우 증거로서 참조하는 것은 허용됨(정재호, 2014)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수입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발급일(date of issue)로부터 3년간 모든 EU관세당국과 신청인을 구속함(UCC 제33조(3))
 - UCC개정 전 유효기간은 BTI는 6년, BOI는 3년이었으나 개정 후 모두 3년으로 같아짐

- 이에 따라 한번 사전심사서를 받은 물품이라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적용이 가능함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

4) 재심사 및 변경

불복절차는 다음 두가지 방법이 가능

- 재심사는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
- 재심사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이의제기의 경우 해당 소관부서에 심리를 신청(Departmental review)하거나 또는 직접 행정재판소(tax tribunal)에 심리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

사전심사의 취소(annulment)

- 사전심사의 결정이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는 경우, 사전심사서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UCC 제34조(4))
 - 사전심사서의 취소는 해당 사전심사서가 최초로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UCC 제27조(3))
- 사전심사 당사자는 해당 BTI의 취소 사실을 서면이나 메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받아야 함(UCC 제27조(2))
-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사전심사서가 취소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기간연장(period of grace)은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심사의 정지(cease to be valid)

- BTI 사전심사서는 다음의 경우, 정지될 수 있음
 - 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거나(UCC 제34조(1)(b)), 또는
 - UCC상 새로운 품목분류체계가 채택되어, 변경되는 경우(UCC 제34조(1)(a))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발급된 사전심사서의 효력은 정지될

수 있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철회(revokation)(UCC 제34조(7), (8))

-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철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해당 사전심사서가 관보에 게재되는 EU관세율표와 합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 해당 사전심사서가 관보에 게재되는 EU사법재판소의 판결과 합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 해당 사전심사서가 WCO HS 품목분류 결정, 의견 또는 해설서의 변경의 결과와 합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¹⁹⁾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철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해당 사전심사서가 관보에 게재되는 EU사법재판소의 판결과 합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정지와 철회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 있어서 유예기간(period of grace)이 적용됨

-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목적은 무역업자로 하여금 통제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
- 유예기간 적용신청은 기존 BTI가 정지 또는 철회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유예기간 적용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함
- 유예기간은 최대 6월까지이며, 경우에 따라 이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음

단, 수출될 물품에 적용되는 BOI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19) 이러한 UCC의 조항은 곧 WCO 의견(opinion)이 BTI결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Initial reflections on the new Customs Code in the EU)

5) 유예기간

- 사전심사서 결정이 정지 또는 철회되는 경우, 기존의 사전심사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늦추는 유예기간(period of grace) 적용 가능(UCC 제34조(9))
 - 유예기간의 적용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모두 가능하나, 수출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경우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입력으로 사전심사서가 취소되는 경우
 - HS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사전심사서 효력의 정지
 - 상황의 변경으로 결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사전심사서가 철회된 경우
 - EU사법재판소의 판결대상과 동일한 물품으로 사전심사서가 철회된 경우
 - 행정상 오류로 인하여 사전심사서가 철회된 경우
- 유예기간은 BTI 또는 BOI가 철회 또는 정지되는 날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단 제57조(4), 제67조의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더 짧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유예기간을 적용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서 효력이 정지 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예기간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UCC 제34조(9))
 - 신청인은 유예기간 적용신청시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동 물품이 통관될 예정세관지를 기재해야 함
 - 관세당국은 유예기간 부여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일시와 해당 기간동안 통관될 물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IA 제22(1)(2))
 - 유예기간동안 통관이 허용되는 물량은 유예기간 일시 또는 동 기간 동

안 허용되는 물량 중 먼저 도래하거나 소진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IA 제22(2))

6) 소급적용

- 사전심사 취소의 경우 최초 사전심사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적용됨(UCC 제27조(3))
- 그러나 사전심사의 정지 또는 철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음(UCC 제28조(4))

3. 사전심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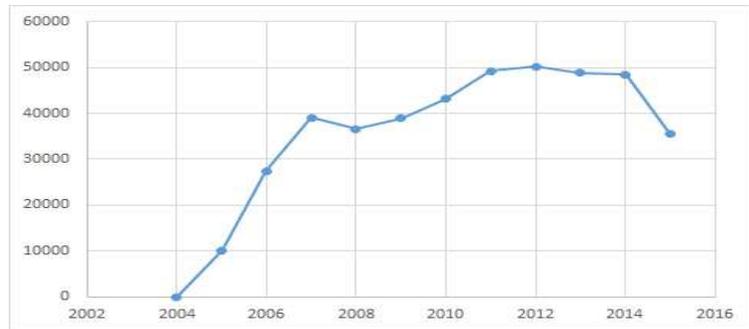
가. 사전심사 결정

- EU는 1991년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전 자적 시스템인 EBTI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그러나 원산지 사전심사를 활용한 결정사례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지난 10년간 EU의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건수는 총 427,590건
- 2004년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건수가 8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1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표 > 연도별 사전심사 총 건수

[단위: 신청 건]

| 연 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건 수 | 8 | 10,075 | 27,405 | 39,091 | 36,576 | 38,917 |
| 연 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건 수 | 43,155 | 49,162 | 50,169 | 48,846 | 48,531 | 35,655 |



자료: 관세청

나. 품목별 사전심사 동향

- 우리나라 대EU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EU의 사전심사 결정동향은 다음과 같음
 - 수출금액은 우리나라 2015년 대EU 한-EU 특혜수출금액
 - 사전심사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EU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건수
- 우리나라의 한-EU FTA 수출 100대 품목에는 자동차, 고무화학, 플라스틱, 전기기기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이 다수 포함됨
- 100대 수출물품 중 사전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제3926호²⁰⁾의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지난 10년간 총12,817건의 사전심사사례가 존재
- 이어 제6307호가 9,439건, 제8528호가 7,089건, 제9405호가 6,669건 등으로서 나타남

< 표 > 우리나라의 대EU FTA적용 수출금액 및 사전심사 건수

[단위: 천달러/건]

| 순위 | HS4 | 수출금액 | 사전심사 | 순위 | HS4 | 수출금액 | 사전심사 |
|----|------|-----------|-------|----|------|--------|-------|
| 1 | 8703 | 5,003,553 | 772 | 51 | 6116 | 60,987 | 1,234 |
| 2 | 8708 | 3,137,016 | 1,662 | 52 | 9001 | 60,104 | 448 |
| 3 | 4011 | 570,162 | 256 | 53 | 3921 | 55,954 | 950 |
| 4 | 3907 | 503,508 | 390 | 54 | 8413 | 55,924 | 678 |
| 5 | 8507 | 436,970 | 813 | 55 | 8536 | 54,617 | 6,031 |
| 6 | 3903 | 377,959 | 65 | 56 | 3824 | 53,513 | 3,117 |
| 7 | 2917 | 359,831 | 62 | 57 | 7202 | 53,414 | 45 |
| 8 | 8409 | 334,471 | 328 | 58 | 8528 | 52,893 | 7,089 |
| 9 | 8512 | 332,656 | 374 | 59 | 3923 | 51,803 | 1,816 |
| 10 | 3901 | 315,034 | 95 | 60 | 0304 | 49,631 | 234 |
| 11 | 5503 | 287,369 | 44 | 61 | 3909 | 49,072 | 145 |
| 12 | 3902 | 262,343 | 153 | 62 | 8515 | 47,819 | 136 |
| 13 | 8479 | 253,758 | 2,652 | 63 | 8466 | 47,685 | 175 |
| 14 | 8418 | 233,958 | 786 | 64 | 5407 | 44,590 | 1,618 |

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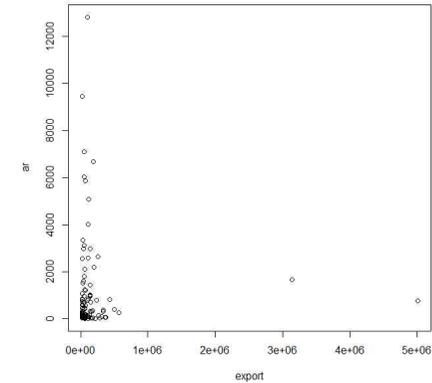
| | | | | | | | |
|----|------|---------|--------|-----|------|--------|-------|
| 15 | 8458 | 217,613 | 4 | 65 | 2907 | 43,821 | 39 |
| 16 | 8537 | 201,128 | 2,189 | 66 | 4009 | 41,093 | 126 |
| 17 | 9405 | 191,717 | 6,669 | 67 | 3912 | 40,796 | 68 |
| 18 | 8407 | 177,560 | 39 | 68 | 8529 | 40,678 | 2,992 |
| 19 | 8207 | 177,311 | 354 | 69 | 7307 | 40,285 | 724 |
| 20 | 8415 | 163,836 | 318 | 70 | 8509 | 40,070 | 702 |
| 21 | 8526 | 153,902 | 706 | 71 | 7606 | 39,212 | 92 |
| 22 | 8480 | 153,598 | 46 | 72 | 8301 | 38,061 | 414 |
| 23 | 8482 | 142,879 | 329 | 73 | 6006 | 36,924 | 162 |
| 24 | 8414 | 140,654 | 1,429 | 74 | 2918 | 36,757 | 168 |
| 25 | 3920 | 138,743 | 971 | 75 | 9003 | 33,940 | 50 |
| 26 | 8483 | 137,170 | 991 | 76 | 8451 | 33,603 | 102 |
| 27 | 8481 | 136,472 | 2,974 | 77 | 9027 | 33,404 | 1,520 |
| 28 | 8421 | 136,172 | 1,020 | 78 | 8544 | 31,956 | 3,345 |
| 29 | 3906 | 131,374 | 192 | 79 | 2916 | 31,421 | 118 |
| 30 | 3815 | 121,423 | 88 | 80 | 2101 | 29,436 | 562 |
| 31 | 7326 | 121,007 | 5,071 | 81 | 8411 | 29,018 | 247 |
| 32 | 8501 | 115,422 | 849 | 82 | 8419 | 27,973 | 609 |
| 33 | 7318 | 110,562 | 4,012 | 83 | 8202 | 27,445 | 35 |
| 34 | 8527 | 109,130 | 2,586 | 84 | 3204 | 27,222 | 457 |
| 35 | 8457 | 108,496 | 14 | 85 | 8424 | 26,907 | 859 |
| 36 | 5402 | 108,478 | 103 | 86 | 8704 | 26,851 | 744 |
| 37 | 9032 | 102,016 | 794 | 87 | 8412 | 25,817 | 260 |
| 38 | 8450 | 101,966 | 132 | 88 | 7607 | 24,946 | 138 |
| 39 | 3926 | 101,385 | 12,817 | 89 | 9029 | 24,775 | 328 |
| 40 | 8511 | 100,802 | 86 | 90 | 2202 | 24,591 | 2,555 |
| 41 | 3911 | 82,070 | 128 | 91 | 2905 | 24,105 | 104 |
| 42 | 2922 | 77,952 | 191 | 92 | 8503 | 23,814 | 186 |
| 43 | 3918 | 71,973 | 172 | 93 | 8462 | 23,521 | 48 |
| 44 | 8505 | 70,591 | 579 | 94 | 6804 | 23,298 | 244 |
| 45 | 8504 | 69,268 | 5,867 | 95 | 1902 | 22,476 | 1,072 |
| 46 | 3919 | 68,487 | 1,202 | 96 | 6307 | 22,239 | 9,439 |
| 47 | 8408 | 66,460 | 13 | 97 | 2920 | 21,984 | 46 |
| 48 | 2933 | 66,209 | 427 | 98 | 5603 | 21,180 | 832 |
| 49 | 8209 | 65,585 | 40 | 99 | 8212 | 20,729 | 40 |
| 50 | 8302 | 63,628 | 2,119 | 100 | 3917 | 20,723 | 864 |

자료: 관세청

□ 우리나라 FTA특혜수출금액과 EU의 사전심사 건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관계수는 -0.018로서 우리나라 특혜수출금액과 사전심사 건수는 매우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 특혜수출금액과 사전심사 건수의 상관관계



□ HS 2단위 기준 100대물품 중 제85류(전기기기)에 관한 사전심사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84류(기계류), 제73류(철강과 그 제품) 순으로 나타남

○ HS 2단위 기준 사전심사 건수와 FTA수출금액 역시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표 > 우리나라의 대EU FTA 100대 수출물품 HS2단위별 사전심사 건수

[단위: 천달러/건]

| 순위 | HS2 | 사전심사 | 수출금액 | 순위 | HS2 | 사전심사 | 수출금액 |
|----|-----|-------|---------|----|-----|------|--------|
| 1 | 85 | 34530 | 1881716 | 14 | 29 | 1155 | 662080 |
| 2 | 39 | 20028 | 2271224 | 15 | 19 | 1072 | 22476 |
| 3 | 84 | 14053 | 2775511 | 16 | 56 | 832 | 21180 |
| 4 | 73 | 9807 | 271854 | 17 | 21 | 562 | 29436 |
| 5 | 63 | 9439 | 22239 | 18 | 82 | 469 | 291070 |
| 6 | 94 | 6669 | 191717 | 19 | 32 | 457 | 27222 |

| | | | | | | | |
|----|----|------|---------|----|----|-----|--------|
| 7 | 38 | 3205 | 174936 | 20 | 40 | 382 | 611255 |
| 8 | 87 | 3178 | 8167420 | 21 | 68 | 244 | 23298 |
| 9 | 90 | 3140 | 254239 | 22 | 30 | 234 | 49631 |
| 10 | 22 | 2555 | 24591 | 23 | 76 | 230 | 64158 |
| 11 | 83 | 2533 | 101689 | 24 | 60 | 162 | 36924 |
| 12 | 54 | 1721 | 153068 | 25 | 72 | 45 | 53414 |
| 13 | 61 | 1234 | 60987 | 26 | 55 | 44 | 287369 |

자료: 관세청

다. 국가별 사전심사 현황

- 우리나라의 대EU FTA 100대 수출품목의 국가별 사전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독일로서 총 204,424건(47.8%)이며, 이어 프랑스가 63,696건(14.9%), 영국이 55,466건(13.0%), 네델란드 27,328건(6.4%)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상위 4개 국가의 사전심사 신청비중은 전체의 82.1%로서 EU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독일의 사전심사 비중은 EU전체 사전심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내어 사전심사제도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 상위 5개 품목의 사전심사 건수는 전체 사전심사 건수와 상이한 면이 존재
 - 최대수출품목인 승용자동차(제8703호)의 경우 영국에서 270건 사전심사 신청되었으며, 독일은 187건에 그침
 - 또한 타이어(제4011호)는 프랑스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독일과 기타 국가의 경우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 2004~2015년 우리나라 대EU FTA 100대 수출품목 국가별 사전심사 건수
[단위: 천달러/건]

| 국가명 | 100대 품목 | 비중 | 8703 | 8708 | 4011 | 3907 | 8507 |
|-------|---------|------|------|-------|------|------|------|
| 독일 | 204,424 | 47.8 | 187 | 870 | 42 | 159 | 364 |
| 프랑스 | 63,696 | 14.9 | 56 | 262 | 201 | 53 | 118 |
| 영국 | 55,466 | 13.0 | 270 | 204 | 1 | 10 | 107 |
| 네델란드 | 27,328 | 6.4 | 50 | 15 | 2 | 77 | 109 |
| 폴란드 | 13,310 | 3.1 | 43 | 55 | 0 | 3 | 4 |
| 아일랜드 | 8,684 | 2.0 | 20 | 1 | 0 | 21 | 0 |
| 체코공화국 | 7,850 | 1.8 | 19 | 37 | 9 | 10 | 15 |
| 오스트리아 | 6,637 | 1.6 | 7 | 24 | 0 | 3 | 7 |
| 스웨덴 | 5,879 | 1.4 | 25 | 8 | 0 | 2 | 3 |
| 스페인 | 5,710 | 1.3 | 15 | 26 | 1 | 1 | 1 |
| 벨기에 | 4,084 | 1.0 | 14 | 30 | 0 | 18 | 2 |
| 이탈리아 | 4,055 | 0.9 | 3 | 8 | 0 | 10 | 9 |
| 헝가리 | 3,029 | 0.7 | 4 | 8 | 0 | 1 | 7 |
| 슬로바키아 | 2,975 | 0.7 | 2 | 67 | 0 | 10 | 2 |
| 덴마크 | 2,831 | 0.7 | 12 | 3 | 0 | 1 | 18 |
| 핀란드 | 2,809 | 0.7 | 13 | 2 | 0 | 2 | 7 |
| 슬로베니아 | 2,354 | 0.6 | 4 | 5 | 0 | 8 | 0 |
| 루마니아 | 1,691 | 0.4 | 13 | 34 | 0 | 0 | 4 |
| 불가리아 | 1,204 | 0.3 | 1 | 0 | 0 | 0 | 0 |
| 라트비아 | 940 | 0.2 | 4 | 0 | 0 | 0 | 0 |
| 포르투갈 | 922 | 0.2 | 0 | 2 | 0 | 0 | 1 |
| 리투아니아 | 484 | 0.1 | 0 | 1 | 0 | 0 | 0 |
| 사이프러스 | 452 | 0.1 | 7 | 0 | 0 | 0 | 0 |
| 그리스 | 335 | 0.1 | 1 | 0 | 0 | 1 | 0 |
| 몰타 | 269 | 0.1 | 0 | 0 | 0 | 0 | 5 |
| 에스토니아 | 118 | 0.0 | 0 | 0 | 0 | 0 | 29 |
| 룩셈부르크 | 54 | 0.0 | 2 | 0 | 0 | 0 | 1 |
| | 427,590 | 100 | 772 | 1,662 | 256 | 390 | 813 |

자료: 관세청

4. 주요 특징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제도는 없으며,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만 존재
 - EU는 우리나라와 달리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제도가 없으며, WTO TFA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제도만 운영 중
 - 품목분류는 BTI, 원산지는 BOI로서 BTI는 EBTI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2016년 UCC에 의한 새로운 관세법의 도입과 EU전체 단일적용
 - EU회원국은 EU Regulation인 UCC의 법적 효력아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으로서 EU집행위원회가 규정하는 실행 및 위임규정에 구속됨
 - 이에 따라 EU전체 단일화된 법규정이 적용되며, UCC이외의 사항은 개별국에 위임하고 있으나, 사전심사에 관한 개별 회원국의 법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UCC시행으로 BTI와 BOI간 차이점은 대부분 없어졌으며, 사전심사제도는 UCC와 실행규정 및 위임규정에 의하여 통일됨
 - 다만, 사전심사서는 각 관세당국이 발행하므로 회원국간 사전심사서의 일관성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임
-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전심사 결정건수
 - BOI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BTI는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EU FTA가 체결된 2011년에는 사전심사 결정건수가 5만 건에 이름
 - OECD공개 자료²¹⁾에 의하면, 독일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1,696건으로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예상됨

21) OECD TFI Simulation

III. 양국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EU의 사전심사제도를 비교함
 - 구체적으로는 근거법령, 사전심사대상, 사전심사의 법적 효력, 주요특징에 대하여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사전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1. 근거법령

- 우리나라의 근거법은 이분화되어 있는 반면, EU는 단일화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의 근거는 WTO협정에 기반을 둔 관세법상의 사전심사와, FTA협정에 기반을 둔 FTA특례법상의 사전심사로 구분할 수 있으나, EU는 이러한 구분 없이 UCC에 통합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
 - 특히 원산지 사전심사의 경우, 관세법상의 일반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와 FTA특례법상의 사전심사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음
 - 반면 EU는 특혜, 비특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원산지 사전심사는 BOI로 통합하여 운영 중

2. 사전심사대상 및 특징

- 국제교역과 관련한 사전심사 대상은 WTO무역원활화 협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르면 사전심사제도는 크게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관세감면, 관세할당의 총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는 의무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규정
- 우리나라는 WTO TFA에서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EU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만 사전심사제도를 규정

< 표 > 우리나라와 EU 사전심사제도의 비교

| 사전심사 제도 | | WTO | 우리나라 | EU |
|---------|-------|-----|----------------------------|-----|
| 품목분류 | | 의 무 | 관세법 제86조, 제87조 | UCC |
| 원산지 | 일반특혜 | 의 무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 |
| | FTA특혜 | 의 무 | FTA특례법 제31조 | |
| | 비특혜 | 의 무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 |
| 과세가격 | | 권 고 | 관세법 제37조 | 없음 |
| 환급·감면 | | 권 고 | FTA특례법 제31조 (일부 협정만 해당) | 없음 |
| 쿼터 | | 권 고 | FTA특례법 제31조 (일부 협정만 해당) | 없음 |

1) 신청

- 사전심사 신청에 있어 신청서 제출장소, 우리나라와 EU는 신청 후 접수통지의 유무, 기존 사전심사서 확인의무, EBTI시스템 등록, 수수료 등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
- (신청서 제출장소) 우리나라는 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에, EU는 각 세관에 사전심사 신청
 - 우리나라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은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장에게, 기타 사전심사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반면 EU는 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관세당국 또는 BTI가 사용될 회원국의 세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
 - 우리나라 사전심사는 모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나, 관련 고시에 따라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는 본부·직할 세관장에, 기타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각각 위임함

- (신청 후 접수통지) 우리나라는 신청받은 날이 결정기한의 기산일이 되나, EU는 접수통지일이 기산일이 됨
 - EU는 사전심사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접수통지), 이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품목분류 또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사항을 회신(결정기간)
 - 그러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접수통지 절차는 없으며, 형식적 요건이 불충족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함.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연히 결정기한은 연장될 수 밖에 없음
 - 보정기간은 사전심사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품목분류와 원산지, FTA특례법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인 반면, 과세가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보정기간은 15일로 차이가 있음
- (기존 사전심사서의 확인) EU사전심사인 BTI 및 BOI의 경우 기존 사전심사서 확인여부를 묻는 란이 존재함
 - BTI 신청양식 12번 및 BOI 신청양식 11번에는 신청인이 기존 사전심사 결정사항을 확인여부를 신고하도록 함

< BTI 신청양식 12번 >

12. BTI issued to other Holders (*)

Please indicate if you are aware of BTI for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already issued to other holders.

Yes No

If yes, please give details:

Issuing country: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Month Day

Nomenclature Code:

Issuing country:

BTI Reference:

Date of Start of Validity:

Year Month Day

Nomenclature Code:

< BOI 신청양식 11번 >

11. Are you aware of the existence within any other Member State of BOI or BTI for these or similar goods ?

Yes No (tick "4")

If yes, please give details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 FTA원산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양식에 기존 사전심사 확인여부를 묻는 사항은 없음
- (EBTI 등록) EU는 EBTI 등록제도를 두어 신청인이 신청한 품목분류 사항은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함
 - 사전심사 신청사항은 자동적으로 EBTI에 등록되며, 담당 세관원은 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통지를 함
 - EBTI 자동등록은 EU회원국 관세당국의 입장에서 동일한 신청인이 다수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가장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하는 이른바 'BTI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함
 -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심사 신청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 단일 기관에서 처리하므로 EBTI자동등록 시스템과 같은 제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신청인의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EU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EU모두 사전심사 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FTA특례법에 따른 사전심사에 한하여 수수료 납부
 - 우리나라 FTA특례법상 사전심사를 제외하고 수수료는 사전심사 결정시 물품의 성분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
 - FTA특례법 사전심사 신청인은 물품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함

2) 결정 및 적용

- 사전심사의 결정 및 적용에 있어서 결정기간, 보정기간, 유효기간 등은 우리나라와 EU간 차이점이 존재함
- (결정기간) 사전심사서의 결정기간은 우리나라는 사전심사의 신청에 따라 구분되나, EU는 BTI와 BOI모두 동일
 - 우리나라 사전심사 결정기간은 품목분류 30일, 원산지 60일, 과세가격 결정방법 1개월(특수관계자의 경우 1년), FTA특례법상 사전심사는 90일로서 각각 결정기간이 상이
 - 반면, EU는 BTI와 BOI모두 신청 후 세관이 신청인에게 송부한 접수통지일로부터 120일로 동일함
 - 사전심사 결정기간은 신청인에게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인지한 후 사전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 사전심사 종류별 상이한 결정기간은 신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보정기간) 우리나라와 EU모두 사전심사서 신청에 형식적 요건이 불충족되거나 기타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두고 보정하도록 함
 - 우리나라 사전심사별 보정기간은 품목분류가 20일, 원산지 20일, 과세가격 결정방법 15일(15일 연장 가능), FTA특례법상 사전심사의 경우 20일임
 - EU BTI와 BOI의 보정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EU는 접수통지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음
 -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접수통지 기간 내에 요건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보정기간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우리나라 사전심사별 유효기간은 각각 상이하나, EU의 경우 모두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함

- 우리나라의 원산지(관세법 및 FTA특례법 모두) 사전심사 유효기간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 EU의 경우 BTI와 BOI모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BTI의 경우 기존 6년이었으나, UCC개정을 통하여 3년으로 단축됨
- (적용의무)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적용의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EU에서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심사서 적용여부가 선택 사항인 반면, EU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임
- 2016년 5월 UCC발효 이후, BTI결정을 신청한 자는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을 규정
- 기타 사전심사서의 적용 대상이 신청한 것과 모든 면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EU모두 동일한

3) 재심사 및 변경

- (재심사) 신청인은 사전심사서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재심사 사항은 WTO TFA의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EU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세당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서의 변경) 우리나라와 EU모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사전심사서의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전심사서 변경이 가능한 사유로서 대표적으로 재심사에 의한 변경이 있으며, 이 외에도 관계법령 및 품목분류의 변경, 신청인의 자료제출 착오 등이 주요 사유임
- EU는 사전심사서의 변경 사유를 우리나라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 원인에 따라 취소(annulment), 정지(cease to valid), 철회(revok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사전심사서의 취소는 신청인의 착오 등에 의한 변경이며, 정지는 관계법령의 개정, 철회는 소송 등 판결에 따른 변경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취소는 신청인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시함에 따라 잘못 판단된 경우로서, 소급적용되며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반면, 정지와 철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소급적용되며, 유예기간이 적용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은 변경의 사유가 되나, 유예기간의 부여는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급적용 역시 별도의 사유로 발생함

4) 유예기간

- 사전심사의 변경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유예기간 적용사유는 우리나라와 EU에서 차이점을 나타냄
-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변경후 수출자에게 유리한 경우, 특히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선적된 물품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함
 - 원산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변경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EU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BTI와 BOI이며, 사전심사의 정지 및 철회사유로서 법령의 개정, 판결 결과 등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나, 유예기간 적용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또한 EU 유예기간은 정지 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며, 최대 6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유예할 수 있음
 - 유예기간은 수출될 물품에 관한 BOI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우리나라는 특정 건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EU는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특정 건에 한하여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

5) 소급적용

- 사전심사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모두 공통적으로 신청인의 과실에 따른 변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거짓자료의 제출 등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전심사서를 취소하고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로서 책임있는 사유가 없고, 제3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EU의 소급적용은 제재대상으로 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

3. 사전심사의 법적 효력

- 사전심사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관세당국의 결정사항으로서 우리나라와 EU모두 동 사전심사서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법적 효력의 구속대상과 적용가능 물품, 유효기간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함
- (구속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심사서는 관세당국에 한하여 구속하나, EU는 신청인과 관세당국 모두를 구속함
- 사전심사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한 관세당국의 결정사항이므로, 관세당국을 구속하며 따라서 반복되거나 철회될 경우 별도의 문제사항이 없다면 관세당국의 책임사유임
- 우리나라 사전심사 신청인은 사전심사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결정사항대로 적용해야 함
- 그러나 EU는 신청인과 관세당국 양자를 구속하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사전심사서를 사용해야 함
- (적용가능물품) 발급된 사전심사서를 이용할 수 있는 적용가능물품의 범위에 있어 우리나라와 EU는 차이점이 존재함

- 우리나라는 사전심사서를 신청하여 발급한 해당 신청인의 해당 물품에 한하여 사전심사서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른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전심사서를 이용할 수 없음
- 그러나 EU의 경우 사전심사서의 효력은 ‘한 종류의 물품(one type of goods)’에 한정된다고 표현하여, 품목번호가 동일한 물품이라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물품이라도 사용이 가능함

< Judgment of the Court 2 December 2010(Case C-199/09) >

In the light of the foregoing,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that Article 6(2) of the Implementing Regulation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an application for binding tariff information may relate to different goods provided that these all belong to one and the same type of goods.

Only goods which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and whose distinguishing features are completely irrelevant for the purposes of their tariff classification may be regarded as belonging to one type of goods for the purposes of that provision.

자료: European Commission

- 한 종류의 물품이라면 기존의 사전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EU의 사전심사서 이용가능성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사전심사서의 법적 효력은 유효기간동안 존재함. 우리나라와 EU의 사전심사 유효기간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년임(사전심사 대상 참조)

4.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시사점

-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1981년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관절차상 오류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 이후 한-칠레 FTA발효 및 2006년 FTA특례법 시행에 따라 FTA특례법상 사전심사제도도 도입.
- EU가 1991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 것과 비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는 EU와 비교하여 법적 일관성, 신청인의 활용가능성, 제도이용의 편리성 등 다양한 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됨
- 법적 일관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WTO TFA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운영 중임에도 관세법과 FTA특례법 그리고 개별 고시에 따라 운영하는 등 법적 일관성이 부족
 -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법 규정을 적용받을지부터 찾아야 하며, 사전심사별 상이한 법 제도를 숙지해야함
- 특히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경우, 비특혜 및 일반특혜 사전심사는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장에게, FTA특혜원산지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각각 다른 신청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함
 - 이들 두 가지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신청일로부터 결정기간, 결정사항, 유효기간, 수수료 납부여부 등 대부분의 면에서 상이한 제도임
- 반면 EU의 경우 BTI와 BOI제도는 상당부분 동일한 규정을 채택하여 신청인들의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심사제도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Interim Administrative Guidelines on the 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을 제공함
 - 신청인을 위한 법 규정 요약,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 상세히 규정
- 사전심사제도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도 일부 규정은 EU의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존재

- 사전심사서 활용을 위한 EU의 가장 큰 차이점은 UCC 시행과 함께 도입된 '한 종류 물품(one type of goods)'에 대한 정의임. 사전심사서는 비록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도, 품목분류상 동일한 물품이라면, 유사한 특징을 지닌 다른 물품이라도 사전심사서 적용이 가능함
- '한 종류 물품'에 대한 UCC 개념 정립은 제3자의 사전심사서를 활용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세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신청인의 통관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도 EU의 접수통지절차, 기존 사전심사서 확인의무, 확장된 결정기간, 유효기간의 일관성, 사전심사서의 구속 대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사전심사제도의 목적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복잡한 법 절차를 이해해야 하고, 사전심사서를 결정받더라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신청인은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얻는 이익보다, 이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 활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사전심사제도의 마케팅이나 사용권고 등의 단기적인 대응책에서 벗어나, 신청인이 쉽게 이용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조성하여 스스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신청인이 사전심사제도의 장점을 인식하여, 동 제도를 이용하면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V. EU 사전심사 결정사례 분석

1. 사전심사 대상품목 선정

가. FTA 특혜수출금액 상위품목

- 사례분석대상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서 2015년 한-EU FTA특혜수출 기준 금액 1천만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선정대상은 2015년 우리나라가 한-EU FTA를 이용하여 특혜수출 품목 중 FTA특혜수출 상위품목 선정
 - HS 6단위 기준 총 224개 품목을 1차 범위로 선정
- 이를 총 9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 산업별 상위 3~5개 품목 선정하였으며, 카테고리 기준으로서의 류(Chapter)는 아래와 같음(36개 품목)
 - 식품산업(3):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 화학산업(3): 제28류부터 제40류까지
 - 섬유 및 의류산업(5): 제50류부터 제64류까지
 - 금속산업(5):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
 - 기계산업(4): 제84류
 - 전기기기산업(4): 제85류
 - 자동차산업(자동차 부품 포함)(4): 제87류
 - 정밀기기산업(4): 제90류, 제91류
 - 생활용품산업(4): 제94류~제96류
- 품목선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품목선정에 있어 품목번호가 -90 및 -99와 같이 '기타'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하였음
- 또한 해당 품목번호에 상응하는 EU의 사전심사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품목번호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나. 품목분류 협의회 결정사례 품목

- 우리나라와 EU간 품목분류 해석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TA 특혜수출금액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품목분류 협의회 결정사례 품목 중 일부 선정(10개 품목)
 - 현재까지 품목분류협회의회에서 쟁점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EU사전심사 사례 중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을 선정(총 8건)
 - 또한 일부 사례는 우리나라 사전심사사례와 EU사전심사사례간 품목분류 상이사례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가 선정(총 2건)

다. 품목별 EU 사전심사 결정사례

- EU사전심사 사례분석을 위하여, 위의 총 46개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EU사전심사사례 120개 선정
 - 산업별 식품(7개), 화학(5개), 섬유(21개), 금속(27개), 기계(18개), 전기(13개), 자동차(9개), 정밀기기(9개), 생활용품(11개)
 - 해당 6단위 소호 내 모든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동일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인 경우 우리나라 HSK상 EU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우선 선정함

< 표 > EU 사전심사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품목 및 사례 수(HS 6 단위 기준)

| 산업 | HS 6 | 호의 용어 | 선정기준 | 사례수 |
|----|---------|------------------------------------|------|-----|
| 식품 | 2103.90 | 기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협의회 | 1 |
| | 2101.11 | 커피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특혜수출 | 2 |
| | 2202.90 |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 | 1 |
| | 1604.20 | 그 밖의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어류 | | 3 |
| 화학 | 3903.30 | ABS | 특혜수출 | 1 |
| | 3907.6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 2 |
| | 3901.10 | 폴리에틸렌(비중 0.94 미만) | 1 | |
| | 3926.90 |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협의회 | 1 |
| 섬유 | 5503.20 | 합성스테이플섬유(폴리에스테르의 것) | 특혜수출 | 3 |
| | 5402.20 | 합성필라멘트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 | | 1 |
| | 6116.10 | 장갑류(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 | 9 |
| | 6006.32 |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염색한 합성섬유제의 것) | | 3 |

| | | | | | |
|-------|---------|--|------|------|---|
| | 6307.10 | 마루닦이포· 겹시닦이포· 더스터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 | 5 | |
| 금속 | 8207.30 | 프레싱용· 스탬핑용· 펀칭용 공구 | 특혜수출 | 7 | |
| | 7318.15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 | | 11 | |
| | 8209.00 | 서메트제 공구용 판· 봉· 팁 | | 3 | |
| |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부착구 | | 2 | |
| | 7606.12 | 알루미늄 합금의 판· 쉬트 및 스트립 | | 4 | |
| 기계 | 8480.71 |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 특혜수출 | 6 | |
| | 8457.10 | 머시닝센터 | | 2 | |
| | 8414.30 | 냉장· 냉동 설비용 압축기 | | 3 | |
| | 8482.10 | 블베어링 | | 6 | |
| | 8483.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록킷,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 협의회 | 1 | |
| 전기 | 8517.69 |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수신용 그 밖의 기기 | 협의회 | 1 | |
| | 8531.80 | 기타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 협의회 | 1 | |
| | 8507.80 | 그 밖의 축전지 | 특혜수출 | 2 | |
| | 8537.10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배전반 및 제어반 | | 4 | |
| | 8526.91 | 항행용 무선기기 | | 2 | |
| | 8527.21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 | 3 | |
| 차량 | 8703.22 | 기타의 차량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실린더용량이 1,000~1,500CC인 것) | 특혜수출 | 1 | |
| | 8708.40 |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 | 2 | |
| | 8708.7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부속품 | | 3 | |
| |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 | 3 | |
| 정밀 기기 | 9001.20 | 편광(polarizing)재료로 만든 판 | 특혜수출 | 2 | |
| | 9003.19 | 안경· 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기타 재료제의 것) | | 1 | |
| | 9027.1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 | 3 | |
| | 9029.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 협의회 | 1 | |
| | 9022.90 | 기타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 | 1 | |
| | 9018.19 |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 | | 1 | |
| |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 | 3 | |
| 생활용품 | 9612.10 | 타자기용 리본 | 특혜수출 | 3 | |
| | 9507.10 | 납시대 | | 1 | |
| | 9503.00 |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상이사례 | 1 | |
| | 9403.7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 | 1 | |
| | 9506.99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 | 협의회 | 1 |
| | | | | 상이사례 | 1 |
| | | 합 계 | | 120 | |

2. 품목별 EU 사전심사 결정사례

가. 식품산업

1) 카라멜소스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DE11395/14-1

신청물품: 카라멜 소스

○ 카라멜 소스, 1.89 리터 플라스틱 용기 또는 500ml의 병에 음료수,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을 장식하기 위함; 성분 : 옥수수 시럽, 과당 시럽, 물, 설탕, 연유, 향료, 소금, 컬러, 펙틴, 나트륨 성분을 사각베이스로 정제하여 금색 스크류 캡으로 밀봉. 갈색 카라멜 특유의 탁하고 점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됨; 아로마 향기가 나며 카라멜에 따라 달콤한 맛이 남. 디저트 소스로 사용하고 토핑, 그리고 정제 및 향미 음료, 디저트 등에 어울림. 양념소스로도 사용, 2103.1000 ~ 2103.9030호 하위그룹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용목적 상 2106호에 해당하는 식품은 아님.

결정세번: 제2103.90-908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103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협의회

물품설명: Dark caramel sauce

○ 설탕 34.981%, 액상 전화당 30.985%, 물 12.494%, 버터 9.995%, 휘핑크림 7.996%, 탈지우유 2.299%, 천연향 1.09%, 염, 탄산수소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음료에 토핑 및 시럽용으로 첨가

□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106호 해설서

- 본 물품은 당시럽과 향미제 외에 버터 9.995%, 휘핑크림 7.996%, 탈지우유등이 첨가되어 있어 제2106.90-2000호의 당시럽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향미용 조제품은 소량을 첨가하여 강한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나 본 물품의 경우 당시럽과 향미제 외에 밀크성분이 상당량 첨가 되어 있으므로 음료 등에 향을 첨가하는 용도로 한정 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2103호 및 제2106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2103호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2103.90 -- 기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 | 장류 | 10 | Mango chutney, liquid | 0 |
| 10 | 된장 | 30 | Aromatic bitters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44,2 to 49,2% vol containing from 1,5 to 6% by weight of gentian, spices and various ingredients and from 4 to 10% of sugar, in containers holding 0,5 litre or less | 0 |
| 20 | 춘장 | 90 | Other | 0 |
| 30 | 고추장 | 10 | Containing tomato | 0 |
| 90 | 기타 | 80 | Other | 0 |
| 90 | 기타 | | | |
| 10 | 마요네즈 | | | |
| 20 | 인스턴트카레 | | | |
| 30 | 혼합조미료 | | | |
| 40 | 메주 | | | |
| 90 | 기타 | | | |

- 제2106호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2106.90 -- 기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 20 |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other than those based on odorifer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 0 |
| 10 | 콜라베이스 | 30 | Flavoured or coloured sugar syrups; Isoglucose syrups | 0 |
| 20 |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 51 | Other; Lactose syrup | 0 |
| 90 | 기타 | 55 | Glucose syrup and maltodextrin syrup | 0 |
| 2000 |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59 | Other | 0 |
| 30 | 인삼제 품류 | 10 | Containing 70% or more by weight of sucrose (including invert sugar expressed as sucrose) or isoglucose expressed as sucrose | 0 |
| 1 | 백삼제 품류 | 90 | Other | 0 |
| 11 | 인삼차 | 92 | Other; Containing no milkfats, sucrose, isoglucose, glucose or starch or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1,5% milkfat, 5% sucrose or isoglucose, 5% glucose or starch | 0 |
| 19 | 기타 | 40 | Hydrolysates of proteins and autolysates of yeast | 0 |
| 2 | 홍삼제 품류 | 45 | Preparation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30% but not more than 35% licorice extract, -more than 65% but not more than 70% tricapyrylin, standardized by weight to 3% or more but not more than 4 % glabridin | 0 |
| 21 | 홍삼차 | 60 | Other | 0 |
| 29 | 기타 | 98 | Other | 0 |
| 40 | 조제한 식용 해초류 | 26 | Containing 26% or more by weight of milkfat; In immediate packings of a net | 0 |

| | | | | |
|----|--|----|--|---|
| | | | capacity of 1 kg or less; Of a kind used in drink industries containing 70% or more by weight of sucrose/isosucrose | |
| 10 | 김 | 32 | Other; Containing less than 70% by weight of sugar | 0 |
| 90 | 기타 | 33 | Other | 0 |
| 90 | 기타 | 34 | Other; Of a kind used in drink industries containing 70% or more by weight of sucrose/ isosucrose | 0 |
| 10 | 커피크리머 | 37 | Other; Containing less than 70% by weight of sugar | 0 |
| 2 |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38 | Other | 0 |
| 21 |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 41 | Other; Containing less than 70 % by weight of sucrose (including invert sugar expressed as sucrose); Containing 60 % or more by weight of sucrose (including invert sugar expressed as sucrose) or isoglucose expressed as sucrose | 0 |
| 22 |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 이하인 것 | 45 | Other; Preparation in powder form containing by weight: -15% or more but not more than 35% of wheat derived Maltodextrin, -15% or more but not more than 35% of whey (milk serum), -10% or more but not more than 30% of refined, bleached, deodorised and non-hydrogenated sunflower oil, -10% or more but not more than 30% of blended, aged spray dried cheese, -5 % or more but not more than 15% of buttermilk and -0,1% or more but not more than 10% of sodium caseinate, disodium phosphate, lactic acid | 0 |
| 23 |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 49 | Other | 0 |
| 30 |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 53 | Other; Of a kind used in drink industries | 0 |
| 40 |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 55 | Other | 0 |

| | | | | |
|----|---|--|--|--|
| | 추출물(extract) | | | |
| 50 | 향미(香味)용 조제품 | | | |
| 60 | 도토리 가루 | | | |
| 70 |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 | |
| 80 |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9 | 기타 | | | |
| 91 |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 | | |
| 99 | 기타 | | | |

2) 커피추출물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9407/16-1

신청물품: 커피 추출물

- 커피 추출물, 액상형태. 제품 샘플 및 제품 사양은 제시된 바와 같음. 제품의 특수성에 따라 냉동식품으로 취급됨. 판매되는 제품의 특성은 진한 브라운색으로 물에 희석시켜 사용함. ; 강하게 볶은 커피의 냄새; 아주 쓴 맛. 커피를 볶은 후 바로 음용할 수 없음; 따라서 물에 희석시켜 음용하는데 적합하다.

결정세번: 제2101.11-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101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ES2015SOL0000000000659

신청물품: 커피 추출물

- 코페아 카네포라 (야생 커피) 중에서 분쇄 추출한 초록색 카페인 추출물. 직접 인체에 투여, 섭취하지 않으며, 인체가 섭취 가능한 식품 처리 산업에 활용한다. 순 용량 25 킬로그램짜리 용기에 포장되어 시판된다.

결정세번: 제2101.11-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101호 해설서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2101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2101호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2101.11 --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한 국 | | E U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인스턴트 커피 | 하위분류 없음 | 0 |
| 9000 | 기타 | | |

3) 식이보충음료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SE2015-00302

신청물품: 식이보충음료

- 이 식이보충제는 무알코올 음료의 형태로, 인삼의 뿌리, 생강, 콩과 식물의 뿌리, 수분 그리고 소르비톨 등 다양한 식물/식물의 부분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음. 이 식이보충제는 750ml 용량의 플라스틱 병에 소매 포장되어 있음

결정세번: 제2202.90-1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2류 주3 / 제2202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SE2016-01985

신청물품: 식이보충음료

- 이 식이보충제는 액체 상태의 무알코올 음료이며, 즉석음료 형태입니다. 이 제품은 정보에 의하면 다양한 과일과 열매로부터 농축/추출된 수분, 설탕, 감미료,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이보충제는 플라스틱 재질의 봉지(1회 복용량 30ml)에 들어있으며, 30봉지당 하나의 종이 상자에 소매포장 되어 있음

결정세번: 제2202.90-1911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2류 주3 / 제2202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SE2016-01075

신청물품: 식이보충음료

- 식이보충제는 정보에 의하면 식물 추출물로 구성된 즉석음료 형태의 무알코올 음료이며 이 음료는 인디언 자작나무의 껍질, 관목(매화), 방동사니(사초과), 쓴버섯(가노데르), 뿌리(당근과), 목재(알로에), 백합뿌리, 콩과 식물의 뿌리, 인삼 뿌리(당귀), 수분 그리고 소르비톨을 함유하고 있음. 이 제품은 각각 70ml 크기의 병이 10개 들어있는 1박스에 있음. 이 음료는 일련번호 0401 ~ 0404에 해당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으며, 정보에 따르면 어떠한 예방 또는 치료 효과도 포함하지 않음

결정세번: 제2202.90-1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2류 주3 / 제2202호 해설서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Beverage based on red ginseng; 건강엔 헛개먹은 홍삼

- 홍삼농축액(홍삼사포닌 70mg/g이상) 0.89%, 헛개열매 추출물, 꿀, 과당, 자몽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액상을 파우치팩에 포장하여 15팩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x 15ea/box)

결정세번: 제2202.9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202호 해설서

- 본 품은 홍삼추출농축액, 기타 식물성 추출액에 꿀, 과당 등을 첨가하여 바로 음용할수 있도록 제조한 홍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1000호에 분류함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Beverage, non-alcoholic; HOVENIA DULCIS THUMB MILD

- 헛개나무열매추출액 89.5%, 벌꿀 10%, 미배아대두발효추출물, 글루타치온, 아스파라긴, 베타인 등으로 혼합, 조제한 담갈색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결정세번: 제2202.90-9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2202호 해설서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마시는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⑥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2202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2202호 -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 2202.90 -- 기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인삼음료 | 11 | Not containing products of headings 0401 to 0404 or fat obtained from products of headings 0401 to 0404; Soya-based beverages with a protein content of 2,8 % or more by weight | 0 |
| 2000 | 과실주스 음료 | 11 | Containing sugar (sucrose or invert sugar);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3000 | 식혜 | 19 | Other | 0 |
| 9000 | 기타 | 91 | Other;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 | 99 | Other | 0 |
| | | 15 | Soya-based beverages with a protein content of less than 2,8 % by weight; beverages based on nuts of Chapter 8, cereals of Chapter 10 or seeds of Chapter 12 | 0 |

| | | | | |
|--|--|----|--|---|
| | | 11 | Containing sugar (sucrose or invert sugar);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 | 19 | Other | 0 |
| | | 91 | Other;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 | 99 | Other | 0 |
| | | 19 | Other; Containing sugar (sucrose or invert sugar) | 0 |
| | | 11 |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 | 19 | Other | 0 |
| | | 91 | Other;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 | 99 | Other | 0 |
| | | 91 | Other, containing by weight of fat obtained from the products of headings 0401 to 0404; Less than 0,2 % | 0 |
| | | 10 |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 | 90 | Other | 0 |
| | | 95 | 0,2 % or more but less than 2 % | 0 |
| | | 10 |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 | 90 | Other | 0 |
| | | 99 | 2 % or more | 0 |
| | | 10 |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diluted with water or aerated | 0 |
| | | 90 | Other | 0 |

4) 어류조제품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NLRTD-2015-1337

신청물품: 어류조제품

- 어류 조제품. 해당 지식의 준수- 다양하고 많은 특징과 재료들 가운데서; - 둥근 모양의 판; - 지름이 9cm 이며 두께는 1.5cm인것, - 알래스카 산 대구; - 가루형태로 가공, - 냉동으로 가공, - 식물성 기름, - 물, - 감자 추출물, - 양파 파우더, - 이스트 추출물, - 마늘 파우더, - 오렌지 과육, - 머스타드. 해당 제품은 20퍼센트 이상의 어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4개의 단위를 함께 판에 넣어 포장하며 해당 내용물의 무게는 318g으로 함. 해당 제품은 어류의 종류에 따라 그 표기를 다르게 하며 그 방식은 제1604.20-90호의 세분화 방식을 준수

결정세번: 제1604.20-9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류 주2 / 제1604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NLRTD-2015-1966

신청물품: 어류조제품

- 식물성 기름에 어류를 준비하는 것은 다음의 지식과 특성들을 따름; - 어류 덩어리의 준비단계에서는; - 식물성 기름; - 열을 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물치다래 중. 해당 제품은 소매점에서 판매되며 한 캔당 185g의 내용물로 제공. 열을 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공된 어류의 성분은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음. 해당 제품은 어류의 종류와 그 보존방식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며 그 방식은 제1604.20-90호의 세분화 방식을 준수

결정세번: 제1604.20-9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04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DE6275/15-1

신청물품: 어류조제품

- 신청자의 정보에 따르면 음식 재료(감자베이스 위에 새우)가 물고기 페이스트로 구성 (재료 : 잘게 다진 생선살, 양파, 설탕, 소금, 흰 후추의) 꼬리까지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진 흰 다리 새우 / 생선살과 새우는 감자로 만든 국수형태의 베이스 위에 얹혀짐. 새우의 꼬리만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만들어진 식품은 냉동시킴. 식품재료 내에서의 생선과 새우의 함량은 20 GHT 이상이며 생선 중량이 우세. 각 10개의 "감자베이스 위의 새우"가 봉지안에 넣어져 포장됨. 통관법에 따라 "잘게 다진 생선재료"로 인정되며 여기서는 팡가시우스 생선류로 분류됨.

결정세번: 제1604.20-9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5 나 / 통칙 6 / 제16류 주2 / 제1604호 해설서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Fish cake, frozen ; SHRIMP STUFFED IN FISH BALL

- 어육(실꼬리돔) 50%, 새우살 15%, 감자 전분, 설탕, 소금, 양파, 팜유, 색소 등을 혼합, 성형하여 스팀처리 후 냉동한 것(크기 : 지름 약 3cm, 높이 약 4cm의 물방울 모양으로 외부는 노란색, 내부는 회백색의 충전물이 들어있으며, 내·외부의 성분조성은 같음)

결정세번: 제1604.20-4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류 주2 / 제1604호 해설서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품은 어육을 주성분으로한 조제품이므로 제1604.20-4090호에 분류함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Fish Preparation; SPLENDID ALFONSINO RICE KIT

○ 어육(금눈돔 74.1%), 정제수, 사케, 소금으로 조제된 것(①)과 정제수, 간장, 설탕, 소금, 주정, 다시마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소스(②)를 각각 PP백에 포장하여 파우치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85g(①토펅:48g, ②국물:37g)]

- 용도 : 쌀 조리시 첨가

<그림> 어류조제품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1604.19-9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604호 해설서

○ 본 품은 금눈돔으로 조제된 밥을 먹기 위해 밥에 혼합하여 식용하는 물품으로서, 금눈돔이 조제된 토펅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⑥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1604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1604호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1604.20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생선 페이스트 | 05 | Preparations of surimi | 0 |
| 2000 | 생선 마리네이드 | 10 | Other: Of salmon | 0 |
| 3000 | 생선소시지 | 30 | Atlantic salmon (<i>Salmo salar</i>) | 0 |
| 40 | 생선묵 | 90 | Other | 0 |
| 10 | 게맛의 것 | 30 | Other: Of Salmonidae, other than salmon | 0 |
| 90 | 기타 | 10 | Trout (<i>Oncorhynchus mykiss</i>) | 0 |
| 9000 | 기타 | 90 | Other | 0 |
| | | 40 | Of anchovies | 0 |
| | | 50 | Of sardines, bonito, mackerel of the species <i>Scomber scombrus</i> and <i>Scomber japonicus</i> , fish of the species <i>Orcynopsis unicolor</i> | 0 |
| | | 10 | Of sardines: Of the species <i>Sardina pilchardus</i> | 0 |
| | | 19 | Other | 0 |
| | | 30 | Of bonito (<i>Sarda s.p.p.</i>) | 0 |
| | | 40 | Of mackerel of the species <i>Scomber scombrus</i> | 0 |
| | | 50 | Of mackerel of the species <i>Scomber japonicus</i> | 0 |
| | | 90 | Other | 0 |
| | | 70 | Of tuna, skipjack or other fish of the genus <i>Euthynnus</i> | 0 |
| | | 30 | of Bluefin tunas (<i>thunnus thynnus</i>); Preserved | 0 |
| | | 35 | Other | 0 |
| | | 40 | Of Atlantic bigeye tuna (<i>Thunnus obesus</i>); | 0 |

| | | | |
|--|----|--|---|
| | | Preserved | |
| | 45 | Other | 0 |
| | 50 | Skipjack (Katsuwonus pelamis); Preserved | 0 |
| | 55 | Other | 0 |
| | 95 | Other; Preserved | 0 |
| | 99 | Other | 0 |
| | 90 | Of other fish | 0 |
| | 11 | Of herring; Of the species Clupea harengus | 0 |
| | 19 | Other | 0 |
| | 20 | Preserved smoked coalfish | 0 |
| | 30 | Brisling or sprats (Sprattus sprattus); In airtight cans | 0 |
| | 35 | Other | 0 |
| | 40 | of mackerel (Scomber australasicus) | 0 |
| | 50 | Lamprey | 0 |
| | 60 | Swordfish (Xiphias gladius) | 0 |
| | 90 | Other | 0 |

나. 화학산업

1) ABS 공중합체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DE9039/16-1

신청물품: ABS 공중합체

○ 출원인의 정보 : 스티렌-부타디엔-아크릴로 니트릴-폴리머 연구결과에 기반한 자가연결 에멀션 / 테르폴리머. 상품건본: 스티렌-부타디엔-아크릴로 니트릴-폴리머(약 40 GHT 건조 물질)의 황색, 유백색 분산액. 추가 첨가제에 대한 정보는 없음. 결과: 스티렌-부타디엔-아크릴로 니트릴-폴리머는 액체형 분산액으로서 3903 30번의 하위 그룹에 속한다.

결정세번: 제3903.3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39류 주1, 주3 나, 주4, 주6 가 / 제3903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의 회색계 펠렛상(길이 : 약 3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결정세번: 제3903.3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39류 주4 / 제39류 주6 / 제3903호 해설서

○ 본 품은 구성단량체 중 스티렌이 최대중량(95% 미만)을 차지하며, 소호 제3903.20호 및 제3903.30호에 명명된 중합체의 구성단량체 단위가 95% 이상인 일차제품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3.30-0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모양의 형태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차제품인 본 물품은 이 조건에 부합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3903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3903호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3903.3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 한 국 | | E U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 하위분류 없음 | 0 |

2) Poly(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10693/15-1

신청물품: PET 조각

○ 출원인의 정보 : 출원인의 정보와 동봉된 데이터 시트에 따르면 제시된 제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라트(PET) 조각이다. 이는 페트병에서 얻어 공압출에 재사용된 제품이다. 재질의 점도수는 78 ml / g이다. 샘플에 대한 조사 결과: 플라스틱 조각은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 하였다. 연구 결과 :이 기본 형태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라트 조각은 (KN) 3907 6020의 하위그룹 상에서 78 ml / g 이상의 점도를 나타낸다.

결정세번: 제3907.60-2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39류 주3 다, 주6 나 / 제3907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FR-RTC-2015-000725

신청물품: 장식용 스펅글

○ 글리세롤에 담겨있는, 알루미늄 코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원료 형태(가루) 은색 반짝이. 이 상품은 병 포장으로, 반짝이는 그림이나 장식에 부착되는 용도이다.

결정세번: 제3907.60-8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3907호 해설서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
POLYESTER CHIP

- 무색 투명한 펠릿상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용도 : 원사 및 필름 제조용 원료

< 그림 > POLY CHIP (신청물품)



- 결정세번: 제3907.6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39류 주6 / 제3907호 해설서
- 본 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무색 투명한 펠릿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60-0000호에 분류함

④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390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3907호 -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3907.6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20 | Having a viscosity number of 78 ml/g or higher | |
| | | 80 | Other | |
| | | 10 | Copolymer of terephthalic acid and isophthalic acid with ethylene glycol, butane-1,4-diol and hexane-1,6-diol | |
| | | 40 |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llets or granules: - with a specific gravity of 1,23 or more but not more than 1,27 at 23° C, and - containing not more than 10 % by weight of other modifiers or additives | |
| | | 50 | Flexible packages (for oxygen sensitive polymers) manufactured from a laminate of: - not more than 75 μm of polyethylene, - not more than 50 μm of polyamide, - not more than 15 μ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and - not more than 9 μm of aluminium with a tensile strength of more than 70 N/15 mm and oxygen transmission rate of less than 0,1 cm ³ /m ² /24 hrs at 0,1 MPa | |
| | | 60 | Oxygen binding copolymer (as determined by the ASTM D 1434 and 3985 methods), obtained from benzenedicarboxylic acids, ethylene glycol and polybutadiene substituted by hydroxy groups | |
| | | 90 | Other | |

3) 폴리에틸렌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22672/14-1

신청물품: 저밀도 선형 폴리에틸렌

- 상기 제출 된 제품은 공압출 다층 필름의 제조를 위한 성분으로서, 저 밀도 (LLDPE)의 변성 선형 폴리에틸렌 성분(직경 약 3.5 mm의 흰색, 약간 투명하고 둥근 입자의 성분) 제3901.1010호의 의미상에서는 저밀도 (LLDPE)의 선형 폴리에틸렌으로 규정됨.

결정세번: 제3901.10-1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39류 주3 다, 주6 나 / 제 3901호 해설서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Polyethylene, in primary form; LDPE

- 백색 pellet상의 폴리에틸렌(비중 0.94 미만)
 - 용도 : 포장용, 코팅용, 용기뚜껑 제조용 등

결정세번: 제3901.10-9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39류 주6 / 제3901호 해설서

- 제3901호 해설서에서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은 20℃ 에서 비중 0.94 미만(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의 폴리에틸렌으로 특히 식품의 포장필름용, 지·섬유판·알루미늄호일 등의 도포용, 전기 절연용 및 가구·완구 등의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
- 본 품은 비중이 0.94 미만인 펠릿상의 폴리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10-9000호에 분류함

④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3901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3901호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 3901.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에 한한다)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 10 | Linear polyethylene | |
| 9000 | 기타 | 20 | High flow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1-butene / LLDPE (CAS RN 25087-34-7) in form of powder, with - a melt flow rate (MFR 190 °C/2,16 kg) of 16g/10min or more, but not more than 24 g/10 min and - a density (ASTM D 1505) of 0,922 g/cm3 or more, but not more than 0,926 g/cm3 and - a vicat softening temperature of min. 94 °C | |
| | | 40 |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LLDPE) (CAS RN 9002-88-4) in the form of powder, with - not more than 5 % by weight of comonomer, - a melt flow rate of 15 g/10 min or more, but not more than 60 g/10 min and - a density of 0,922 g/cm3 or more, but not more than 0,928 g/cm3 | |
| | | 90 | Other | |
| | | 90 | Other | |
| | | 20 | Polyethylene, in the form of granules, of a specific gravity of 0,925 (± 0,0015), a melt flow index of 0,3 g/10 min (± 0,05 g/10 min), for the manufacture of blown films of a haze value not more than 6 % and an elongation at break (MD/TD) of 210/340 | |
| | | 30 | Polyethylene granules, containing by weight 10 % or more but not more than 25 % of copper | |
| | | 90 | Other | |

4) 휴대폰거치대

① EU 사전심사 사례-1

□ 참조번호: DE3950/15-1

□ 신청물품: 휴대폰 거치대

- 제품의 샘플에 의해 설명된 문서에는 휴대폰용 스탠드라고 정의되어 있다. 모서리가 둥근 비금속판으로 구성됨. 39장 1항에 제시된 바대로 플라스틱 소재의 가죽 엠보싱 필름이 장착됨. 약 8.6 X 6.5 X 5.5 cm 크기의 이 제품은 상단이 지붕형태이며 접이식이고 앞면에 고정대가 장착되어 있다. 금속판 장식이 추가되어 있다. 포장박스에서 개봉된 휴대폰 홀더의 특성은 가격과 플라스틱재질의 전체적 외관이라는 관점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제품은 (KN) 3926 1000부터 3926 9050에 설명된 명칭의 정의와는 달리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된다.

<그림> 신청 물품 (휴대폰거치대)



□ 결정세번: 제3926.90-92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2 나 / 통칙 3 나 / 통칙 5 나 / 통칙 6 / 제39류 주1, 주10

② EU 사전심사 사례-2

□ 참조번호: DE3953/15-1

□ 신청물품: 휴대폰 거치대

- 물품 패턴으로 설명된 물품에는 39 장의 주 1에 정의된 플라스틱의 소위 "고리 받침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형된 물품은 자체 접착성 원형 받침대 (Ø 4c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0 ° 회전 스탠드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받침대가 ~. 다시 Antragstellerin에 붙어 있습니다. 휴대 전화의 예이며 필요에 따라 벗겨 낼 수 있습니다. 최적의보기 각도에서 장치를 사용하기위한 스탠드와 휴대 전화를 손에 들고있을 때 추가적인 보호 장치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폴리 백의 설치 지침과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다른 물품 (CN (3926 1000-3926 9092)'이외의 항목으로 분류된 등급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림> 신청 물품 (휴대폰거치대)



□ 결정세번: 제3926.90-97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5 나 / 통칙 6 / 제39류 주1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 자료출처: 품목분류 협의회

□ 물품설명: 휴대폰 거치대

- 굴곡이 있는 타원형 Steel의 양면을 PU원단으로 덮고 열융착 접착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개상태로 휴대폰의 뒷면에 부착하고 중심부를 누르면 Steel의 탄성으로 인해 원호형상이 되어, 거치대 또는 손가락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 본 물품은 steel (중량 1.5g, 가격비율 17%)과 폴리우레탄 (중량 1.1g, 가격비율 83%)으로 구성됨

<그림> 신청 물품 (휴대폰거치대)



-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7326호 해설서
- 본 물품은 Steel과 PU로 구성된 것으로, 제작 및 구매의도에 따른 사용에 있어서 Steel의 탄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Steel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④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3926호 및 제7326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3926호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3926.90 -- 기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기계용의 부분품 | 50 | Perforated buckets and similar articles used to filter water at the entrance to drains | 0 |
| 2000 |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92 | Other; Made from sheet | 0 |
| 3000 | 레이블과 태그 | 10 | For technical uses,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4000 |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 20 | Other; Reflecting sheeting or tape, consisting of a facing-strip of poly(vinyl chloride) embossed in a regular pyramidal pattern, heat-sealed in parallel lines or in a grid-pattern to a backing-strip of plastic material, or of knitted or woven fabric covered on one side with plastic material | 0 |
| 5000 |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 90 | Other | 0 |
| 6000 | 앨범 | 97 | Other | 0 |
| 9000 | 기타 | 05 | For technical uses,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10 | Microspheres of a polymer of divinylbenzene, of a diameter of 4,5 μm or more but not more than 80 μm | 0 |
| | | 15 | Glass fibre reinforced plastic traverse leaf spring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motor vehicle suspension systems | 0 |
| | | 20 | Housings, housing parts, drums, setting wheels, frames, covers and other parts of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remote controls | 0 |
| | | 25 | Unexpandable microspheres of a copolymer of acrylonitrile, methacrylonitrile and isobornyl methacrylate, of a diameter of 3 μm or more but not more than 4,6 μm | 0 |
| | | 30 | Parts of car radio and car air-conditioner front panels - of | 0 |

| | | | |
|--|----|---|---|
| | |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with or without polycarbonate, - coated with a copper, a nickel and a chrome layers, - with a total thickness of coating of 5,54 μm or more but not more than 49,6 μm | |
| | 37 | Polycarbonate control interface buttons for steering pad switches coated on the outside with scratch resistant paint | 0 |
| | 50 | Knob of car radio front panel, made of Bisphenol A-based polycarbonate | 0 |
| | 55 | Flat product of polyethylene, perforated in opposing directions, of a thickness of 600 μm or more but not more than 1 200 μm and of a weight of 21 g/m2 or more but not more than 42 g/m2 | 0 |
| | 60 | Sheath contraceptives of polyurethane | 0 |
| | 65 | Die-cast decoration element made of polycarbonate resin, coated with - a silver-colour acrylic paint, and - a transparent scratch-resistant paint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car radio front panels | 0 |
| | 70 | Epoxide resin, containing by weight 70 % or more of silicon dioxide, for the encapsulation of goods of headings 8533, 8535, 8536, 8541, 8542 or 8548 | 0 |
| | 90 | Other | 0 |

다. 섬유산업

1) 합성스테인레스섬유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22161/15-1

신청물품: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의 것)

- 합성섬유. 이른 바 포장재 품목번호 HCS1764, 사진 부록 참조. 요청에 따라 100% 폴리에스테르로 제공. 길이 (약 3cm)로 절단 - 섬유성분이 정돈되지 않음. 특성 때문에 제 39장에 제시된 제품은 없음. “합성섬유, 섬유질이 정돈되지 않았으며 방적용으로는 부적합. 폴리에스테르 재질.”

결정세번: 제5503.20-0000호

결정근거: 제54류 주1 / 제54류 주2 / 제39류 주2 거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23896/14-6

신청물품: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의 것)

- 유리포장의 재봉 용품, 품목 12257, 포장재 포함. 요청에 따라 100 % 폴리에스테르, - - 길이 (약 2cm)로 절단. 섬유성분이 정돈되지 않음. 특성 때문에 5601번에 의한 매듭과 노브가 없음. 투명 봉투에 포장됨. 포장재는 버튼, 세가지의 핀, 자수 바늘, 조직, 모직의 일부, 바느질 스투드, 자수 스투드, 지그재그형 테두리와 밴드(vZTA 번호에 대해서는 2-5번 항목, 7에서 11번 항목 참조)를 포함한다. 재봉용품은 특별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조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트에 분류되지 않는다. 내용물은 폴리에스테르 합성 섬유로서 분류되며 방적용으로 부적합하다.

결정세번: 제5503.2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5 나 / 통칙 6 / 제54류 주1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DE10497/15-1

신청물품: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의 것)

○ 합성 섬유, 솜재질. 사진 부록을 참조. 일정한 길이로 절단됨. 섬유질이 정돈되지 않았으며 방직용으로는 부적합.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합성 섬유로 분류.

결정세번: 제5503.20-0000호

결정근거: 제54류 주1 / 제54류 주2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Polyester staple fibres

○ 단면이 원형이고 크림프가 있는 회색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서 서로 엉켜있는 상태의 것(섬유장의 길이 약 45mm)

- 용도 : 자동차 내장재 원료

<그림> Polyester staple fibres(신청 물품)



결정세번: 제5503.20-9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본 품은 단면이 원형이고 카드·코움이나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섬유길이가 45mm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03.20-9090호에 분류함.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Polyester staple fiber, down feather, wool mixture; Down&wool sulate

○ 횡단면이 원형인 백색의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이형단면사 50% 이하 혼합) 60~70%와 양모 15~20%가 혼합되어 작은 볼 형태로 뭉쳐져 있는 것 및 백색~미황색계 오리 또는 거위의 솜털 15~20%가 혼합된 것

- 용도 : 의류 충전재용 등

결정세번: 제5503.20-9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1부 주2 가 / 제5503호 해설서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횡단면이 원형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5503.20-9090호에 분류함

⑥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5503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5503호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5503.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 한 국 | | E U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 하위분류 없음 | 0 |
| 90 | 기타 | | |
| 10 |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 | |
| 90 | 기타 | | |

2) 합성필라멘트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

① EU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LRTD-2015-0853
- 신청물품: 폴리에스테르 강력사
 - 폴리에스테르로 제조 - 흰색 색상; 3개의 실의 형태를 띤 섬유; - 케이블 모양으로 되어있거나 꼬여진(twisted); - 그것의 강도는 53 cN/tex 이상; - 소매단위로 판매하게 하지 아니할 것. 방적사들은 케이스에 포장하되 정량으로 10.5k씩 망에 담는다. 케이블 모양 또는 꼬여진(twisted) 53cN/tex 이상의 강도를 가진 방적사들은 내구성이 강한 방적사로 간주한다. 따라서 분류는 반드시 합동 분류법의 GN-세분화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 결정세번: 제5402.2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1부 주6 / 제54류 주1 / 제5402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High tenacity filament yarn of polyester
 - 백색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의 강력사(강도 83.4cN/Tex, 제시무게: 약 12kg)
 - 용도 : 섬유 산업용
- 결정세번: 제5402.2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1부 주6 / 제5402호 해설서
 - 본 품은 관세율표 제 11부 주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폴리에

스테르의 단사로서 강도가 60 센티뉴턴/텍스 이상인 강력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5402.20-000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5402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5402호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테시 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5402.2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에 한한다)

| 한 국 | | E U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 하위 분류 없음 | 0 |

3)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한 장갑

① EU 사전심사 사례-1

- 참조번호: FR-RTC-2014-007934
- 신청물품: 장갑
 - 잘림방지 손가락 장갑, 손 안쪽면 및 손가락 상부 일부 플라스틱 재질(폴리우레탄) 코팅, 손목부 조임 소맷동, 밑면 대비색으로 마감 감침질
- 결정세번: 제6116.10-8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61류 주3 / 제6116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 참조번호: FR-RTC-2015-001790
- 신청물품: 장갑
 - 합성섬유제 손가락 장갑. 손 안쪽면 및 손가락 사이, 손가락 상부 일부 플라스틱 재질(폴리우레탄) 코팅, 손목 조임 소맷동, 밑면 대조 색 깔로 마감 감침질
- 결정세번: 제6116.10-8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61류 주3 / 제6116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 참조번호: FR-RTC-2015-001591
- 신청물품: 장갑
 - 겉면 혼색 편물 손목 장갑, 고무 코팅부 65.3%, 비코팅부 3.8%, 면직물 30.9% (손목 덮개 부분). 보이는 고무 부분은 아크로니트릴 부다티엔. 편물 부분은 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렌 및 스판덱스 재질. 고무 코팅

부 무게 1500g/m2 이하.

- 결정세번: 제6116.10-2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6116호 해설서

④ EU 사전심사 사례-4

- 참조번호: FR-RTC-2015-001070
- 신청물품: 장갑
 - 전체 코팅된 면장갑 - 손바닥 및 손가락 상부 PVC 폼 처리. 손목부 소맷동 처리, 마감 바이어스. 켈링 안감 있음.
- 결정세번: 제6116.10-8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61류 주3 / 제6116호 해설서

⑤ EU 사전심사 사례-5

- 참조번호: FR-RTC-2015-001054
- 신청물품: 장갑
 - 손바닥 및 손가락 대부분이 니트릴 코팅된 장갑. 손목부 조임 밴드 있음
- 결정세번: 제6116.10-8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61류 주3 / 제6116호 해설서

⑥ EU 사전심사 사례-6

- 참조번호: FR-RTC-2015-001846
- 신청물품: 장갑
 - 일부 고무(라텍스) 마감된 면장갑. 손목부 고무 조임

- 결정세번: 제6116.10-2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6116호 해설서

⑦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Knitted gloves, coated with plastics; PU PALM
 - 진회색계 합성섬유 편물제 손가락 분리형 장갑의 일면을 진회색계 폴리우레탄으로 코팅한 것
 - 용도 : 작업용 장갑

<그림> 신청 물품 (작업용 장갑)



- 결정세번: 제6116.1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6116호 해설서
 - 본 품은 합성섬유 편물제 손가락 분리형 장갑의 일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6.10-0000호에 분류함

⑧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FIRE SAFTY GLOVES

- 플라스틱이 도포된 아라미드 편물(손바닥방향의 손가락과 손바닥; 전체 중량의 50%를 초과)과 아라미드 직물(손등방향의 손가락과 손등일부, 손목부분)로 만든 흑색계 장갑으로 손가락이 분리되고, 손목을 덮으며, 손목부분은 조임용 밴드가 있고, 금속제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에 아라미드 직물과 아라미드 편물이 보강되어 있음

- 용도 : 보호용 안전장갑(화염, 화재 등으로 부터 보호)

결정세번: 제6116.1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6116호 해설서

- 본 품은 플라스틱이 도포된 아라미드 편물이 전체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부분이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이므로 편물제의 장갑으로 보아 제6116.10-0000호에 분류

⑨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6116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6116호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 6116.10 --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 20 | Glove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rubber | 0 |
| | | 80 | Other | 0 |

4) 청소용 포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11400/15-7

신청물품: 세정수건

- 세정수건 - 단색으로 된 약 0.5 mm 두께의 섬유소재. 크기는 약 9.7 X 9.7 cm, - 가장자리는 매끄럽지 않게 절단되어 있으며 그대로 제품 생산됨. 세정수건은 스네이크 바이트 부품중의 일부이며 USB 케이블, 이어폰, 게임콘솔을 위한 운반-보관 가방, 게임기 케이스, 2개의 화면 보호기, 전기 컨버터 폴리도구(모두 vZTA 물건은 아님)등이 개별판매용으로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포장됨. 제품에 대한 공통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AV 3 (b) 에 나오는 안내서에서 조립품의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제품은 섬유 재질의 완성품 (세정수건)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6307.1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5 나 / 통칙 6 / 제11부 주7 가 / 제11부 주8 가 / 제6307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8962/15-1

신청물품: 세정 수건

- 세정 수건, 다섯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섬유질의 수건. 사진 부록 참조. 다양한 색상, 플라스틱 링과 종이밴드롤이 포함됨. 40cm X 37cm (길이 x 폭) 크기의 직사각형. - 단색의 섬유질로 제조됨. 요청에 따라 80% 폴리에스터와 20% 폴리아미드(둘 다 합성화학섬유) 가장자리에 바느질 처리됨. (따라서 완성품으로 제조됨). "섬유소재의 여타 제품 (세정수건)으로 분류"

결정세번: 제6307.1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5 나 / 제63류 주1 / 제11부 주7 라 / 제11부 주8 가 / 제6307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DE14606/15-1

신청물품: 청소용 수건

- 청소용 수건, 소위 먼지 떨이, 품번 362, 사진 부록 참조 - 두 부분으로 나뉜 내용물을 인쇄된 골판지 상자에 포장. 사각형. 요청에 따라 35cm X 35cm의 크기. 약 3.8 mm의 두께로 단색의 플러시 섬유질로 구성됨. 94 % 폴리에스테르와 6 % 폴리 아미드 (모두 합성 화학섬유) - 가장자리에 바느질 처리. (완성품) "섬유소재의 여타 제품 (세정수건)으로 분류"

결정세번: 제6307.1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5 나 / 제63류 주1 / 제11부 주7 라 / 제11부 주8 가 / 제6307호 해설서

④ EU 사전심사 사례-4

참조번호: DE10652/15-1

신청물품: 세정수건

- 세정수건, 청소용품 PurMop ML40, 품번 2112008, 사진 부록 참조 - 직사각형 모양으로 45cm X 13cm (길이X폭) - 여러 겹으로 만들어 짐. 단색으로 되어있는 윗면 (와이핑 측)은 약 3 mm 두께의 섬유로 만들어 짐. 직물로 만든 작은 밴드로 감싸여 있으며 하단은 가장자리가 봉제되어 있음. 약 0.7 mm 두께의 부직포 층과 1 mm 두께의 단색 섬유질 층으로 구성. 하부 측은 약 0.8 mm 두께의 단색 직물로 만들어 짐. 모든 직물은 요청에 따라 100 % 폴리 에스터 (합성 화학섬유) 로 이루어져 있으며 밑면의 양측 좁은면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직

물조각이 봉제되어 있어 청소용도구에 단단히 고정 될 수 있다. 밑 부분에는 봉제된 라벨이 달려 있으며 봉제가 이뤄지면 완성품으로 출하된다. 세정수건으로 일컬을 수 있으며 분리된 상태 때문에 9603의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용목적과 범위를 고려하면 그 직물은 부직포와는 달리 제품의 특성을 규정한다. 기타 완제품(세정수건)은 편물 또는 섬유 재료로 만들어진다.

결정세번: 제6307.10-1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2 나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1부 주7 바 / 제11부 주8 가 / 제63류 주1 / 제6307호 해설서

⑤ EU 사전심사 사례-5

참조번호: DE11738/15-1

신청물품: 세정 스폰지

- 세정 스폰지, 소위 미세 섬유질의 스폰지. 첨부 사진 참조. 클리닝 천과 스폰지로 구성된 결합 상품 - 스폰지는 완전히 깨끗한 천으로 싸여있다. - 사각형에 가까운 둥근 모서리 형태이며, 약 26cm X 12cm X 8cm 의 청소용 천 소재로 되어 있음. 이어서 한쪽면은 터프팅 처리가 된 직물로 만들어져 있으며 다른 한쪽은 일반 직물로 되어 있다. 둘 다 화학 섬유로 구성됨. 끝부분은 봉합처리. 특히 사용 범위와 의미를 고려하면 표면처리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본 제품은 6307 1010 과 1090 6307에 의거한 명명법에 따라 명칭이 부여된다. 스폰지, 셀 플라스틱, 통합 완제품. 세공의 흔적은 없음, 세정 스폰지로 이용 - 클리닝 천과 스폰지 모두 물과 세제로 세척하기에 적합. 클리닝 천은 그 표면의 특수 구조 때문에 기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설계된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가지고; 그러나, 클리닝 천 제품 유를 제공합니다.가. 때문에 표면의 본질적인 특성의 특정 구조에. 1010 6307 및 6307 1030에서 규정되는 섬유소재의 여타 제품 (세정수건)으로 분류"

- 결정세번: 제6307.1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3 나 / 통칙 3 다 / 통칙 6 / 제11부 주7 바 / 제11부 주8 가 / 제63류 주1 / 제6307호 해설서

⑥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Floor-cloths; DRY Sweeping Cloths
 - 직사각형의 백색계 마루포를 접어서 19매를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양 가장자리(약 3.5cm)는 엠보싱 압착하고, 가장자리를 제외한 부분은 약 2cm 마다 “>”모양으로 폭 약 1mm로 열압착하였으며, 열압착되지 않은 부분은 일부분을 절단하여 약 1cm로 섬유를 일으킨 부직포에 유동과라핀 등을 처리한 것(마루포 전체 크기: 약 26cm×22cm)

<그림> 마루닦이용 포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6307.1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6307호 해설서
 - 본 품은 마루닦이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용 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⑦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Mop; F-04A
 - 폴리비닐알코올 주성분의 연녹색계 원통형의 셀룰라 플라스틱으로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굴곡(간격: 0.5cm, 개수: 14개)이 있고 자루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금속제가 부착되어 있는 청소용 스펀지를 수지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길이 27cm, 지름 6cm)
 - 용도 : 바닥 청소용 리필 스펀지
- 결정세번: 제9603.9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2 가 / 통칙 6 / 제9603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스펀지 모프의 모프 헤드 패드로만 소매포장 되어 있어 자루와 미조립 상태이지만 바닥 청소 하는데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 따라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제9603.90-0000호에 분류함

⑧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630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6307호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 6307.10 -- 마루닦이포 · 접시닦이포 ·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마루닦이포 · 접시닦이포 ·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 10 | Knitted or crocheted | 0 |
| | | 30 | Nonwovens | 0 |
| | | 90 | Other | 0 |
| | | 10 | Hand-made | 0 |
| | | 90 | Other | 0 |

라. 금속산업

1) 프레스용·스탬핑용·편칭용 공구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15709/15-1

신청물품: 스탬핑용 공구

- 교환식 숫자/철자 도구: 날개 판매용 포장품의 조립. 이 제품은 스탬프 형태의 교환식 도구로서 강철재질의 철자/숫자판이 장착되어 있다. 한 쪽 끝에 각각 하나의 숫자나 철자가 설치되어 있다. 두개의 타이핑 홀더와 신속교환 아답터가 있다. 이 숫자/철자 도구는 경우에 따라 소위 번호식별장치에 투입되어, 금속재질의 호스판에 원하는 기호를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금고 등에 적합하다. 그림 참조. 그러한 제품은 기계 혹은 비기계의 수공기구나 공작기계, 그리고 금속 가공에 사용되는 프레스 도구로서 통합 시스템 (HS) 8207 30 의 하위그룹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8207.3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5 가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82류 주1 가 / 제8207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5826/15-1

신청물품: 편칭용 공구

- "편칭 공구"; - 완전히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교환식 도구. 원뿔형 스탬프. 구멍이 나 있음. 한쪽은 원형 구멍, 다른 한쪽은 육각형 구멍. 세 개의 원통형 압나사. 다양한 형태의 샤프트. 이 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평면을 (다각형 내지는 원형으로) 편칭하는 데 이용된다. 비금속

재질의 철판 혹은 줄무늬 재료로 되어 있으며 편칭나사는 완제품에 맞게 제작된다. 그림 참조. 그러한 제품은 교체식 도구(절삭공구)로서 금속작업을 위한 공작기계에 사용된다. 통합명칭 8207 3010 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됨.

결정세번: 제8207.30-1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82류 주1 가 / 제8207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DE19625/14-1

신청물품: 프레스용 공구

- 이른바 클린칭 공구. 완전 비금속 재질의 교체식 도구. 상부와 하부(스탬프와 결합나사)로 구성. 다양한 길이(30, 40, 50, 60, 80 und 100 mm), 그리고 다양한 지름(상부 스탬프: 1,5, 2 - 6, 8, 10, 12, 14, 16, 18 에서 26 mm: 나사: : 4, 10, 14, 16 과 20 mm) 의 견고한 원통형 제품. 스탬프와 원통형 나사는 끝에 약 6 에서 23 mm 의 판이 갖추어져 있다. 편치는 끝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다. 이 제품은 교체식 도구로서 금속을 변형시키는 데 사용되며, 트렁크 덮개나 후드, 세탁기 하우징 등 (요청자 정보) 등을 절삭, 제조하는 데 이용된다. 스탬프 및 나사는 플라스틱 상자에 개별 포장된다. 그림 참조. 이러한 제품은 교체식 압연공구로서 공작 기계, 금속 가공에 이용된다. . 통합명칭 8207 3010 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됨.

결정세번: 제8207.30-1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5 나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82류 주1 가 / 제8207호 해설서

④ EU 사전심사 사례-4

□ 참조번호: ES2015SOL0000000000026

□ 신청물품: 스탬핑용 공구

- 금속 판자 냉처리 인쇄를 위해 활용되는 교환 가능한 도구/공구 및 주형. 신청자들의 확인 사항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프레스 기기에 설치하여 특정 자동차 모델의 계기판에 탑재되는 특정 금속 부품 제조에 활용되며, 해당 자동차들의 수명이 만료되면 고철로서 재활용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주형들은 철로 제조되며, 상-하부 두 부위로 구성되고, 프레스 기기에 다양한 크기로 설치되며 개별 팔레트에 설치된 그 무게는 1,120 킬로그램에서 9,450 킬로그램까지 다양하다.

□ 결정세번: 제8207.30-101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5 가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82류 주1 가 / 제8207호 해설서

⑤ EU 사전심사 사례-5

□ 참조번호: DE6368/15-1

□ 신청물품: 편칭용 공구

- "SB장치 - 래킷을 장착한 PG" 개별 포장 세트의 조립, - 교체 가능한 8개의 도구 (위치: 8207) 1단계 드릴, 중앙에 구멍이 있는 원통형 철 판드릴 7개. 상단 끝에 원통형 물체. 구멍 중앙에 날카롭게 연마된 서로 다른 크기의 내부 나사가 장착됨. 8203 및 8204 호의 공구의 조립 (8206), 그리고 아직 조립되지 않은 8203 호와 유사한 편칭 공구를 조립. 1 렌치 (래킷), 위치 (8204) - 완전한 비금속 - 골판지 상자에 포장. 강철판의 절단 및 세트의 내부 3.5 mm의 두께의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절삭작업에 적합. 연속 사용에 적합한 도구. 조립품 내부에 8207 번 위치의 교체가능한 공구가 특징. 그림 참조. 이러한 제품은 관세 (ZT)의 코드 번호 8207 3010 90 0 에 따라 금속 가공용 도구 (편

칭 공구)"로 분류된다.

□ 결정세번: 제8207.30-1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2류 주1 / 제8207호 해설서

⑥ EU 사전심사 사례-6

□ 참조번호: DE22516/14-1

□ 신청물품: 프레스용 공구

- 완전 비금속으로 만든 원통형의 교체 가능한 공구. 편치는 끝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다. 도구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길이 (100, 127 mm)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직경 (시리즈 RE RE: 9.53, 12.70, 15.88, 19.05, 22.23, 25.4 mm, LP 10, 14mm)을 지니고 있다. Setzstempel은 유압식 테이블 프레스 또는 핸드 프레스 (이 BTI 모두없는 주제)에 가끔 사용된다. 제품은 구멍(요청 정보)의 밀봉(압연하여)을 위한 교체 가능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림 참조. 이러한 제품은 관세의 코드 번호 8207 3010 90 0 로서 비금속 작업 부품, 금속 가공, 기계 또는 비기계 수공도구 또는 교체 가능한 압연도구로 분류된다.

□ 결정세번: 제8207.30-1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2 가 / 통칙 3 나 / 통칙 5 가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82류 주1 가

⑦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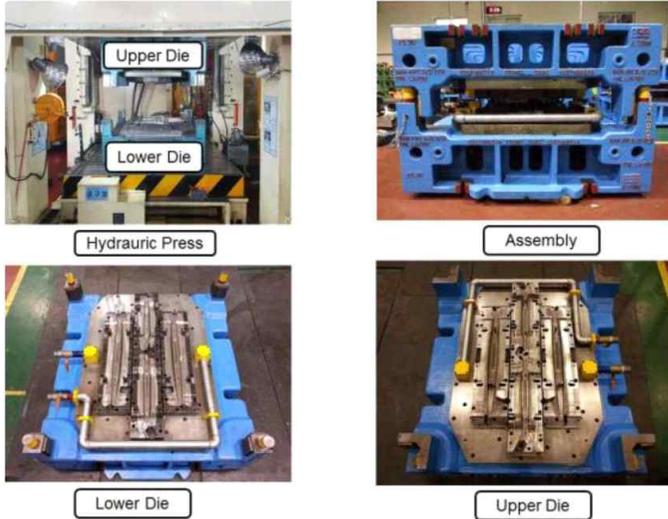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Tools for pressing ; HOT FORMING DIE

- Casting, Maniold plate, control valve, form steel, water deflector 등으로 구성되어 고속 유압프레스기에 장착하여 사용되며, 가열된 합금 Plate를 상-하부 주형에 삽입 후 Pressing하여 각종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합

<그림> 프레스용 공구 (신청물품)



- 결정세번: 제8207.30-1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207호 해설서
- 제8207호 해설서에서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 tool)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함에 따라
 - 본 물품은 제8462호의 프레스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프레스용 호환성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⑧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Tools for Punching ; 자동차 차체 제작용 금형;

- 상, 하부가 하나의 셋트로 구성되며 상하부의 접촉면은 금속으로 제작되었음. 프레스에 장착하여 접촉면의 압력에 의해 자동차 차체를 제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재질 : 주물 FCD550/FC300 + 강HK600)
 - 용도 : Trimming, Piercing 가공 ⇒ 윤곽의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 주는 공정

- 결정세번: 제8207.30-3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2류 주1 / 제820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용면에 의해 소재를 제작하고 프레스기에 부착하여 금속재료에 프레스 등의 작업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며 상하 일체형으로 제작된 호환성 공구로서 제8462호의 내용 및 상품학상 '펀칭' 가공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펀칭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30-3000호에 분류함.

⑨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3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Blade die for tire mold
- 타이어 금형용 블레이드를 제작하기 위한 프레스기에 장착되는 프레스용 공구
 - 굽어진 블레이드의 형상구현

<그림> 프레스용 공구 (신청물품)



- 결정세번: 제8207.3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20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타이어 금형용 블레이드의 굽어진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물품으로 상하부의 프레스 작업을 통해 가공재료를 성형하는 프레스용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⑩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20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207호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스·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8207.30 -- 프레스·스탬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프레스(pressing)용 | 10 | For working metal | 0 |
| 2000 | 스탬핑(stamping)용 | 10 | Set of transfer and/or tandem press tools for cold-forming, pressing, drawing, cutting, punching, bending, calibrating, bordering and throating of metal shee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frame parts of motor vehicles | 0 |
| 3000 | 펀칭(punching)용 | 90 | Other | 0 |
| 9000 | 기타 | 90 | Other | 0 |

2) 나사 및 볼트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CZ33-0966-2015

신청물품: 볼트

- 신고된 데이터에 따르면, 밸브와 EGR 교환기 결합을 위한 TORX형 볼트 M6x1x16에 대한 것이다, -. EGR 교환기는 제순환 중에 연료 소비와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면서 배기가스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볼트는 자동선반에 의해 스테인리스강으로 생산된다.

결정세번: 제7318.15-10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7318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CZ37-0945-2015

신청물품: 볼트 및 너트

- 신고된 데이터와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헤드없는 두 개의 볼트를 포함, 나사선 M6과 함께 황동 너트와 도너츠 모양(원 모양 안에 동그란 구멍이 나있는 모양)의 아연도금 강판, 고무패드로 구성된 조립 패키지에 관한 것이다. 패키지는 싱크대나 세면대 등의 수도꼭지 설치시 이용된다. 크기: 강철 나사 - 나사의 헤드 밑부분 기둥 직경 5,2 mm, 나사선 직경 6 mm, 길이 110 mm. 절단된 패드 - 직경 50 mm, 두께 3 mm, 타원형 나사 구멍 6,8 x 10 mm. 황동 너트 - 나사선 M6, 길이 22 mm. 고무 패드 - 직경 47 mm, 두께 2 mm, 타원형 나사 구멍 6,8 x 10 mm. O - 작은 원(형) - 직경 46 mm,

결정세번: 제7318.15-3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5부 주7 / 제7318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CZ40-1266-2015

신청물품: U자형 볼트

- 신고된 데이터와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양 부분이 볼트 형식인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U자형 쇠붙이에 관한 것이다. 이는 도로변 기둥에 전차선 가로대를 고정 혹은 도로위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크기: 높이 약 75 mm, 폭 약 66 mm, 나사선 직경 M10, 나사 길이 약 33 mm, 높이 약 52 mm, 폭 약 38 mm, 나사선 직경 M10, 나사 길이 약 25 mm, 높이 약 52 mm, 폭 약 34 mm, 나사선 직경 M10, 나사 길이 약 22 mm. 수입: 중국.

결정세번: 제7318.15-3098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2 가 / 제15부 주3 / 제72류 주1 마 / 제7318호 해설서

④ EU 사전심사 사례-4

참조번호: CZ40-1153-2015

신청물품: 나사선

- 신고된 데이터와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직경 M6에 길이 1m인 나사의 나사선(소용돌이 모양이 나있는 원기둥 부분) 부분에 관한 것이다.

결정세번: 제7318.15-41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7318호 해설서

⑤ EU 사전심사 사례-5

참조번호: CZ33-0257-2015

신청물품: 나사선

- 신고된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길이가 일정한 나사선을 갖추거나 혹은 한쪽 끝이 다른 쪽 끝부분보다 짧은 나사선을 가진, 강철로 된 나사의 나사선부분에 관한 것이다. 강도는 800 MPa보다 낮다. 길이는 1과 2,3 미터이다.

결정세번: 제7318.15-41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7318호 해설서

⑥ EU 사전심사 사례-6

참조번호: CZ37-0710-2015

신청물품: 나사

- 신고된 데이터에 따르면, 둥근 모양의 헤드를 가지고 나사 기둥 부분이 길이가 일정한, 메트릭 나사에 관한 것이다. 볼트는 전기 물 펌프 조립에 사용된다.

결정세번: 제7318.15-51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2 / 제72류 주1 마 / 제7318호 해설서

⑦ EU 사전심사 사례-7

참조번호: CZ37-0045-2015

신청물품: 나사

- 신고된 데이터와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크기 6,3 x 32 mm에, 육각형

모양의 헤드, 헤드 밑 부분은 톱니 모양인 금속나사에 관한 것이다. 볼트는 380 MPa정도의 강도를 지닌 경화된 강철로 제조된다. 이는 나선 기둥 부분이 비틀어진 볼트가 아니다.

- 결정세번: 제7318.15-81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7318호 해설서

⑧ EU 사전심사 사례-8

- 참조번호: CZ33-1036-2015
- 신청물품: 나사
 - 신고된 데이터와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M8x12 사이즈의 별 모양이 나있는, 일자 나사에 관한 것이다. 볼트는 강도 8.8크기로 블랙크롬 랩핑이 된 아연도금 강철로 만들어진다. 볼트는 접합부 확인을 위하여 파란색으로 새롭게 코팅된다. 볼트는 랙 케비넷의 구성품 결합 시에 이용된다. 크기: 나선선 길이 12 mm, 나사선 폭 7,78 mm, 볼트 길이 13,21 mm, 헤드 16 mm, TORX 직경 5,6 mm.

- 결정세번: 제7318.15-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2 가 / 제7318호 해설서

⑨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볼트
 - 육각형의 두부가 있고 나선가공이 되어 있으며 끝단이 평평한 모양의 철강제 볼트
 - 용도 : 차량 부품 등의 체결용
- 결정세번: 제7318.15-2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주2 나 / 제7318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육각형의 두부가 있고 나선가공이 되어있는 끝단이 평평한 모양의 철강제 볼트이고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의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제7318호에 분류되며, 나선가공한 제품으로 소호 제7318.1호에 분류되고,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 중 ‘볼트’에 해당함

<그림> 볼트 (신청물품)



⑩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Machine screws; SCREW WASHER DVA209-0A100
 - 원형 두부에 십자홈이 파여 있고, 나선가공된 축에 와셔가 끼워져 있으며, 끝이 평평한 철강제(SWCH10A) 물품
 - 용도 : 자동차 에어컨용 컴프레서 조립용
- 결정세번: 제7318.15-1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7318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바깥지름 9mm이하의 머신스크류에 와셔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제7318호에 ‘형상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류의 모든 것이 분류됨’에 따라 제7318.15-1000호에 분류함

⑪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7318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7318호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혹·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7318.15 -- 기타 스크루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머신스크루(screw) | 10 | Turned from bars, rods, profiles, or wire, of solid section, of a shank thickness not exceeding 6 mm | 0 |
| 2000 | 볼트(bolt) | 10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 0 |
| 3000 | 볼트(bolt)·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9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9000 | 기타 | 99 | Other | 0 |
| | | 20 | Other; For fixing railway track construction material | 0 |
| | | 30 | Other; Without heads; Of stainless steel;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 0 |
| | | 11 |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19 | Other | 0 |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79 | Other | 0 |
| | | 81 | Other;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98 | Other | 0 |
| | | 41 | Other, with a tensile strength; Of less than 800 MPa | 0 |
| | | 10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 0 |
| | | 92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 | |
|--|--|----|--|---|
| | | 99 | Other | 0 |
| | | 49 | Of 800 MPa or more | 0 |
| | | 10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 0 |
| | | 92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99 | Other | 0 |
| | | 51 | With heads; cross-recessed or Slotted heads; Of stainless steel | 0 |
| | | 11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19 | Other | 0 |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79 | Other | 0 |
| | | 81 | Other;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98 | Other | 0 |
| | | 59 | Other | 0 |
| | | 11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 0 |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69 | Other | 0 |
| | | 61 | Other; Hexagonal-socket heads; Of stainless steel | 0 |
| | | 11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19 | Other | 0 |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79 | Other | 0 |
| | | 81 | Other;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 98 | Other | 0 |
| | | 69 | Other | 0 |
| | | 11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 0 |

| | | | |
|--|----|--|---|
| | | the type "Hi-Lok") |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69 | Other | 0 |
| | 70 | Hexagonal heads; Of stainless steel | 0 |
| | 11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19 | Other | 0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79 | Other | 0 |
| | 81 | Other; Consigned from the Philippines | 0 |
| | 98 | Other | 0 |
| | 81 | Other, with a tensile strength; Of less than 800 MPa | 0 |
| | 11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 0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69 | Other | 0 |
| | 89 | Of 800 MPa or more | 0 |
| | 11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 0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69 | Other | 0 |
| | 90 | Other | 0 |
| | 11 | Self-locking bolts and nuts (of the type "Hi-Lok"); Of stainless steel | 0 |
| | 21 | Other | 0 |
| | 61 | Oth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71 | Other | 0 |
| | 81 | Other; Of stainless steel | 0 |
| | 91 | Other | 0 |

3) 서메트제 공구용 판·봉·팁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8801/15-1

신청물품: 회전 절삭판

- 회전 절삭판; 두 개 또는 네 개의 절삭 에지를 연결재로 하여 입방형의 질화 붕소 (cBN), 알루미늄, 코발트 및 텅스텐을 기초로 한, 구멍이 뚫린 다이아몬드 형태의 절삭판. 이 제품은 금속가공(회전, 밀링 등)을 위한 교체 가능한 도구로 이용된다. 신청자 정보 - 그림 참조. 그러한 생산품은 도구를 만들기 위한 절삭기로서 통합명칭 8209 0020 의 하위그룹에 속한다.

결정세번: 제8209.00-2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4 / 제8209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8804/15-1

신청물품: 회전 절삭판

- 회전 절삭판: 다양한 형태(삼각형, 사각형, 다이아몬드형, 가운데 구멍), 일부는 텅스텐 카바이드 또는 혼합 탄화물로 얇게 코팅된 금속 탄화물(텅스텐 카바이드나 혼합물 (TiC, TaC, NbC)과 연결재로서의 코발트)로 만들어지는 데 두 개 이상의 절삭재가 이용된다. 이 제품은 (회전, 밀링, 등) 금속 가공을 위한 교체 가능한 도구에 사용하고 작업 부품을 만들어 낸다. - 신청자 정보 - 그림을 참조. 이러한 제품은 서메트로 만든 도구를 위한 회전 절삭판으로서 통합 명칭 (KN)의 항목 8209 0020에 속한다.

결정세번: 제8209.00-2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4 / 제8209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 참조번호: DE14063/15-1

□ 신청물품: 강금속관

- 강금속관 - 원통형, 끝부분이 원형 또는 호형 (원뿔형). - 직경 13mm, 길이 25mm - 포커스에 있지 - 바인더로서 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에 기초하여 소결 탄화물(서멧)로 만들어 짐. - 밀링 드릴 제조(교체 가능한 도구)를 위함, 금속을 납땀하고, 톱니 제품을 연마. 이러한 제품은 회전절삭판이 아닌, 서멧으로 만든 도구를 위한 금속관으로서 통합 명칭(KN) 8209 0080 의 하위 그룹에 속함

□ 결정세번: 제8209.00-8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2 가 / 통칙 6 / 제15부 주4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BUTTON TIPS ; YG08X-TYPE ; Q1928

- 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소결한 탄화 텅스텐(서멧) 재질의 공구용 팁

<그림> 서멧 팁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8209.00-104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2류 주1 / 제8209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장착하지 아니한 소결한 탄화텅스텐(서멧) 재질의 공구용 팁으로서 제82류에 '금속탄화물 재료로 만들어진 날, 작용단, 작용면이 있는 것'이 분류되며, 제8209호에 '봉, 팁,로드 등과 같은 형상으로 밀링툴, 드릴, 다이스 등의 공구에 고정되는 것'이 분류됨에 따라 제8209.00-1040호에 분류함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Cermets; AF308H

-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등을 혼합한 후 성형·소결하여 제조한 서멧(cermet)제의 봉상(크기 : 직경 2.0mm, 길이 32.0mm)
- 용도 : 드릴공구 제조용

□ 결정세번: 제8113.0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제15부 주4 / 제8113호 해설서

- 본 물품은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를 성형·소결한 서멧제 봉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113.00-0000호에 분류함

⑥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209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209호 - 공구용의 판·봉·팁 및 이와 유사한 것(서멧제의 것으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8209.00 --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 | 공구용 팁 | 20 | Indexable inserts | 0 |
| 10 |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 80 | Other | 0 |
| 40 |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 | | |
| 90 | 기타 | | | |
| 20 | 공구용 판·봉과 이와 유사 한 것 | | | |
| 10 |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 | | |
| 40 |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 | | |
| 90 | 기타 | | | |

- 제8113호 -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8113.00 --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 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을 포함한다] | 20 | Unwrought | 0 |
| | | 10 | Cermet blocks containing by weight 60 % or more of aluminium and 5 % or more of boron carbide | 0 |
| | | 90 | Other | 0 |
| | | 40 | Waste and scrap | 0 |
| | | 90 | Other | 0 |
| | | 10 | Carrier plate of aluminium silicon carbide (AISIC-9) for electronic circuits | 0 |
| | | 20 | Cuboid spacer made of aluminium silicon carbide (AISIC) composite used for packaging in IGBT-modules | 0 |
| | | 90 | Other | 0 |

4) 차량용 장착구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CZ40-0915-2015

신청물품: 부상

- 신고된 데이터와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차체에 안정 장치가 고정된
부상에 대한 것이다. 부상의 구성요소는 안정 장치의 고무가 아니다.
(재질: 강판. 표면: 아연 + 니켈)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17부 주2 나
/ 제72류 주1 라 / 제8302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CZ40-1083-2015

신청물품: 에어컨 홀더

- 신고된 데이터와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자동차 뼈대와 결합되어 있으
며 마무리 처리가 되있는 강철판으로 만들어진 에어컨 홀더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 뼈대에 나사로 고정된 그리고 에어컨 부품을 원하는
위치에 잡는다. 크기: 48 x 58 x 62mm, 판 두께 1.6 mm, 95 x 24 x
30 mm, 판 두께 1.0 mm, 80 x 30 x 25 mm, 판 두께 1.0 mm.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72류 주1 라
/ 제8302호 해설서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MOUNTING BUSH

- 철강재질의 프레임과 플라스틱 커버가 결합된 제품으로 차량 스티어링 휠 중앙부에 드라이버 에어백 등을 포함한 커버를 장착·고정하기 위한 제품이며, 신청물품[Mounting Bush]은 스티어링 휠 중앙부에 장착되어, 중앙부 커버 내측에 장착된 상대부품[Snap Fit Pin]이 체결될 수 있는 장착면 제공 및 연결구 역할

<그림> 부상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8302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주기능, 구성비율, 가격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 특성이 철강재질의 프레임에 있으며, 범용성 부분품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 8302.30-0000호에 분류함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HOLDER-CHILD REST HOOK

- 차량 뒷자석 선반 중앙에 장착되는 고리형태의 철강제물품으로서, 뒷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시키기 위한 고리의 기능을 수행함

□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302호 해설서

- 제8302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착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동 호에 해당되므로, 카시트를 자동차 시트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리로서 본 물품은 제 8302.30-0000호에 분류함

⑤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302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302호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

-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00 | | 0 |

5) 알루미늄 합금의 판·시트 및 스트립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22748/14-1

신청물품: 알루미늄 복합 패널

- 알루미늄 복합 패널. 최대의 크기 7,200mm X 2,050mm, 전체 두께 2 mm 내지 8mm 사이의 직사각형 패널을 말한다. 패널은 본질적으로 비금속, 무기 또는 유기 내지 고분자 재료로 구성된다. 이 내부 층은 알루미늄 그린 시트의 시트 양면에 접착된다. 두 개의 알루미늄 판의 강도가 0.3 mm와 0.5 mm 사이이다. 소재로는 알루미늄 합금 (EN AW-3105)이 사용된다. 복합 패널은 건물 및 외장 피복에 사용된다. 제품의 샘플이 제시되어 있다. 두 제품 모두 0.2 mm 를 초과하는 두께의 직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분류 코드는 7606 (12)이다.

결정세번: 제7606.12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5부 주3 / 제15부 주5 가 / 제15부 주6 / 제76류 주1 / 제7606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14035/14-1

신청물품: 알루미늄 합금판

- 알루미늄 합금판. 한쪽 표면이 백색으로 착색된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시트(약 89mm X 50mm)이다. 0.5mm 두께의 철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시트를 인쇄 한 후 홀더의 대체 패널로 사용된다. 이 제품은 0.2 mm 이상의 두께에, 착색된 직사각형의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통합 명칭 7606 1220 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7606.12-2090호

결정근거: 제15부 주3 / 제15부 주5 가 / 제76류 주1 / 제7606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DE14540/14-1

신청물품: 알루미늄 시트

- 알루미늄 시트. 두께가 폭의 1/10 이하의 견고한 직사각형 평면 제품을 제공한다. 정보에 따르면 최소 0.8 mm 에서 3mm 미만의 알루미늄 합금 다층 구조 (재질번호 3003, 5052, 6061)이다. 최소 75 마이크론에서 최대 200 마이크론 분의 두께를 갖는 절연체와 최소 17.2에서 최대 210 마이크론의 정제된 구리 층을 포함한다. 소위 라미네이트는 다양한 측정과 재단을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인쇄 회로 기판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제품은 특성에 따라 0.2 mm에서 3mm 두께의 직사각형 알루미늄 합금으로서 TARIC 코드 7606 1292 90 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7606.12-92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5부 주5 가 / 제15부 주6 / 제76류 주1 / 제7606호 해설서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Aluminium alloys sheets; ALUMINIUM COIL

- 알루미늄 합금(알루미늄 97.35%, 철 0.7%, 규소 0.6%)으로 만든 두께 0.5mm인 코일상의 시트(제시규격: 폭 900~1600mm, 두께 0.5~3.0mm)
- 용도: 일반 산업용 등

<그림> 알루미늄 시트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7606.12-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76류 주1 라 / 제76류 소호주 1 나 / 제7606호 해설서
- 본 품은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알루미늄 함유량을 만족시키며 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코일상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12-0000호에 분류함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Aluminium alloy plate; MRCSAL0219962
- Wafer의 금속(aluminum) 박막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타겟(target)을 만들기 위한 1차 제품으로 알루미늄(99.5%)과 구리(0.5%)의 합금으로 만들어짐.
 - 금속박막 공정에 사용되는 target에는 원판형, 모자형, 꼭지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의 target이 있는데, 이중 원판형 target을 만들기 위한 1차 제품으로 완제품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 있고 원판의 디스크 형상을 띄고 있음. (직경 528mm, 두께 29mm)
- 결정세번: 제7606.92-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76류 주1 라 / 제7606호 해설서
- 본 물품은 wafer의 금속박막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target’을 만들기 위한 1차 제품으로, 총 3층의 계단구조 및 원판 외곽에 여러개의 청공을 가지고 있는 완제품에 비해 규격 이외의 어떠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은 단순한 원판의 디스크 형상이며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92-0000호에 분류함

⑥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7606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7606호 -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7606.12 -- 직사각형의 것/ 알루미늄 합금의 것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20 |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 0 |
| | | 10 | Plates bearing a specific manufacture numb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 | | 92 | Other,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 0 |
| | | 10 | Plates bearing a specific manufacture numb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 | | 93 | Not less than 3 mm but less than 6 mm | 0 |
| | | 10 | Plates bearing a specific manufacture numb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 | | | | |
|--|--|----|--|---|
| | | 99 | Not less than 6 mm | 0 |
| | | 10 | Plates bearing a specific manufacture numb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20 | Sheets and bars of aluminium-lithium alloys | 0 |
| | | 90 | Other | 0 |

- 7606.92 -- 기타 / 알루미늄 합금의 것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0010 | Plates bearing a specific manufacture number,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0090 | Other | 0 |

마. 기계산업

1) 성형용 주형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1854/16-1

신청물품: 형틀

- 형틀(일련번호 21-0054150-0041B)로 표시된 물품에서는 특수 형태로 되어 있거나 규격에 맞는, 기술 도안에 따라 윤곽선이 갖추어진 형틀이 중요한데 이는 특수금속으로 만든 사출성형 도구를 제작하기 위함이다.
- (공업재료 번호 1.2343) 형틀은 사출성형기계에서 자동차의 차체와 문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결정세번: 제8480.71-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 제16부 주5 / 제8480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17895/15-1

신청물품: 형틀

- 가이드 브라켓으로 명명된 물품에서는 기술 도안에 따라 규격에 맞게 제작된 정사각형의 튼튼한 강철블록이 중요한 데, 이는 두 개의 동일한 통 구멍, 좁은 구멍이 뚫려있다.
- 가이드 브라켓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될 수 있다. 그것은 사출성형으로 제조된 공구의 반쪽을 배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플라스틱 부품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 그 물품은 기관이 아닌, 오로지 사출성형을 위한 플라스틱 형태로 분

류된다.

결정세번: 제8480.71-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나 / 제16부 주5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AT2014/000799

신청물품: 형틀

- 특히 플라스틱 내지 유리섬유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재를 제조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생산품으로서 상층부와 하층부가 금속재질로 되어 있는, 압연 가열시켜 만든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요청자에 의한 정보)

결정세번: 제8480.71-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 제8480호
해설서, 제8477호 해설서

④ EU 사전심사 사례-4

참조번호: DE18205/14-1

신청물품: 형틀

- 수많은 작업에 있어서 이른바 열통노즐이 중요한데, 그것은 금속본체와 다양한 지지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즐은 실린더 형태의 본체부위와 노즐 안에 온도를 감지하는 열상부위, 그리고 노즐외피와 노즐 축으로 이루어진다. 물품은 플라스틱 공구로 끼워지며 거기서 가열되어 액화된 합성물질이 유입되어 사출공간으로 흘러들어간다. (사출성형) 그 안에서 용해된 합성물질은 냉각되어 견고한 플라스틱 생산품으로 만들어진다. 생산품은 사출성형에 의한 플라스틱 형태의 부품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8480.71-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나 / 제16부 주5 / 제16부, 제84류, 제8480호의 해설

⑤ EU 사전심사 사례-5

참조번호: DE18207/14-1

신청물품: 형틀

- 이른 바 슬라이드 유닛은 - 요청에 맞게 강철로 제작 - 기본적으로 실린더형태나 사각형태의 외형으로 이루어진 슬라이드 본체, 슬라이드, 그리고 압연체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도안에 따라 규격에 맞게 제작된 조립부품들은 합성수지 공업의 사출성형 도구로 사용된다. 그 물건은 형틀 내부에서 윤곽선 형상을 만들거나 후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혹은 동일한 작업을 위한 슬라이드 작동을 위해 이용되며 합성수지 사출성형에 필요한 부품이다. 생산품은 사출 합성수지 성형 제품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8480.71-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나 / 제16부 주5 / 제16부, 제84류, 제8480호의 해설

⑥ EU 사전심사 사례-6

참조번호: DE21584/14-1

신청물품: 형틀

- 사출 성형 도구로 명명된 이 제품은 두 부분의 사출 금형 (고정 및 가동가능한 도구 절반)이중요한 데, 노즐 쪽에 위치한 클램핑 플레이트, 스페이서 바, 이젝터 플레이트와 폐쇄 쪽 클램핑 플레이트, 전기로 가열 핫 러너와 전기, 가스 및 물의 흐름을 관장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는 차량 외부 미러에 대한 캡의 제조를 위한 사출 성형기에 사용되는 금형이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용 금형"로 분류된다.

- 결정세번: 제8480.71-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 제16부 주5 / 제8480호의 해설

⑦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Parts of injection types moulds for plastic ; mould parts
 - 사출식 플라스틱 주형에 장착되는 코어
 - 주형의 캐비티와 결합되어 제품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
- 결정세번: 제8480.71-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 / 제8480호의 용어 / 제8480호의 해설서
 - 본 물품은 사출식 플라스틱 주형에 장착되어 제품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코어로 사출식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의 부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⑧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Blow Mould ; sbo type
 - 이미 사출성형된 Preform(플라스틱제의 튜빙형상)을 Blow Mould 내부에 넣고 고압의 air를 순간적으로 Blowing하여 PET병을 성형하는 주형입(Preform은 금형의 내부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팽창됨)

- 결정세번: 제8480.79-0000호

결정근거

- 본 물품은 취입(Blow)성형용의 주형입, 성형법에 따른 금형의 구분에 있어 사출 또는 압출 성형용의 것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제8480.71호의 분류할수 없고 기타의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으로 HSK 8480.79-000호에 분류

⑨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480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480호 -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 8480.71 --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것

| 한 국 | | E U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사출식이나 압축식 | 하위분류 없음 | 0 |

- 8480.79 -- 기타

| 한 국 | | E U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기타 | 하위분류 없음 | 0 |

2) 머시닝센터

① EU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DE23883/14-1

□ 신청물품: 수직형 머시닝센터

- 머시닝센터 TC-32BN QT / FT는 프로그램에 따라 드릴링, 밀링 및 태핑을 하며 금속부품을 자동으로 여러번 가공하는 기구임
- 특징 및 구성 : 고정 및 움직임이 가능한 작업 테이블, 고정판을 통한 X 및 Y 축의 위치 지정,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핀들과 스핀들 드라이브, 26개 ~ 40개의 공구 매거진,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자동공구교환 시스템, 도구 작업의 운영·프로그래밍·진단을 위한 다중 제어(CNC 제어) 등

<그림> 머시닝센터 (신청물품)



□ 결정세번: 제8457.10-9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4류 주4 가 / 제8457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Machining Centre ; SBZ 151 ; GERMANY

- 5축으로 작동하며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레스 소재의 프로파일 가공에 적합한 기계로 프로파일이 고정된 상태에서 밀링, 드릴링, 태핑, 드레드 밀링, 낫칭, 커팅 등 모든 형태의 작업이 가능함
 - 13개의 일반공구와 7개의 특수공구가 장착된 이동형 매거진으로부터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구 교환이 이루어짐

□ 결정세번: 제8457.10-1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4류 주4 가 / 제845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13개의 일반공구와 7개의 특수공구가 장착된 이동형 매거진으로부터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구 교환이 이루어지며 금속소재의 profile에 밀링, 드릴링, 태핑, 드레드 밀링, 낫칭, 커팅 등 모든 형태의 작업이 가능한 수직형 머시닝센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7.10-1000호에 분류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Machining centres of vertical type; ECOSPEED F 1040; GERMANY

-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 ATC;매거진 : 129 pocket)를 갖추고 밀링, 드릴링, 태핑 등 다양한 금속가공작업 수행이 가능한 수직형 머시닝센터 공작기계

□ 결정세번: 제8457.1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4류 주4 가 / 제845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수직형 머시닝센터로서 제8457호에서 규정하는 머시닝센터
의 두가지 조건(자동공구교환장치, 밀링·드릴링·탭핑 등 여러가지 금속
가공작업 수행)을 만족시킴에 따라 제8457.10-1000호에 분류함

④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45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457호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
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 8457.10 -- 머시닝센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수직형 | 10 | Horizontal | 0 |
| 2000 | 수평형 | 90 | Other | 0 |
| 3000 | 문형 | | | |
| 9000 | 기타 | | | |

3) 설비용 압축기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5625/16-1

신청물품: 피스톤 링 압축기

○ 피스톤 링 압축기 - 기본적으로 편심 장착된 로터와 분리 슬라이드,
인장 스프링과 전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흡입 / 배출 포트가 장
착된 원통형 하우징 속에 위치
○ 여러 가지 냉장시스템에서 압축 냉각 장치에 사용되며, (0.23 kW 급의
모터 전력) 콘덴서(응축기)로 냉매 증기를 흡입, 압축, 배출하기 위함.

결정세번: 제8414.30-2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9639/16-1

신청물품: 냉각 압축기

○ 냉각 압축기 - 스크롤 압축 장치, 전기 구동 모터, 방압 밸브, 인버터
및 컨트롤러, 냉매 회로, 전원 공급 장치 및 온도 조절 장치와 그 밖
의 조립품이 장착된 특수 형태의 하우징으로 만들어 짐
○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가스 냉매를 압축하기 위함(3.4 kW 급의 냉
각 용량)

결정세번: 제8414.30-81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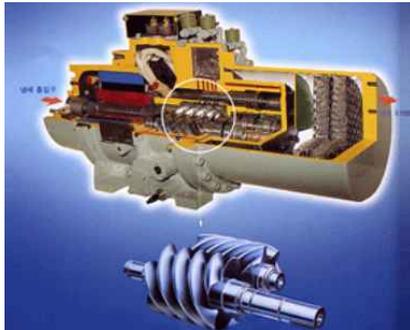
③ EU 사전심사 사례-3

□ 참조번호: DE9913/16-1

□ 신청물품: 스크류 압축기

- 스크류 압축기 - 금속으로 만든 하우징에 고성능 베어링, 압축기 컨트롤러, 구동모터, 나선형 톱니, 평행 샤프트, 실링장치가 장착된 스크류 압축기
- 산업용 냉장 및 에어컨 시스템 내에서 가스 냉매를 압축하기 위함.

<그림> 스크류 압축기



□ 결정세번: 제8414.30-89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COMPRESSOR(1D270-049000, 230.5 X 135 X 145)

- 승용차 엔진룸 앞에 부착되어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환 차가운 냉매가스를 사판 회전력을 통한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condenser)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사용동력: 최대 6.33KW)

□ 결정세번: 제8414.30-1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 제8414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승용차의 냉각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환 차가운 냉매가스를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condenser)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임(사용동력 11kw미만)
 - 제8414호 해설서에 따라 승용차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을 지라도 압축기는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을 제 8414.30-1000호에 분류함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Screw Compressor Package ; RXF 50 MODEL ; USA

- 건물의 냉방을 위한 대형 냉방장치에 사용되는 압축기로서 전기의 힘을 이용해 모터를 돌려 냉매를 고압으로 압축해 주는 기능을 함. [사용동력 : 91~105KW]

□ 결정세번: 제8414.30-2000호에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414호 해설서

- 본 물품은 건물의 냉방 설비에 사용되는 압축기로서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환 냉매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응축기로 보내는 역할을 물품이므로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로 보아 제8414.30-2000호에 분류함

⑥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14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414호 -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
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414.30 --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사용동력이 11Kw 미만인 것 | 20 | Of a power not exceeding 0,4 kW | 0 |
| 2000 |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인 것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 | | 81 | Of a power exceeding 0,4 kW; Hermetic or semi-hermetic | 0 |
| |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50 | Other: Hermetic or semi-hermetic variable-speed electric scroll compressors, with a nominal power rating of 0,5 kW or more but not more than 10 kW, with a displacement volume of not more than 35 cm ³ , of the type used in refrigeration equipment | 0 |
| | | 60 | Other: Hermetic rotary compressors for Hydro-Fluoro-Carbon (HFC) refrigerants: - driven by 'on-off' single phase alternate current' (AC) or 'brushless direct current' (BLDC) variable speed motors - with a nominal power rating of not more than 1,5 kW of a kind used in the production of household heat pump laundry tumble dryers | 0 |
| | | 89 | Other: Other | 0 |
| | | 89 | Other | 0 |
| |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20 | Vehicle air conditioning system part, consisting of an open shaft reciprocating compressor of a power of more than 0,4 kW but not more than 10 kW | 0 |
| | | 90 | Other | 0 |

4) 불베어링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1436/15-1

신청물품: 불베어링

○ 합성수지 소재의 외륜과 약 19mm의 직경의 강철로 만들어진 내측 링
이 장착된 불 베어링이다. 불 베어링은 프린터에 사용된다. 이 제품은
"원자력발전소에 적당하지 않고 벨트 구동모터 제어를 제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최대 30mm 직경의 불 베어링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8482.10-1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주5 / 제8482
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1546/15-1

신청물품: 불베어링

○ 공통 포장품의 패키지 세트에는 날개 포장된 물품들의 조립이 중요하
다. 이에 두 개의 일렬 불베어링 (치수: 55 X 30 X 13 내지 52 X
25 X 15mm = 외측 지름 X 내측 지름 X 높이)과 세 개의 퓨즈링, 즉
윤활심, 지지심, 방사형 압축링이 그것이다. 두 개의 불베어링은 특히
사용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의 특징을 규정한다. 유압 시스템의
펌프 모터 설치에 적합한 세트는 30mm 이상의 최대 외경을 가진 베
어링으로 분류된다. HS 8482 1090 10 0 와는 관계가 없다.

결정세번: 제8482.10-9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5 나 / 통칙 6 / 제
16부 주2 가 / 제16부 주5 / 제8482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 참조번호: DE20328/14-1

□ 신청물품: 볼베어링

○ 트랙 롤러 (제품 번호 LR (205)이 RS)로 지정된 이 제품은 볼 베어링 형태의 롤링 베어링이다. 볼 베어링은 강철 재질의 외측, 내측 링과 9 개의 볼, 그리고 양쪽의 압축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61 mm의 외경, 14 mm의 폭을 가지고 있으며 기계의 부품으로 사용된다. 이 제품은 "최대 외부 직경이 30mm 이상의 롤링 베어링, 볼 베어링"으로 분류된다. 코드 번호 1090 10 0 8482 베어링은 아니다.

□ 결정세번: 제8482.10-9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482호 해설서

④ EU 사전심사 사례-4

□ 참조번호: DE21751/14-1

□ 신청물품: 볼베어링

○ 약 28 X 7 (외경 X 폭) mm 크기의 강철 재질의 볼베어링(제품번호 013E42780)이다. 내경 지름은 약 15mm 이다. 이 볼 베어링은 복사기에 사용되거나. 축의 회전을 조절, 내지는 정지시킨다. 이 제품은 "최대 외경 30mm 이하의 롤링 베어링, 볼베어링으로 분류되며 원자력 발전소에는 적합하지 않고 벨트 구동 모터 제어기의 제조시" 사용된다.

□ 결정세번: 제8482.10-1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 제16부 주5 / 제8482호 해설서

⑤ EU 사전심사 사례-5

□ 참조번호: DE2238/15-1

□ 신청물품: 볼베어링

○ 이 제품은 강철재질의 외부 링과 내부 링, 그리고 그 사이에 회전하는 볼이 장착된, 단일 행 볼베어링 형태의 롤링 베어링 (선형 베어링 LM8UU)이다. 약 15 mm의 최대 외경, 그리고 약 8 mm의 내경 및 약 24 mm 의 폭을 가지고 있는 이 볼 베어링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제품은 "30mm 이하의 롤링 베어링, 볼 베어링으로 분류되는 데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용되지 않고 벨트 구동 모터 제어기의 제조 시" 사용된다.

□ 결정세번: 제8482.10-1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482호 해설서

⑥ EU 사전심사 사례-6

□ 참조번호: DE2473/15-1

□ 신청물품: 볼베어링

○ 소위 "터보 베어링" 중에서는 규격에 맞게 도면에 따라 제작된 롤링 베어링 강철 재질의 볼베어링이 중요하다. 이 제품은 약 18mm의 외경을 가지고 있으며 실린더형 외부-내부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린더 끝에 플라스틱 재질의 롤러기구를 장착. 조립시 압축기와 터빈 사이의 연결부품인 터보라더에 장착됨. 이 제품은 "최대 외경 18mm의 롤링 베어링, 볼 베어링으로 분류되며 벨트 구동 모터 제어기의 제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결정세번: 제8482.10-1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 제16부 주5 / 제8482호 해설서

⑦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ball bearing of the inside diameter not exceeding 100mm; GUIDE ROLLER
- 외륜, 볼, 내륜, 부시로 구성되어 Overhead Conveyor Chain(제시자료의 명칭)에 사용되는 볼 베어링으로, 천장을 주행하는 트롤리 컨베이어시스템에서 천장에 설치된 홈파진 레일을 따라 주행함에 있어 이송용 체인의 마찰감소 및 가이드 역할 등을 함 (외경 42mm, 내경14mm, 외륜높이18mm)

<그림> 볼베어링 (신청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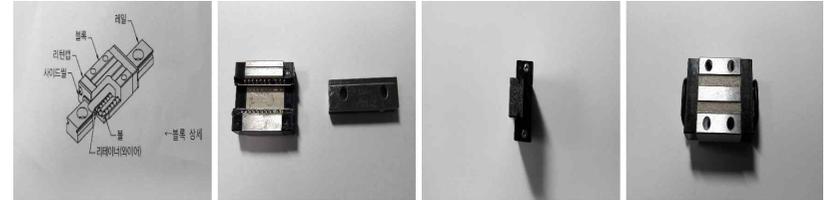
- 결정세번: 제8482.10-2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482호 해설서
- 본 물품은 트롤리 컨베이어시스템에서 천장에 설치된 홈파진 레일을 따라 주행함에 있어 이송용 체인의 마찰감소 및 가이드 역할을 하는 내경 100mm 이하의 볼 베어링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2.10-2000호에 분류

⑧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Other ball bearings; Linear Guide; SSEB10

- 블록, 볼, 리턴캡, 싸이드썰, 리테이너(와이어), 레일로 구성된 물품으로 블록 내부에 장착된 볼이 구르면서 직선운동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블록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구조임

<그림> 볼베어링 / 리니어가이드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8482.10-9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482호 해설서
- 본 물품은 블록 내부에 장착된 볼이 구르면서 직선운동을 유도하는 볼베어링에 해당하며, 제8482호 해설서에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2.10-9000호에 분류함

⑨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82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482호 -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 8482.10 -- 볼베어링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2000 | 내경이 100mm 이하인 것 | 10 | With greatest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30 mm | 0 |
| 9000 | 기타 | 10 | Ball and cylindrical bearings: - with an outside diameter of 28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40 mm, - with an operational thermal stress of more than 150°C at a working pressure of not more than 14 MPa, for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for the protection | 0 |

| | | | |
|--|----|---|---|
| | | and control of nuclear reactors in nuclear power plants | |
| | 30 | Ball bearings: - with an internal diameter of 3 mm or more, - with an external diameter of not more than 100 mm, - with a width of not more than 40 mm, - whether or not equipped with a duste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elt drive steering systems of motor, 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s or steering gears | 0 |
| | 90 | Other | 0 |
| | 90 | Other | 0 |
| | 10 | Ball and cylindrical bearings: - with an outside diameter of 28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40 mm, - with an operational thermal stress of more than 150°C at a working pressure of not more than 14 MPa, for the manufacture of machinery for the protection and control of nuclear reactors in nuclear power plants | 0 |
| | 20 | Ball bearings: - with an internal diameter of 3 mm or more, - with an external diameter of not more than 100 mm, - with a width of not more than 40 mm, - whether or not equipped with a duste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elt drive steering systems of motor, 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s or steering gears | 0 |
| | 90 | Other | 0 |

5) Flux ring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DE8134/11-1

신청물품: 플럭스 링

- 플럭스 링, 특수 제작된 원통형 톱니 링. 소결 금속재질로 직경 99.5 mm에 이르는 이 제품은 자동차 용 비스코스 팬 클러치에 설치된다. 이 제품은 주로 차단 클러치의 부품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8483.90-8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나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협의회

물품설명: 자속링(Flux Ring)

- 자속링(Flux Ring)은 탄소강에 니켈 도금한 링 형상의 물품으로 코일 적층 집합체(Coil Stack Assembly)에 발생하는 전자기력을 래치집합체로 전달(안내)하고 구동체의 전자기력을 강화시킴
- 가압경수로에서 사용되는 제어봉구동장치는 압력경계 밖에서 전선을 도우넛 형태로 감은 코일에 전류를 흘려 코일 주변에 발생하는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압력경계 안에 있는 구동장치(Drive Mechanism)를 작동시키는 방식임
 - 구동장치는 코일 적층 집합체(Coil Stack Assembly), 자속링(Flux Ring), 래치집합체(Latch Assembly), 구동봉(Drive Rod) 으로 구성되며, 이중 신청 물품은 자속링(Flux Ring)임

결정세번: 제8505.90-9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05호 해설서

- 본 물품의 경우 코일 적층 집합체(Coil Stack Assembly)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력을 래치집합체(Latch Assembly)로 전달(안내)하는 물품으로, 이것의 결과로 Latch Magnet은 전자석으로 변환 되며, 이과정에서 전자기력을 유도하고 자기회로 역할을 하는 전자석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483호 및 제8505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483호 -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 8483.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항공기용 | 20 | Parts of bearing housings | 0 |
| 2000 | 풍력발전기용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9000 | 기타 | 90 | Other | 0 |
| | | 81 | Other; Of cast iron or cast steel | 0 |
| |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 | | 89 | Other | 0 |
| |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 제8505호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 85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전자석 | 20 | Electromagnets: electromagnetic or permanent magnet chucks, clamps and similar holding devices | 0 |
| 2000 |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클램프·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 10 |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3000 | 전자석 리프팅 헤드 (lifting head) | 30 | Coil for an electromagnetic valve, with: - a plunger - a diameter of 12,9 mm (+/- 0,1), - a height without plunger of 20,5 mm (+/- 0,1), - an electric cable with connector, and in a cylindrical metal housing | 0 |
| 9000 | 부분품 | 40 | Electromagnets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apparatus other than electromagnets of heading 9018 | 0 |
| | | 91 | Solenoid with a plunger, operating at a nominal supply voltage of 24 V at a nominal DC of 0,08 A,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roducts falling within heading 8517 | 0 |
| | | 99 | Other | 0 |
| | | 50 | Electromagnetic lifting heads | 0 |
| | | 10 |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 | | 90 | Parts | 0 |
| | | 10 |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바. 전기기기산업

1) Input Expansion

① EU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DE 16975/14-1

□ 신청물품: Input expansion

- 블루링크 시스템을 위한 입력확장기. BLU-BIB 입력 확장기 (브레이크 - 인 - 박스). 프로세서와 A / D 컨버터(BSS 블루 링크 전송 프로토콜)로 이루어짐. 42 X 219 X 197mm 하우징 안에 LED 액정, 두 개의 이더넷 포트 (2 × RJ45) 및 8개의 아날로그식 대칭 오디오 입력기와 BLU 링크 연결기, 그리고 케이블로 연결된 네트워크 부품이 장착됨. (사진 부록 참조)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변환하고 Cat5e-인터넷 케이블을 이용, 최대 100 미터의 거리 상에서 전파로 연결된 디지털 블루링크 네트워크에 전송하기 위함. 포장박스 내에 케이블과 조립품 포함됨. 입력 확장기 (브레이크 - 인 - 박스)가 전체의 특성을 규정함. "유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장치로서, 음성과 이미지, 그밖의 정보를 변환하고 전송함. 네트워크 부품을 장착한 입력 확장기. 특성을 규정하지 않는 브레이크-인-박스 조립품.

□ 결정세번: 제8517.69-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6부 주4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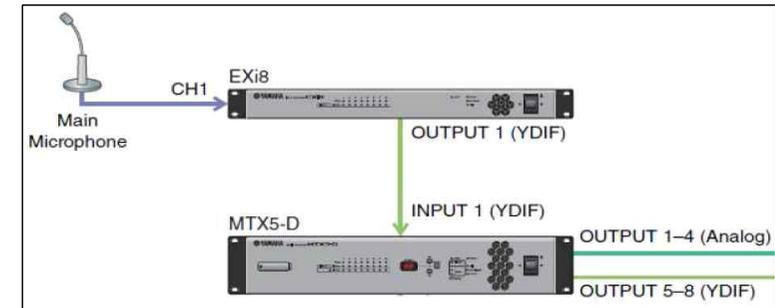
□ 자료출처: 품목분류협의회

□ 물품설명: INPUT EXPANDER(console)

- 수개의 마이크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Audio Mixer기로 유선으로 출력하는 기기

- 콘솔 뒷면에는 마이크로부터 음향을 입력받는 8개의 단자와 Audio Mixer 기로 출력하는 단자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마이크로부터 입력된 아날로그 음성을 전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향처리용 보드, 신호변환보드, 전력제어보드 등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음

<그림> 마이크 및 Audio Mixer와의 연결도



□ 결정세번: 제8543.70-9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43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일부 통신기능이 있으나, 제8517호에서 정립하고 있는 (A) 유선 전화기, (A) 기지국, (B) 엔트리폰 시스템, (C) 비디오폰, (D) 팩시밀리 기기를 제외한 전신 기기, (E) 전화용 또는 전신용 스위칭 기기 (교환기),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그룹에 해당하지 않고

- (G) 기타 통신기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1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4) 음성을 믹스(mixing)하는 기기와 이퀄라이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쟁점물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디지털

믹서 등과 연결되어 신호 변환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17호 및 제8543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517호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8517.69 -- 기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 |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 | 10 | Videophones | |
| 1100 | 장중단파 수신기 | 20 | Entry-phone systems | |
| 12 | 초단파 수신기 | 31 |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or radio-telegraphy; Portable receivers for calling, alerting or paging | |
| 1 | 무선호출기 | 10 | For radio-telephony or radio-telegraphy, for use in civil aircraft | |
| 11 | 휴대용 무선호출기 | 90 | Other | |
| 19 | 기타 | 39 | Other | |
| 90 | 기타 | 10 | For radio-telephony or radio-telegraphy,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1900 | 기타 | 90 | Other | 0 |
| 2000 | 영상전화기 | 90 | Other | |
| 9000 | 기타 | 10 | Radio-telegraphic or radio-telephonic apparatus, for use in civil aircraft | |
| | | 90 | Other | |

○ 제8543호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8543.70 - 기타의 기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일렉트릭 팬스 에너지저 | 10 | Electrical machines with translation or dictionary functions | 0 |
| 20 | 가정형 | 30 | Aerial amplifiers | 0 |
| 10 | 이온정수기 | 50 | Sunbeds, sunlamps and similar suntanning equipment | 0 |
| 20 | 미용기기 | 60 | Electric fence energisers | 0 |
| 30 | 오디오믹서 | 90 | Other | 0 |
| 40 | 이퀼라이저 | 03 | Plasma cleaner machines that remove organic contaminants from electron microscopy specimens and specimen holders | 0 |
| 50 | 오존 발생기 | 04 | Touch-Sensitive Data Input Devices (so-called touch screens) without display capabilities, for incorporation into apparatus having a display, which function by detecting the presence and location of a touch within the display area | 0 |
| 90 | 기타 | 05 | Flight recorders, electric synchros and transducers, defrosters and demisters with electric resistors,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3000 | 전자번역기·전자사전 | 06 | Articles specifically designed for connection to telegraphic or telephonic apparatus or instruments or to telegraphic or telephonic networks | 0 |
| 40 | 전자담배 | 07 | Microwave amplifiers | 0 |
| 10 |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 08 | Cordless infrared remote control devices for video game consoles | 0 |
| 90 | 기타 | 09 | Digital flight-data recorders | 0 |
| 90 | 기타 | 10 | Engine pressure indicators,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10 | 고주파증폭기 | 11 | Portable battery operated electronic reader for recording and reproducing text, still image or audio file | 0 |
| 20 |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 12 | Digital signal processing apparatus capable of connecting to a wired or wireless network for the mixing of sound | 0 |
| 30 | 전기신경자극 | 13 | Portable interactive electronic education devices | 0 |

| | | | | |
|----|----|----|---|---|
| | 기 | | primarily designed for children | |
| 90 | 기타 | 20 | Unit consisting of two junction field effect transistors contained in a dual lead frame housing | 0 |
| | | 30 | Amplifier,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35 | Radio frequency (RF) modulator, operating with a frequency range of 43 MHz or more but not more than 870 MHz, capable of switching VHF and UHF signals,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40 | High-frequency amplifier comprising one or more integrated circuits and discrete capacitor chips on a metal flange in a housing | 0 |
| | | 45 | Piezo-electric crystal oscillator with a fixed frequency, within a frequency range of 1,8 MHz to 67 MHz,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55 | Opto-electronic circuit comprising one or more light-emitting diodes (LEDs), whether or not equipped with an integrated driving circuit, and one photodiode with amplifier circuit, whether or not with an integrated logic gate arrays circuit or one or more light-emitting diodes and at least 2 photodiodes with an amplifier circuit, whether or not with an integrated logic gate arrays circuit or other integrated circuits,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60 | Oscillator, with a centre frequency of 20 GHz or more but not more than 42 GHz,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not mounted on a substrate,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63 | Voltage controlled frequency generator,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contained in a housing with dimensions of not more than 30 x 30 mm | 0 |
| | | 65 | Audio recording and reproducing circuit, capable of stereo audio data storage and simultaneous | 0 |

| | | | | |
|--|--|----|--|---|
| | | | record and playback, comprising 2 or 3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or a lead frame, contained in a housing | |
| | | 80 | Temperature compensated oscillator, comprising a printed circuit on which are mounted at least a piezo-electric crystal and an adjustable capacitor,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85 |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VCO), other than temperature compensated oscillators,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95 | Mobile telephone view and control module comprising of: -a mains power/ CAN (Controller area network) output socket, -a Universal Serial Bus (USB) and Audio IN/OUT ports and - incorporating a video switching device for the interface of smart phone operating systems with the Media Orientated Systems Transport network (MOST),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vehicles of chapter 87 | 0 |
| | | 99 | Other | 0 |

2) 가스감지기

① EU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GB117348670

□ 신청물품: 가스감지기(GAS DETECTOR)

- 소형 가스 감지기. 3가지 가스 옵션을 가진 하나의 가스 감지기로, 사용 기간 동안 무료 유지관리 제공.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충격 감지 지표, 탄탄한 디자인, 독특한 알람 시스템, 사건 기록, 특허 받은 센서, 다양한 활용. 배터리로 작동.

<그림> 가스 감지기(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8531.80-95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31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 자료출처: 품목분류협의회

□ 물품설명: 가스감지기(GAS DETECTOR)

- 사용자가 작업하는 영역에서 유해한 가스가 존재하는지를 감지하는

기기로서, 가스 감지기가 실시간으로 작동하여 규정치 이상의 가스 농도 감지 시 LED, 경보, LCD 화면을 통해 위험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림

- 제품 타입에 따라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산소를 감지하며 IR 통신을 통해 작업자가 가스에 노출된 시간과 농도 등을 전송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알람 set point, 사용자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음

<그림> 가스 감지기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8531.10-3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31호 해설서

- 본 물품은 가스검출기와 경보장치로 구성되었으므로 경보기만을 갖춘 전기식연기검출기를 제8531호에 분류하는 것과 같이 제9027호에서 제외하여야함.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G) 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를 예시하면서, 위험한 가스혼합물(예: 천연가스·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가스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전기화학식 센서와 음향·진동·시각의 경보장치로 구성된 가스경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10-300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31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531호 -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 8531.80 -- 기타의 기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 20 | Flat panel display devices | 0 |
| 10 |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90 | 기타 | 90 | Other | 0 |
| 9000 | 기타 | 95 | Other | 0 |
| |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40 | Electro-accoustic transducer | 0 |
| | | 60 | Bells, buzzers, door chimes and similar | 0 |
| | | 90 | Other | 0 |

- 8531.10 --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도난경보기 | 30 | Of a kind used for buildings | 0 |
| 2000 | 화재경보기 | 95 | Other | 0 |
| 3000 | 가스경보기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4000 | 전기식의 벨 | 90 | Other | 0 |
| 5000 | 사이렌 | | | |
| 9000 | 그 밖의 신호기기 | | | |

3) 축전지(배터리)

① EU 사전심사 사례-1

□ 참조번호: CZ33-1212-2015

□ 신청물품: 휴대용 리튬 폴리머 전지

○ 신고된 데이터에 따르면 휴대용 리튬 폴리머 전지에 관한 것이다(축전지). 장치는 배터리 커넥터와 호환되는 휴대폰과 태블릿, 카메라, 기타 다른 기기들을 위한 전원으로 사용된다. 장치는 USB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 결정세번: 제8507.8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07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 참조번호: CZ37-0328-2016

□ 신청물품: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신고된 데이터와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태블릿, GPS 네비게이션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다양한 전기 장치 충전을 위한 것이다. 백업 전원은 배터리 손실에 대한 보호와 과부하 방지, 방전 보호, 과충전 방지를 위한 안전 기능을 포함하고 배터리 상태 및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LED 표시등이 장착되어 있다. 기술 파라미터(매개 변수): - 내장형 배터리 2000mAh의 용량 - Li-Po 배터리 3.7V - 입력 전압 최대 500mA/DC 5V - 출력 전압 최대 1000mA/DC 5V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충전 입력 커넥터 micro USB 하나 - 연결된 장치 충전 출력 커넥터 USB 하나 - USB 케이블 2.0 A 패키지 1개 - 마이크로 USB 2.0 B - 크기(높이 x 길이 x 가로) 104 x 55 x 10mm - 무게 71g

결정세번: 제8507.8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07호 해설서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휴대용 보조 배터리

- 리튬이온배터리, PCB, 커넥터 등이 내장된 케이스와 전원 연결을 위한 케이블 3개로 구성되어 있음
 - DC 5V/1.5A의 전원을 공급받아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DC 3.7V로 충전하였다가 PCB회로로 거쳐 DC 5V/1.5A의 전원을 출력
- 본 물품은 스마트기기의 배터리 부족시 USB케이블로 연결하여 보조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5V 1.5A의 전기를 이용하여 스마트기기의 배터리 충전
 - 폴 알루미늄 초슬림 메탈 디자인, 터치 버튼 정보표시 창, 4,000mAh 대용량, 출력 5V 1.5A, 입력 5V 1.5A, 아이폰 5기준 약 2~3회 충전가능

<그림> 신청 물품 (휴대용 보조 배터리)



결정세번: 제8507.80-3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 제850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충전·방전이 가능한 리튬폴리머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6에 따라 제8507.80-3000호에 분류함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Lithium-ion Electric Accumulators

- USB 케이블 또는 충전용 어댑터를 이용하여 Lithium-ion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를 저장한 후 다양한 Portable 기기(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의 전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휴대용 전원공급기
 - Lithium-ion 배터리 용량 : 5,200mAh(2,600mAh * 2EA)
- 본체 케이스 외부는 전원량을 표시하는 LED Display, 충전시작 및 충전량 Check를 위한 버튼으로 구성
 -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는 Lithium-ion 2차 전지(2,600mAh) 2개, 입출력단자, Led, 과충전·과방전 보호 IC, 써머스터 및 능수동 소자를 실장한 PCB로 구성

결정세번: 제8507.6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0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재충전이 가능한 Lithium-ion 배터리, 회로 보호장치, 충전 및 방전을 위한 입출력단자 등으로 구성된 기기로 전기에너지의 저장 및 방전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7.60-0000호에 분류함

⑤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50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507호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507.60 -- 리튬이온 축전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리튬이온 축전지 | 00 | 리튬-이온 | 0 |
| |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15 | Cylindrical lithium-ion-accumulators or modules with: - a nominal capacity of 8,8 Ah or more, but not more than 18 Ah, - a nominal voltage of 36 V or more, but not more than 48 V, - a power of 300 Wh or more, but not more than 648 Wh,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electric bicycles | 0 |
| | | 17 | Lithium-ion starter accumulator, consisting of four rechargeable lithium-ion secondary cells, with: - a rated voltage of 12 V, - a length of 35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355 mm, - a width of 17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80 mm, - a height of 18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95 mm, - weighing 10 kg or more but not more than 15 kg - a nominal charge of 60 Ah or more, but not more than 80 Ah | 0 |
| | | 20 | Rectangular accumulator or module, with a length of not more than 69 mm, a width of not more than 36 mm and a thickness of not more than 12 mm,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rechargeable batteries | 0 |
| | | 23 | Lithium-ion-accumulator or module with: - a nominal capacity of 72 Ah or more, but not more than 100 Ah, - a nominal voltage of 3,2 V - a weight of 1,9 kg more, but not more than 3,4 kg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rechargeable hybrid electric vehicle batteries | 0 |
| | | 25 | Rectangular modules for incorporation in lithium-ion rechargeable batteries, with: - a width of 352,5 mm (± 1 mm) or 367,1 mm (± 1 mm) - a depth of 300 mm (± 2 mm) or 272,6 mm (± 1 mm) - a height of 268,9 mm ($\pm 1,4$ mm) or 229,5 mm (± 1 mm) - a weight | 0 |

| | | | | |
|--|--|----|---|---|
| | | | of 45,9 kg or 46,3 kg - a rating of 75 Ah and - a nominal voltage of 60 V | |
| | | 27 | Lithium-ion cylindrical accumulator with: - a nominal capacity of 10 Ah or more, but not more than 20 Ah; - a nominal voltage of 12,8 V ($\pm 0,05$) or more, but not more than 15,2 V ($\pm 0,05$); - a power of 128 Wh or more, but not more than 256 Wh,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electric bicycle drives | 0 |
| | | 30 | Cylindrical lithium-ion accumulator or module, with a length of 63mm or more and a diameter of 17,2mm or more, having a nominal capacity of 1200 mAh or more,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rechargeable batteries | 0 |
| | | 33 | Lithium-ion accumulator, with: - a length of 15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300 mm - a width of 70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 000 mm - a height of 1 10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 500 mm - a weight of 75 kg or more, but not more than 160 kg - a nominal capacity not less than 150 Ah and not more than 500 Ah | 0 |
| | | 37 | Lithium-ion accumulator, with: - a length of 1 20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2 000 mm - a width of 80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 300 mm - a height of 2 00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2 800 mm - a weight of 1 800 kg or more, but not more than 3 000 kg - a nominal capacity of 2 800 Ah or more but not more than 7 200 Ah | 0 |
| | | 43 | Lithium-ion accumulators, with - a thickness of not more than 4,15 mm, - a width of not more than 245,15 mm, - a length of not more than 90,15 mm, - a nominal capacity of 1 000 mAh or more but not more than 10 000 mAh, - a weight of not more than 250 g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roducts falling within subheading 8471 30 00 | 0 |
| | | 45 | Rechargeable Lithium-ion Polymer Battery with: - a nominal capacity of 1 060 mAh, - a | 0 |

| | | | | |
|--|--|----|--|---|
| | | | nominal voltage of 7,4 V (average voltage at 0,2 C discharge), – a charging voltage of 8,4 V ($\pm 0,05$), – a length of 86,4 mm ($\pm 0,1$), – a width of 45 mm ($\pm 0,1$), – a height of 11 mm ($\pm 0,1$),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ash registers | |
| | | 47 | Lithium-ion accumulators, with – a thickness of not more than 4,15 mm, – a width of not more than 75,15 mm, – a length of not more than 150,15 mm, – a nominal capacity of 1 000 mAh or more but not more than 10 000 mAh, – a weight of not more than 150 g,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roducts falling within subheading 8517 12 00 | 0 |
| | | 50 | Modules for the assembly of batteries of ion lithium electric accumulators with: – a length of 298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408 mm, – a width of 33,5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209 mm, – a height of 138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228 mm, – a weight of 3,6 kg or more, but not more than 17 kg, and – a power of 458 Wh or more, but not more than 2 158 Wh | 0 |
| | | 53 | Batteries of lithium-ion electric accumulators or rechargeable module: – a length of 1 203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 297 mm, – a width of 282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772 mm, – a height of 792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839 mm, – a weight of 253 kg or more, but not more than 293 kg, – power of 22 kWh or 26 kWh, and – constituted of 24 or 48 modules | 0 |
| | | 55 | Lithium-ion accumulator or module in cylindrical form, with: – a base similar to an ellipse squeezed in the middle, – a length of 49 mm or more (not including terminals), – a width of 33,5 mm or more, – a thickness of 9,9 mm or more, – a rated capacity of 1,75 Ah or more, and – a rated voltage of 3,7 V, for the manufacture of rechargeable batteries | 0 |

| | | | | |
|--|--|----|---|---|
| | | 57 | Lithium-ion accumulator or module, cuboid in shape, with: – some of the corners rounded off, – a length of 76 mm or more (not including terminals), – a width of 54,5 mm or more, – a thickness of 5,2 mm or more, – a rated capacity of 3 100 mAh or more, and – a rated voltage of 3,7 V, for the manufacture of rechargeable batteries | 0 |
| | | 60 | Lithium-ion rechargeable batteries, with: • a length of 1213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575mm, • a width of 245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200mm, • a height of 265mm or more, but not more than 755mm, • a weight of 265kg or more but not more than 294kg, • a nominal capacity of 66.6Ah, put up in packs of 48 modules | 0 |
| | | 65 | Cylindrical Lithium Ion Cell with – 3,5 VDC to 3,8 VDC, – 300 mAh to 900 mAh and – a diameter of 10,0 mm to 14,5 mm | 0 |
| | | 71 | Lithium-ion rechargeable batteries, with: – a length of 70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2 820 mm – a width of 935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 660 mm – a height of 85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700 mm – a weight of 280 kg or more, but not more than 700 kg – a power of not more than 130 kWh | 0 |
| | | 75 | Rectangular lithium-ion-accumulator, with – a metal casing, – a length of 173 mm ($\pm 0,15$ mm), – a width of 21 mm ($\pm 0,1$ mm), – a height of 91 mm ($\pm 0,15$ mm), – a nominal voltage of 3,3 V and, – a nominal capacity of 21 Ah or more | 0 |
| | | 80 | Rectangular lithium-ion-accumulator or module, with – a metal casing, – a length of 171 mm (± 3 mm), – a width of 45,5 mm (± 1 mm), – a height of 115 mm (± 1 mm), – a nominal voltage of 3,75 V and – a nominal capacity of 50 Ah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rechargeable batteries for motor vehicles | 0 |
| | | 85 | Rectangular modules for incorporation in | 0 |

| | | | | |
|--|--|----|---|---|
| | | | lithium-ion rechargeable batteries: - of a length of 312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350 mm - of a width of 79,8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225 mm - of a height of 35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68 mm - of a weight of 3,95 kg or more, but not more than 8,56 Kg - with a rating of 66,6 Ah or more, but not more than 129 Ah | |
| | | 90 | Other | 0 |

- 8507.80 -- 기타의 축전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3000 | 리튬폴리머축전지 | 00 | 기타의 축전지 | 0 |
| 9000 | 기타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20 | Rechargeable Lithium-ion Polymer Battery with: - a nominal capacity of 1 060 mAh, - a nominal voltage of 7,4 V (average voltage at 0,2 C discharge), - a charging voltage of 8,4 V (±0,05), - a length of 86,4 mm ((±0,1), - a width of 45 mm (±0,1), - a height of 11 mm (±0,1),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ash registers | 0 |
| | | 90 | Other | 0 |

4) 배전반 및 제어반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23096/15-1

신청물품: 전자식 핸드 휠

- 전자식 핸드 휠 - 여러 개의 키 스위치, 비상 정지 버튼, 하우징 내에 접속 플러그, 저장장치는 없음. - 1000 V 미만의 전압 - 회전 기계 제어 유선 리모컨. 이 제품은 "8536 호의 여러 장치를 탑재한 전기 스위치로서 와 1,000 V 미만의 전압. 숫자나 저장 프로그램 제어. 소위 전자식 핸드 휠로 분류됨.

<그림> 전자식 핸드 휠



결정세번: 제8537.10-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9595/15-1

신청물품: 릴레이보드

- 릴레이 보드 "SC-008 A / RSC-008 A", 16 릴레이와 8개의 터미널 블

록이 장착된 SUB-D 커넥터. 230 V AC / 24 V DC의 전압 사용. 전기 스위치. 이 제품은 8536 호의 더 많은 장치와 함께 장착된 캐리어로서 1000V 이하의 전압에 사용. 제어장치나 저장프로그램이 없고 항공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코드번호 8537 1099 30 0 에서 98 0 까지 고려하지 않는 전기 스위치로 분류됨.

결정세번: 제8537.10-99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DE6468/15-1

신청물품: PDU 제어기

○ 하나의 조이스틱과 두 개의 차단기, 화면액정으로 구성되었으며 170mm X 190mm크기의 평평한 패널(panel)에 설치된 제어반으로서 뒷면에는 다중 케이블이 장착됨

○ 항공기의 화물 적재 시스템과 연결하여 PDU(Power Drive Unit)* 제어를 목적으로 함

* PDU(Power Drive Unit) : 화물 항공기 내부에 화물을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면에 설치된 바퀴

결정세번: 제8537.10-99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④ EU 사전심사 사례-4

참조번호: DE2942/15-1

신청물품:

○ 디스플레이 기기 (전원 공급기, 드라이버, 램과 IC 제어기를 포함하는) 회로도 와 연결. 터치 감지 표면과 백라이트를 포함하는 LCD 디스플레이

이 (160 × 160 픽셀)로 구성된 70.5 X 69.0 X 10.0 mm 치수의 제어 및 영상표시장치) 1000V 이하의 전압에 적합. X선 사진술을 위한 소위 DX-S 디지털이저에서 시스템 기능을 제어하고 시각화하기 위함. 이 제품은 1000 볼트 이하의 전압에 적합하며 전기 스위치 차단과 제어를 위해 8536 호의 더 많은 장치와 함께 장착되는 캐리어로서 제어장치나 저장프로그램이 없고 항공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코드번호 8537 1099 300 에서 980 까지 고려하지 않는 전기 스위치로 분류됨.

결정세번: 제8537.10-99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2 가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KM12-LF PCB MODULE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다수의 Fuse(22ea), Relay(5ea), Bus Bar, 전기 회로 PCB, Terminal 등이 조립되어 있는 물품

- 차량의 엔진룸에 장착되어 배터리로부터 공급받은 전원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전기기기(와이퍼, 윈드 와셔, 전조등 등)로 전류를 분배하고, 퓨즈 및 릴레이 등을 한곳에 배치해 과전류로부터 전기회로를 제어 및 보호기능 수행

결정세번: 제8537.1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3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다수의 퓨즈 및 릴레이, Bus bar, PCB, Connector 등으로 구성되어 배터리의 전류를 차량 곳곳의 전기기기에 효과적으로 분배해주고, 퓨즈 및 릴레이 등을 한곳에 배치해 전기회로를 제어 및 보호해주는 배전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1000호에 분류함

⑥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온도컨트롤러; TEMP1000 SERIES;

○ DISPLAY UNIT·CONTRIL UNIT·I/O-B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제시된 물품들이 함께 항온챔버에 장착되고, 외부센서로부터 전달받은 측정값을 토대로 챔버 내부의 물리량(온도, 조도, 진공 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① DISPLAY UNIT : CONTROL UNIT과 연결되고, PC와도 연결이 가능하며, 터치로 외부입력을 받고 파라미터의 설정이 가능

② CONTROL UNIT : DISPLAY UNIT·PC·I/O-B와 연결되고,

③ I/O-B : CONTROL UNIT과 연결되어 입출력 기능을 수행

□ 결정세번: 제8537.10-2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4 / 제853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개별기기들이 케이블로 상호 연결되어 챔버에 장착되고, 챔버 내부의 온도를 설정·제어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전압이 1,000V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는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⑦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3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537호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8537.10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배전반 | 10 | Numerical control panels with built-in automatic data-processing machine | 0 |
| 2000 | 제어반 | 10 |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9000 | 기타 | 90 | Other | 0 |
| | | 91 | Other; Programmable memory controllers | 0 |
| | | 10 |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30 | Data processing and evaluation vehicle dashboard control module, operating through the CAN - bus protocol, containing at least: • microprocessor relays, • a stepper motor, •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EEPROM) memory, and • other passive components (such as connectors, diodes, voltage stabilizer, resistors, capacitors, transistors), with a voltage of 13,5 V | 0 |
| | | 50 | Fuse control module in a plastic housing with mounting brackets comprising: - sockets with or without fuses, - connecting ports, - a printed circuit board with embedded microprocessor, micro switch and relay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of chapter 87 | 0 |
| | | 60 | Electronic control units, manufactured according to class 2 of IPC-A-610E standard, with at least: - an AC power input of 208 V or more but not more than 400 V, - a logic power input of 24 V DC, - an automatic circuit breaker, - a main power switch, - internal or external electrical connectors and cables, - in a housing with dimension of 281 mm x 180 mm x 75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30 mm x 420 mm x 230 mm, of a kind used for manufacturing recycling or sorting machines | 0 |
| | | 99 | Other | 0 |
| | | 99 | Other | 0 |
| | | 10 |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 | 30 | Motor bridge ICs without programmable memory consisting of: - one or more integrated circuits, not interconnected, on separate lead frames, - also with discrete Metal Oxide Field Effect Transistors (MOSFET) for controlling DC motors in cars - mounted in a | 0 |

| | | | |
|--|----|---|---|
| | | plastic housing | |
| | 35 | Electronic control unit without memory, for a voltage of 12 V, for information exchange systems in vehicles (for connection of audio, telephony, navigation, camera and wireless car service) containing: - 2 rotary knobs - 27 or more pushbuttons - LED lights - 2 integrated circuits for receiving and sending of control signals via the LIN-bus | 0 |
| | 40 | Electronic control unit for monitoring car vehicle tyre pressure comprising plastic box with printed circuit board inside and with or without metal holder, of: - a length of 5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20 mm, - a width of 2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40 mm, - a height of 3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120 mm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of Chapter 87 | 0 |
| | 45 | Electronic control units, manufactured according to class 2 of IPC-A-610E standard, with at least: - an AC power input of 208 V or more but not more than 400 V, - a logic power input of 24 V DC, - an automatic circuit breaker, - a main power switch, - internal or external electrical connectors and cables, - in a housing with dimension of 281 mm x 180 mm x 75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30 mm x 420 mm x 230 mm, of a kind used for manufacturing recycling or sorting machines | 0 |
| | 50 | Electronic control unit BCM (Body Control Module) comprising - plastic box with printed circuit board and metal holder, - with voltage of 9V or more, but not more than 16V, - able to control, evaluate and manage functions of assisting services in an automobile, at least wiper timing, window heating, interior lighting, seat belt reminder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of Chapter 87 | 0 |
| | 55 | Touch-Sensitive Data Input Devices (so-called touch screens) without display capabilities, for incorporation into apparatus having a display, which function by detecting the presence and location of a touch within the display area | 0 |
| | 60 | Electronic assembly consisting of: - a microprocessor, | 0 |

| | | | |
|--|----|---|---|
| | | - light-emitting diode (LED) or liquid crystal display (LCD) indicators, - electronic compon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built-in products of headings 8514 2080, 8516 5000 and 8516 6080 | |
| | 70 | Keypads of silicone or plastic, - whether or not with parts of metal, plastic, glass fibre reinforced epoxide resin or wood, - whether or not printed or surface treated, - whether or not with electrical conducting elements - whether or not with keypads foil glued on the keyboard - whether or not with protective foil - single or multilayer | 0 |
| | 92 | Touch sensitive screen panel, consisting of a conductive grid between two glass or plastic plates or sheets, fitted with electric conductors and connectors | 0 |
| | 93 | Electronic control units for a voltage of 12 V,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vehicle mounted temperature control systems | 0 |
| | 94 | Unit consisting of two junction field effect transistors contained in a dual lead frame housing | 0 |
| | 96 | Electronic circuit card without separate housing for actuating and controlling vacuum cleaner brushes powered by not more than 300 W | 0 |
| | 98 | Electronic circuit cards that - are connected by wire or radio frequency to each other and the motor controller card, and - regulate the functioning (switching on or off and suction capacity) of vacuum cleaners according to a stored program, - whether or not fitted with indicators that display the functioning of the vacuum cleaner (suction capacity and/or dust bag full and/or filter full) | 0 |
| | 99 | Other | 0 |

5) 네비게이션 시스템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SI2015/0152

신청물품: 선박 추적용 무선 항법 시스템

- 선박 추적용 무선 항법 시스템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선박 위치 파악을 위한 gps수신기, 위성과 지상통신선을 통해 통제 센터를 연결하는 양방향 통신 기기. 안테나와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기기는 198x67x198 mm 크기의 방수 하우징 안에 위치하게 된다. 14핀 연결 장치의 전원 케이블, 알맞은 설치 재료와 사용 방법이 기기에 부착되어 있다. 이 기기는 위성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선박의 위치, 방향과 속도 정보를 전송한다. 이것은 또한 당신이 선박에서 또는 선박으로 짧은 파일들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vms로 어선에 적용된다. 이 기기는 한대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위한 것이다.

결정세번: 제8526.91-20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3 / 제8526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GPS COMPASS

- 고정밀 GPS 안테나를 통해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선박의 정확한 선수방위, 속도, 진행방향 등의 여러 정보를 연산하여 디스플레이기기를 통해 보여 주는 선수방위 전달장치
 - 3개의 GPS 안테나에서 수신한 GPS반송파 위성측정치를 이용하여 기준 수신기를 원점으로 하는 2개의 기저선 벡터를 계산하고, 좌표계 변환을 통하여 선수방위, 피치, 롤 등의 자세를 획득함
 - 안테나 유닛(신호수신), 프로세서 유닛(GPS수신기, 마이크로프로세서, 관성

측정유닛을 탑재한 연산장치), 디스플레이 유닛(마이크로프로세서, 컬러 LCD, 키패드를 탑재하여 본체에서 획득한 선수 및 자세정보를 표시)으로 구성됨

결정세번: 제8526.91-9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4 / 제8526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안테나, 연산장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물품으로 연산장치는 제85류 GPS 수신기와 제90류의 센서가 결합된 제16부 주3호의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체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에 해당되나 본질적인 제작의도가 GPS 수신기를 이용한 선수방위 전달장치에 있어 GPS 수신기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본 물품은 안테나, GPS수신기,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으로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정밀 GPS 안테나를 통해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선박의 정확한 선수방위, 속도, 진행방향 등을 구현하는 기타 항행용 무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6.91-909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526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526호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 8526.91 -- 항행용 무선기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 | 장중단파 수신기 | 20 | Radio navigational receivers | 0 |
| 10 | 항공기용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90 | 기타 | 20 | Assembly for GPS system having a position determination function, without display, and a weight of not more than 2 500 g | 0 |

| | | | | |
|------|----------|----|--|---|
| 20 | 초단파 수신기 | 80 | Integrated audio module (IAM) with a digital video output for connection to an LCD touch screen monitor, interfaced over the 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MOST) network and transported over the MOST High protocol, with or without - a printed circuit board (PCB) containing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receiver, a gyroscope, and a Traffic Message Channel (TMC) tuner, - a hard disk drive supporting multiple maps, - a HD radio, - a voice recognition system, - a CD and DVD drive, and including - Bluetooth, MP3 and USB input connectivity, - a voltage of 10 V or more but not more than 16 V, for the use in the manufacture of vehicles in Chapter 87 | 0 |
| 10 | 항공기용 | 99 | Other | 0 |
| 90 | 기타 | 80 | Other | 0 |
| 30 | 무선방향 탐지기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10 | 항공기용 | 90 | Other | 0 |
| 20 | 자동차용 | | | |
| 90 | 기타 | | | |
| 4000 | 로란 리시버 | | | |
| 90 | 기타 | | | |
| 10 | 항공기용 | | | |
| 20 | 자동차용 | | | |
| 90 | 기타 | | | |

6) 라디오 수신기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22532/15-1

신청물품: 자동차 라디오

- 자동차 라디오 - 하우징 내부에 집적 RDS 디코더, 오디오 증폭기, 블루투스 무선 송신기 및 수신기 모듈 장착. 또한 무선 수신기 디스플레이, USB 인터페이스, 안테나, 오디오 시스템 단자 (기준 198.4 X 214 X 160mm)가 장착됨- 수신과 변환 기능이 있으며 블루투스 표준 음성 데이터로 전송하고 오디오 시그널을 블루투스 표준으로 보내는 재생 FM / MW 범위의 무선 수신을 목적으로 함.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RDS)를 디코드 핸드프리 모드 휴대 전화의 무선 전화와 연결하여 사용. USB 대용량 저장 장치와 사운드 - 차량에 사용. "카세트 플레이어 아인 레이저 판독 시스템으로 수신 및 RDS 신호의 디코딩을 위한 음향 재생 장치. 외부 전원으로 작동 할 수있는 차량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신 장치의 방송 (음향 송수신과 결합한 라디오 수신기)

결정세번: 제8527.21-2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1392/15-1

신청물품: 오토바이 라디오

- 오토바이 라디오 - 통합 RDS 디코더와 AM / FM 듀얼 튜너, 기상 및 TMC 수신기, MP3 디코더가 장착된 프로세서, 오디오 증폭기, 블루투스 무선 전송 및 수신모듈이 금속 하우징에 탑재됨. 안테나 및 오디오 포트, CAN 버스와 시스템 인터페이스 (그림 참조)도 장착됨 - FM / MW 범위의 무선 수신을 수신하여 접속. USB 대용량 저장 장치로부터

사운드 재생.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 (RDS), 교통 (TMC) 및 기상 정보의 디코딩을 위한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무선 드라이버 통신 및 블루투스 표준의 수신, 변환, 그리고 오디오 신호의 전송뿐만 아니라 호환되는 휴대 전화와 스피커폰을 위한 장치. - 오토바이에 설치한다. "사운드 재생 장치와 결합되어 외부 전원으로 작동 할 수 있는 차량에 사용되는 종류의 라디오 수신 장치. 레이저 판독시스템 없음. 카세트기기가 아니며 RDS 신호의 수신과 디코딩을 위한 기기" (라디오 수신기와 텔레비전 통신 장비의 결합)

결정세번: 제8527.21-59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3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DE1459/15-1

신청물품: 헤드 유닛

○ 헤드 유닛 - AM / FM 라디오 튜너, RDS 디코더, CD 플레이어, 오디오 디코더, 오디오 주파수, 블루투스 무선 전송 및 수신모듈이 하우징에 장착됨. USB 인터페이스, 오디오와 시스템 연결. UKW 및 MW 범위에서의 라디오 수신. 디지털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의 신호들(RDS)을 수신하고 디코딩하기 위한 장치. 상기 CD 및 외장 USB 메모리 매체에서 음향재생 - 본질적인 특성 - 뿐만 아니라 차량에 설치 후 블루투스 규격의 통신 장치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에 사용되는 종류의 방송 수신 장치. 외부 전원으로만 작동 할 수 있음. 음성재생기와 결합하여 RDS 신호의 수신과 디코딩을 할 수 있음. 레이저 판독 시스템 (라디오 방송 수신기가 음향 재생 장치와 결합)"

결정세번: 제8527.21-59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3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Wireless Sound System(LS150)

○ 다양한 음향기기와 무선 연결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고, FM 라디오 청취가 가능한 기기임(유선 전원공급)

- Wi-Fi, BT, AirPlay, NFC 등 다양한 무선기능을 통한 음악 감상 가능 / FM라디오 청취(88.0~108.0MHz)

결정세번: 제8527.99-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27호 해설서

○ 음원재생 및 라디오 기능이 결합된 기기로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7.99-0000호에 분류함

⑤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527호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527.21 -- 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카세트형 | 20 | Capable of receiving and decoding digital radio data system signals; With laser reading system | 0 |
| 2000 | 디스크형 | 52 | Other: Of the cassette-type with an analogue and digital reading system | 0 |
| 3000 |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 59 | Other | 0 |
| 9000 | 기타 | 70 | Other: With laser reading system | 0 |
| | | 92 | Other: Of the cassette-type with an analogue and digital reading system | 0 |
| | | 98 | Other | 0 |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기타 | 00 | Other | |
| | | 10 |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comprising: - a radio tuner (capable of receiving and decoding radio signals and transmitting those signals within the assembly) without signal processing capabilities, - a microprocessor capable of receiving remote control messages and controlling the tuner chipset,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home entertainment systems | 0 |
| | | 20 | Printed circuit board subassembly, comprising: - a radio tuner, capable of receiving and decoding radio signals and transmitting those signals within the assembly, with a signal decoder, - a radio frequency (RF) remote control receiver, - an infrared remote control signal transmitter, - a SCART signal generator - a TV state sensor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home entertainment systems | 0 |
| | | 90 | Other | 0 |

사. 자동차산업

1) 수륙양용차량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8058/15-1

신청물품: 수륙양용차량

- “구조작업을 위한 구멍보트” 네 개의 차축 새시와 방수 기능을 가진 모든 지형의 수륙 양용 차량 - 요청 정보에 의하면 신제품과 같은 상태. - 점화기가 장착된 BMW K1300 연소엔진 -. - 1293 cm³의 후드 용량- 핸들과 제어설비를 갖춘 콘솔. 벤치형 두 좌석 시트, - 위치에 따라 접을 수 있는 네 개의 바퀴 - 특수하게 설계된 적재면. 주로 환자수송(얕은 바다, 예를들면 해안 부근)에 적합. 제 89장에서 선박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87장에서 수륙양용차로 분류. “이 승용차(수륙양용차)는 그 특성에 따라 주로 사람을 운송함. 승용차 (수륙 양용 차), 8702 항목에서 명명된 것과는 다름. 실린더 용량 1,000 cm³ 에서 1500 cm³ 를 초과하는 후드공간. 내연 점화 방식의 연소모터 장착

결정세번: 제8703.22-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주4 나 / 제8703호 해설서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703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703호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8703.22 -- 그 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 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7000 | 신차 | 10 | New | 0 |
| 8000 | 중고차 | 90 | Used | 0 |
| | | | | |
| | | | | |
| | | | | |

2) 기어박스 및 부분품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3024/15-1

신청물품:

- 이중 원추형 강판링, 사진은 부록을 참조. 특별히 제조된 이 원뿔 모양의 제품은 강철 재질로 만들어짐. 요청에 따라 지름 약 8 cm x 10,7 cm x 15,5 cm 혹은 17 cm 두께 약 0,8 cm부터 2,2 cm 까지. 한 쪽면에 특별한 모양의 돌출부가 있다 -- 내부와 외부에 특수하고 거친 마찰 라이닝이 장착, -- 차량 내부에서 변속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회전수의 안정성(균형)에 도움이 되는 수동 변속 동기화 시스템의 일부로 장착됨. 추가된 요청정보에 따르면 산업적 조립에는 적합하지 않음. 차량 기어의 일부로서 독점 사용하기 위해 구별됨. "8705-8701 항목에 의거한 차량의 일부. 수동 기어 박스의 일부 (이중 원추형 강판링), 산업 조립에 적합하지 않음.

결정세번: 제8708.40-99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주3 / 제8708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3033/15-1

신청물품: 변속 포크

- 변속 포크, 사진은 첨부 파일을 참조 - 특수 제조된 포크형 제품. 요청에 따라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으로 제조됨. 지름 약 10.9 cm에 달하며 원형 부분에 플라스틱 커버가 장착된 반원형 포크. 변속기어가 들어갈 수 있는 원통형 구멍 (내경 약 16mm)이 있으며 옆으로는 두 개의 구멍 (직경 약 5 mm)이 있음. -- 변속기어가 수동으로 변속기와 결합하도록 사용됨. -- 요청정보에 따르면 산업분야 조립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차량 기어박스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함. 8701-8705에 의거한 차량 부품. 기어변속 부품(시프트 포크). 농업용 조립에는 적합하지 않음. 철강재질이 아님.

- 결정세번: 제8708.40-99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주3 / 제8708호 해설서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FORK SHIFT
 - 축단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포크모양으로, 기어박스에서 수동기어 변속시 싱크로나이저슬리브를 회전시킴과 동시에 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철강재질의 물품 [11.2(가)×11.7(세)×12.1cm(높)]

- 결정세번: 제8708.4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주3 / 제8708호 해설서

- 본 물품은 기어 변속시 싱크로나이저슬리브를 이동시키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④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20 | For the industrial assembly of: Pedestrian-controlled tractors of subheading 8701 10; Vehicles of heading 8703; Vehicles of heading 8704 with either a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2 500 cm ³ or with a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2 800 cm ³ ; Vehicles of heading 8705 | 0 |
| | | 50 | Other; Gear boxes | 0 |
| | | 10 | Automatic hydrodynamic gearbox with a hydraulic torque converter without transfer box, cardan shaft and front differential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of Chapter 87 | 0 |
| | | 90 | Other | 0 |
| | | 91 | Parts: Of closed-die forged steel | 0 |
| | | 99 | Other | 0 |

3) 로드휠 및 부분품

① EU 사전심사 사례-1

□ 참조번호: DE21386/14-1

□ 신청물품: 타이어휠 고정 클립

- 타이어휠 고정 클립 - 약 20mm X 12mm X 3mm (길이 x 폭 x 높이)의 크기의 클립 - 강철 재질로 각 5그램의 무게, 다양한 형태로 제조됨. 각 12개의 클립이 접착밴드에 장착됨. (약 140mm X 20mm) 차량 바퀴용. 차량 바퀴에 장착되어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로 8701-8705 호에 의거한 자동차 바퀴에 이용됨. 따라서 7326호에 의거한 제품은 아님. "8701-8705호의 차량용 부품(강철접착 클립) 바퀴용 부품. 공업용으로는 부적합. 알루미늄 재질이 아님."

□ 결정세번: 제8708.70-99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주3 / 제8708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 참조번호: FR-RTC-2015-000518

□ 신청물품: 바퀴 부속품

- 휠 스페이서 알루미늄 바퀴 부속품. 원형이며, 중심부 및 외곽부에 구멍(바퀴 볼트 및 너트 위치용)이 있다. 자동차 윤심 및 휠 사이에 설치된다. 자동차 바퀴 진동 및 뒤집힐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이용된다.

□ 결정세번: 제8708.70-5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주3 / 제8708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 참조번호: FR-RTC-2014-008326

□ 신청물품: 차량용 너트

- 4 x 4 스타일 자동차용 단일 블록 제작 철제 노출 너트. 규격 7 x 16 인치. 이 상품은 상자에 넣어 인도된다.

□ 결정세번: 제8708.70-99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708호 해설서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WHEEL CAP

- 자동차 WHEEL 중심부에 장착되어 먼지·이물질 등으로부터 허브를 보호하고 외관을 장식하는 기능을 수행 (PC+ABS수지, Cu·Ni·Cr 등 도금)

□ 결정세번: 제8708.7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총설 / 제8708호 해설서

- 제17부 총설에서 규정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은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임

- 본 물품은 WHEEL 중심부에 장착되어 먼지·이물질 등으로부터 허브를 보호하고 외관을 장식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자동차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도 특별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로드휠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⑤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708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8708.70 --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 10 | For the industrial assembly of: Pedestrian-controlled tractors of subheading 8701 10; Vehicles of heading 8703; Vehicles of heading 8704 with either a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2 500 cm ³ or with a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2 800 cm ³ ; Vehicles of heading 8705 | 0 |
| | | 10 | Wheels of aluminium, whether or not with their accessories and whether or not fitted with tyres | 0 |
| | | 90 | Other | 0 |
| | | 50 | Other; Wheels of aluminium; parts and accessories of wheels, of aluminium | 0 |
| | | 10 | Wheels of aluminium, whether or not with their accessories and whether or not fitted with tyres | 0 |
| | | 90 | Other | 0 |
| | | 91 | Wheel centres in star form, cast in one piece, of iron or steel | 0 |
| | | 99 | Other | 0 |

4) 차축 및 부분품

① EU 사전심사 사례-1

□ 참조번호: PLPL-WIT-2015-00686

□ 신청물품: 차축

○ 원동축-드라이브 샤프트 (좌우)- 승객용 승용차의 전동장치로, 철강으로 이루어진 구성장치. 기어박스 혹은 차축을 바퀴허브와 연결. 차량 차륜의 엔진을 전동장치와 연결하여 전달이 가능하도록 구성. 구동축 포함: 외부, 내부, 파이프 샤프트, 단단한 샤프트, 공, 링 체결, "내부 레이스", 커버, 밴드, 크로스, 롤러, 볼 베어링.

□ 결정세번: 제8708.50-2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17부 주3 / 제 8708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 참조번호: PLPL-WIT-2015-01587

□ 신청물품: 차축

○ 다양한 차량의 자동차 브랜드, 유형, 모델에 적용 가능한 차량용 바퀴 허브. 허브 몸체는 다이 펌프 스틸 단조로 만들. 그 후, 허브 몸체를 열처리, 나사 절삭, 가공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이하의 다른 부품을 끼워 연결을 함, 부품 리스트: 그리스, 베어링, 나사봉, 압연 밀봉, ABS, ASR, ESP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위한 고속 회전 리더기, 전기 커넥터, 바퀴 허브 통합 시스템의 구축. 결정, 허브의 크기 또는 종류 및 장비의 범위는 제조사, 모델, 차량 장비, 차축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전동장치와 비 전동장치 등)

□ 결정세번: 제8708.50-55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708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SK490316/14/364

신청물품: 차축

- 칼럼 또한 지닌 강철로 만든 미완성 상태인 외륜은 갈리거나 뚫려 있고 나사선을 새겨져 있다. 이는 3세대 차의 자동차 뼈대의 일부분인 바퀴통 설치 시 사용된다. 전체 바퀴통이 중심부에서 링으로 자동차 뼈대에 나사로 고정되어있다. 고정링과 함께 연결된 베어링으로 인해, 프레임에 브레이크 디스크와 휠(바퀴)이 장착된다. 링은 규범 S130107에 따라 재료 C56E2로 생산된다 - 강철 다이으로는 만들지 않는다. 외륜은 다기능적이며 구동 유형 혹은 비구동 유형 모든 설정에서 사용 가능하다.

결정세번: 제8708.50-9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2 가 / 통칙 3 다 / 통칙 6 / 제 8708호 해설서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and parts thereof ; Axle shaft

- 트랙터의 종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 장치를 거쳐 전달된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고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축 (재질 : 합금강)
 - 양 끝단 7~8cm 톱니바퀴가공이 되어있고, 양쪽으로 단면 중앙에 깊이 1cm 정도의 홈 가공이 되어있음

결정세번: 제8708.5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7부 주3 / 제8708호 해설서

- 본 물품은 트랙터의 종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 장치를 거쳐 전달된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고 바퀴를 통해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축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구동차축의 shaft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만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⑤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8708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 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 20 | For the industrial assembly of: Vehicles of heading 8703; Vehicles of heading 8704 with either a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2 500 cm ³ or with a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2 800 cm ³ ; Vehicles of heading 8705 | 0 |
| 2000 |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 35 | Other; Drive-axles with differential, whether or not provided with other transmission components, and non-driving axles | 0 |
| | | 55 | Other; Parts: Of closed-die forged steel | 0 |

| | | | | |
|--|--|----|--|---|
| | | 10 | Car axle side-shaft fitted with a constant velocity joint at each end,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of CN heading 8703 | 0 |
| | | 90 | Other | 0 |
| | | 91 | Other: For non-driving axles | 0 |
| | | 99 | Other | 0 |
| | | 10 | Transmission shaft in carbon fibre reinforced plastics consisting of a unique piece without any joint in the middle - of a length of 1 m or more but not more than 2 m, - of a weight of 6 kg or more but not more than 9 kg | 0 |
| | | 90 | Other | 0 |

아. 정밀기기산업

1) 편광판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DE17961/14-1

신청물품: 고글용 편광판

- 스키 고글을 생산하는 편광판. 사각으로 잘라낸 (19cm X 7cm)의 금속 내지는 블루 광택 패넬의 형태로서 편광필름으로 구성되며 안정화된 폴리 카보네이트 층과 경질 층을 코팅처리. 플레이트 (0.8 mm 두께)는 고글 추가 처리를 위해 사용된다. 그들은 반사 표면을 보는 동안 반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형은 부록의 그림을 참조. 코드 번호 9001 2000 10 0 로의 분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일정한 시점에 보호막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인데, "편광 특성을 갖는 광학 필름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9001.20-002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001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3D FILM PATTERNED RETARDER

- 하나의 판에 홀수, 짝수 라인을 구분하고 홀수 라인에는 우원 편광이 짝수라인에는 좌원 편광이 일어나도록 하여 다른 편광판으로부터 나온 투과축(LCD로부터 나온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편광시킨 축)이 홀수, 짝수 라인 별로 다르게 분리되도록 하는 편광필름
 - 홀수, 짝수 line에 각각 입력된 좌우 영상정보를 공간적으로 서로다른 편광 상태로 분리시켜 편광 안경의해 3D 입체 영상으로 인식되도록 해주는 역할

결정세번: 제9001.2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001호 해설서

- 본 물품은 3D 입체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LCD용 편광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0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20-000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9001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001호 -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9001.20 -- 편광재료제의 판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 00 | Sheets and plates of polarising material | |
| | | 10 | Material consisting of a polarising film, whether or not on rolls, supported on one or both sides by transparent material, whether or not with an adhesive layer, covered on one side or on both sides with a release film | 0 |
| | | 20 | Optical, diffuser, reflector or prism sheets, unprinted diffuser plates, whether or not possessing polarising properties, specifically cut | 0 |
| | | 40 | Polarizer film, in rolls, consisting of a multilayered polyvinyl alcohol film, supported on either side by a triacetyl cellulose film, with a pressure sensitive adhesive and release film on one side | 0 |
| | | 90 | Other | 0 |

2) 안경테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DE25983/15-1

신청물품: 금속 안경테

- 금속 안경테, 품번 7500 06 5600. 기본적으로 비금속 안경테로 구성됨 (범위를 이유로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로 귀에 걸치는 측면부위를 보호. 그 부분은 특히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다. 안경테에는 교정 렌즈가 장착된다. 외형은 부록에 수록된 그림 참조. 이 제품은 비금속 안경테로서 교정안경 제조시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9003.19-002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2 나 / 통칙 3 나 / 통칙 6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Combination optical frame

- 렌즈를 삽입하고 지지하는 안구형태의 전면부(재질:플라스틱)와 귀 위에 얹히는 다리(재질: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된 안경테
 - 전면부의 안구 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재질의 렌즈 모형이 결합되어 있음
 - 가격구성비 : 전면부 약39%, 다리 약 28%, Tip 약 8%

<그림> 안경테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9003.11-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003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재료 즉, 플라스틱재질의 안구형태의 전면부와 스테인레스 스틸재질의 다리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가격구성면, 기능 등을 고려하여 렌즈를 테 안에 끼워 넣는 전면부인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의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광학적으로 연마된 렌즈(Lens)가 결합된 안경이 분류되는 바, 본품은 렌즈 장착전 안경테를 지지해주기 위해 플라스틱재질의 렌즈대용품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90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안경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3.11-000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003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003호 -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 9003.11 -- 플라스틱제의 것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플라스틱제의 것 | 00 | Of plastics | 0 |
| | | 10 |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rrective glasses | 0 |
| | | 90 | Other | 0 |

- 9003.19 -- 기타 재료제의 것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귀금속을 사용한 것 | 00 | Of base metal | |
| 9000 | 기타 | 20 |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orrective glasses | 0 |
| | | 30 | Other | 0 |
| | | 90 | Of other materials | 0 |

3) 정밀 측정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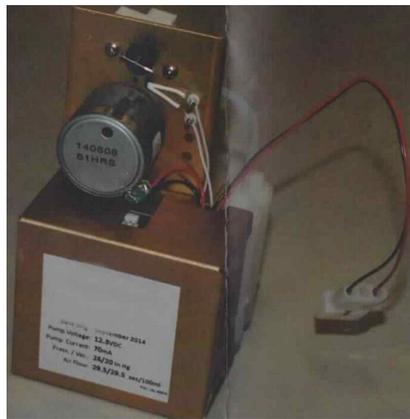
① EU 사전심사 사례-1

□ 참조번호: DE21917/14-1

□ 신청물품: 오존 측정기

- 날개 포장을 위한 조립품, 소위 오존 측정기구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징을 규정하는 측정기구로 구성되며 펌프 배터리, 샘플 튜브와 소위 플라스틱 소재의 플러그 박스(191 X 191 X 254mm)가 내용물로 포장되어 있다. "오존 존데"(76 X 79 X 133mm)는 실질적으로 전기 화학적 측정 전지, 모터구동의 펌프, 전자 상자, 공기 주입관 및 두 개의 연결 케이블(부록 그림 참조)로 만든 금속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공기 중의 오존 농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오존 존데"는 기상 라디오 측정기구, 풍선과 낙하산 (모든 것이 vZTA 의 대상은 아님)과 함께 사용되며 기상 측정도구로 나타낸다. 제품은 가스 또는 연기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을 위한 전자 장치이다.

<그림> 오존측정기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9027.10-1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5 나 / 통칙 6 / 제 90류 주2 가 / 9027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 참조번호: DE9070/15-1

□ 신청물품: 가스 모니터링 장비

- 멀티 가스 2030 FTIR 분광계는 450mm X 650mm X 320mm (가로 x 세로 x 높이) 크기의 큰 하우징으로 구성됨(외관은 부록의 그림 참조). 이에는 방사선 출력기, 방사선 입력기, 간섭계, 기준 방사선 입력기, 온도 조절기와 방사선 검출기가 사용된다. FTIR 분광계는 중간층의 적외선 영역에서 서로 다른 가스 성분 흡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흡수를 이용하여 측정 가스 성분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가스 또는 연기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을 위한 전자 기기"로 분류된다.

□ 결정세번: 제9027.10-1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③ EU 사전심사 사례-3

□ 참조번호: DE14469/15-1

□ 신청물품: 자동차 배출가스 검측기

- NOx 센서로 일컬어지는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금속 하우징 안에 지르코늄 세라믹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600-900mm 길이의 케이블 부품도 포함됨. 센서는 배기 가스 중에 존재하는 질소 산화물을 측

정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된 값을 측정한다. 이것은 전자 제어 유닛으로부터 엔진 제어기(vZTA의 대상은 아님)에 전송 된다. 이 물품은 가스나 연기의 물리학적, 화학적 조사를 위한 비전자적 기기로 분류된다. 차량의 가스나 연기의 검사를 위한 센서는 기본적으로 지르코늄 세라믹 소자로 구성됨.

결정세번: 제9027.10-901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Oxygen Sensor ; OZA629-W3B

- 촉매 정화효율이 가장 좋은 이론 공연비를 제어하기 위해 차량의 배기가스내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이를 ECU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산소센서(지르코니아)내의 기준산소(대기)와 배기 가스측의 산소분압(산소농도)차에 의해, 농도가 높은 기준 산소측에서 농도가 낮은 배기 가스측으로 산소이온이 이동, 기전력이 발생하여 농도 측정

결정세번: 제9027.1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02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가스내 산소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로 분류함.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Ultra-High Purity Gas Analyzer

- Gas를 대상으로 수분과 반응하는 파장대의 Laser와 반응하지 않는 파장대의 Laser를 이용하여 레이저빔의 응답속도 차를 이용, Gas성분 중 수분의 함유량을 분석

결정세번: 제9027.1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027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수분과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파장대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Gas 성분 중 이물질로 존재하는 수분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가스 분석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⑥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3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Gas analysis apparatus; Gas Detector Module, iCheckU

- 스마트 폰과 앱(App iCheckall)을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명령에 따라 ①VOCs, LNG-LPG 가스 또는 ②음주(알코올)/구취농도를 측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디바이스
 -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측정값을 통하여 가스(LPG 프로판, LNG-메탄), VOCs(대기환경), 음주(알코올), 구취농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여 가스누출사고 방지, 대기오염도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기능 수행

결정세번: 제9027.1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3 / 제90류 주3 / 제9027호 해설서

- 제90류 주 제3호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본 물품에 내장되어 있는 가스센서로 부터 여러 종류(가스, VOCs 등)의 가스를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감지되는 원리, 제작자의 판매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 기능은 가스 또는 매연 분석을 위한 기기라고 판단되므로 제9027.10-0000호에 분류

⑦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02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027호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톱
 - 9027.10 --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000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 10 | Electronic | 0 |
| | | 90 | Other | 0 |
| | | 10 | Sensor element for gas or smoke analysis in motor vehicles, essentially consisting of a zirconium-ceramic element in a metal housing | 0 |
| | | 90 | Other | 0 |

4) 운행기록계

① EU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LRTD-2014-2561
- 신청물품: 운행기록계
 - 인조물로 이루어진 숙박시설에서는; - ARM7TDMI-S 32 bits 중앙 연산 처리장치; - 8 디지털-, 4 아날로그- 그리고 한 개의 펄스 인풋 그리고 4개의 개방 콜렉터 아웃풋 그리고 한 개의 3.7 볼트 aux 전원 장치; - 한 개의 Quad 밴드 GSM/GPRS 모뎀 850/900/1800/1900; -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반의 위성 네비게이션; - 디지털 데이터의 전달을 위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부스; - 한 개의 CR2032 백업 배터리; - 시작 시간, 중단 시간, 주행 거리, 여행 시간, 정지 시간, 고정 시간, 최고 속도, 지오 펜싱 기술의 기록을 포함; -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상호 결합되어 있으며, 시간투자의 인식과 주행거리; - 불도저, 크레인, 포크레인, 기타 등등의 상업적 운송수단 장비에서는; - 12 x 9,5 x 2,5 cm 크기 그리고 무게는 134 그램. 해당 제품은 소매단위로 판매하게 설계되었으며 그 포장은 두꺼운 마분지로 하며 GSM, GPS 안테나, 그리고 연결 케이블처럼 특성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과 함께 포장한다. 해당 시스템의 대표적인 주요 기능은 태코그래프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합동 분류법의 GN - 9029 20 38세분화 방식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을 준수한다.
- 결정세번: 제9029.20-38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16부 주3 / 9029호 해설서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029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029호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 9029.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 31 | Speed indicators for vehicles | 0 |
| 10 | 시계식 | 10 | Clustered instrument panel with the microprocessor control board, stepping motors and LED indicators showing at least: - speed, - engine revolutions, - engine temperature, - the fuel level communicating via CAN-BUS and K-LINE protocols, of a kind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of Chapter 87 | 0 |
| 90 | 기타 | 90 | Other | 0 |
| 2000 | 스트로보스코우프 | 38 | Other | 0 |
| | | 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 | 90 | Other | 0 |
| | | 90 | Stroboscopes | 0 |

5) TFT PANEL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ITIT-2014-0468M-222100

신청물품: X-레이 패널

- 회사에서 신고한 것과 같이, 상품은 디지털 X선 영상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장비는, 무정형 실리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요오드화 세슘에 탈륨 섬광체가 직접 축적되어 작동하며, 얇은 필름 개폐기(TFT)에 이차원 포토 다이오드 센서로 된 영상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 그 장비 무게는 1.7kg이며 크기는 183 X 175 X 54mm이다. 장비 커넥터는 장비 후면에 있다: 지상 샷시, 이더넷과 전원

결정세번: 제9022.90-001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9022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협의회

물품설명: TFT-PD ARRAY PANEL

- 본건 물품은 유리기관위에 수만개의 TFT(박막트랜지스터)와 포토다이오드가 TFT LCD 제조공정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증착된 것으로 구성요소는 크게 TFT(박막트랜지스터)와 PIN접합방식의 Photodiode로 나눌 수 있으며, 포토다이오드는 입사된 가시광선을 전류로 전환하고 트랜지스터(TFT)는 전류를 외부로 흘려 보내주는 스위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본건 물품은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X-Ray Detector에 사용되는 것으로 신디레이터를 통해 변환된 가시광선을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세번: 제8543.70-9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8543호 해설서

- 본건 물품은 트랜지스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두 종류의 소자(박막트랜지스터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결합되어 패넬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본건 물품은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능·수동 소자를 집적한 것이 아니라, 유리기관위에 TFT(박막트랜지스터)와 포토다이오드가 장착된 것이므로 제8542호에도 분류할 수 없으며 초소형으로 조립된 회로가 아니라 유리클래스 위에 다수의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와 트랜지스터가 결합된 것이므로 HSK 8543.90-1000에 명시된 전자초소형 조립회로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포토다이오드와 TFT Array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추후 부착될 신틸레이터(형광체)에 의해 변환된 가시광선을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8543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8543호 -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8543.70 -- 기타의 기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 | 10 | Electrical machines with translation or dictionary functions | 0 |
| 20 | 가정형 | 30 | Aerial amplifiers | 0 |
| 10 | 이온정수기 | 50 | Sunbeds, sunlamps and similar suntanning equipment | 0 |
| 20 | 미용기기 | 60 | Electric fence energisers | 0 |

| | | | | |
|------|----------------|----|--|---|
| 30 | 오디오믹서 | 90 | Other | 0 |
| 40 | 이퀄라이저 | 03 | Plasma cleaner machines that remove organic contaminants from electron microscopy specimens and specimen holders | 0 |
| 50 | 오존 발생기 | 04 | Touch-Sensitive Data Input Devices (so-called touch screens) without display capabilities, for incorporation into apparatus having a display, which function by detecting the presence and location of a touch within the display area | 0 |
| 90 | 기타 | 05 | Flight recorders, electric synchros and transducers, defrosters and demisters with electric resistors,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3000 | 전자번역기·전자사전 | 06 | Articles specifically designed for connection to telegraphic or telephonic apparatus or instruments or to telegraphic or telephonic networks | 0 |
| 40 | 전자담배 | 07 | Microwave amplifiers | 0 |
| 10 |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 08 | Cordless infrared remote control devices for video game consoles | 0 |
| 90 | 기타 | 09 | Digital flight-data recorders | 0 |
| 90 | 기타 | 10 | Engine pressure indicators, for use in certain types of aircraft | 0 |
| 10 | 고주파증폭기 | 11 | Portable battery operated electronic reader for recording and reproducing text, still image or audio file | 0 |
| 20 |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 12 | Digital signal processing apparatus capable of connecting to a wired or wireless network for the mixing of sound | 0 |
| 30 | 전기신경자극기 | 13 | Portable interactive electronic education devices primarily designed for children | 0 |
| 90 | 기타 | 20 | Unit consisting of two junction field effect transistors contained in a dual lead frame housing | 0 |
| | | 30 | Amplifier,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35 | Radio frequency (RF) modulator, operating with a frequency range of 43 MHz or more but not more than 870 MHz, capable of | 0 |

| | | | | |
|--|--|----|---|---|
| | | | switching VHF and UHF signals,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contained in a housing | |
| | | 40 | High-frequency amplifier comprising one or more integrated circuits and discrete capacitor chips on a metal flange in a housing | 0 |
| | | 45 | Piezo-electric crystal oscillator with a fixed frequency, within a frequency range of 1,8 MHz to 67 MHz,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55 | Opto-electronic circuit comprising one or more light-emitting diodes (LEDs), whether or not equipped with an integrated driving circuit, and one photodiode with amplifier circuit, whether or not with an integrated logic gate arrays circuit or one or more light-emitting diodes and at least 2 photodiodes with an amplifier circuit, whether or not with an integrated logic gate arrays circuit or other integrated circuits,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60 | Oscillator, with a centre frequency of 20 GHz or more but not more than 42 GHz,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not mounted on a substrate,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63 | Voltage controlled frequency generator,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contained in a housing with dimensions of not more than 30 x 30 mm | 0 |
| | | 65 | Audio recording and reproducing circuit, capable of stereo audio data storage and simultaneous record and playback, comprising 2 or 3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or a lead frame,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80 | Temperature compensated oscillator, comprising a printed circuit on which are mounted at least a piezo-electric crystal | 0 |

| | | | | |
|--|--|----|--|---|
| | | | and an adjustable capacitor, contained in a housing | |
| | | 85 |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 (VCO), other than temperature compensated oscillators, consisting of active and passive element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contained in a housing | 0 |
| | | 95 | Mobile telephone view and control module comprising of: - a mains power/ CAN (Controller area network) output socket, - a Universal Serial Bus (USB) and Audio IN/OUT ports and - incorporating a video switching device for the interface of smart phone operating systems with the Media Orientated Systems Transport network (MOST),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vehicles of chapter 87 | 0 |
| | | 99 | Other | 0 |

6) 혈액가스 분석기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GB123048801

신청물품: 혈액가스 측정기

- 전해질, 글루코스 등 혈액가스 측정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특징 : 자동 샘플링, 모세 혈관과 주사기를 위한 하나의 포트, 자동 혈전 탐지와 정리, 마이크로샘플 탐지와 거품 탐지. 9개의 분해물질 전 체에 하나의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내장 시스템. 터치로 작동되는 시스템-모든 관련된 기능 모드를 표시하는 스크린. 정보 관리 시스템인 고속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개시되는 자동 수분 함유 질 관리. 빠른 환자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바코드 스캐너와 품질 조절 샘플 인식. 의료 직원에 의한 병원의 온 단위 적용을 위해 설계.

결정세번: 제9018.19-9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018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협의회

물품설명: 혈액가스 분석기

- 병원에서 환자의 호흡(가스교환) 상태, 폐에서의 산소화, 체내의 산-염기평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화학법을 기초로 하여 혈액 내에 존재하는 혈액가스(pO₂, pCO₂) 및 PH, 전해질(Na⁺,K⁺,Ca⁺⁺,Cl⁻), Hematocrit을 각각의 전극을 이용하여 전위차법(Potentiometry)과 전류측정법(Amperometry)으로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는 제외진단 혈액가스 분석기임

결정세번: 제9027.80-1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027호 해설서

-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 (q)에서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는 검사 및 진단을 하는 장소의 명칭을 반드시 ‘실험실’로 한정하지 않고, 혈액, 체액, 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는 주로 성분을 측정, 검사하는 것이므로 제9018호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

- 화학분석은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화합물의 조성을 밝히거나 혼합물 중 특정 화합물의 존재의 확인이 목적이 고, 후자는 혼합물에 존재하는 화합물에 대해서 각각의 양을 결정 하는 것이 목적임.

- 본 물품은 혈액 내에 존재하는 혈액가스 및 PH, 전해질, Hematocrit을 각각의 전극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정량 정성분석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 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80-100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9018호 및 제902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018호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 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9018.19 -- 기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뇌파계 | 10 | Monitoring apparatus for simultaneous monitoring of two or more parameters | |
| 2000 | 청력검사용 기구 | 90 | Other | |
| 4000 | 혈압 측정기기 | | | |
| 7000 | 환자 감시장치 | | | |
| 8000 | 기타 | | | |
| 9000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제9027호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툼

- 9027.80 - 그 밖의 기기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그 밖의 물리분 석용·화학분석 용 기기 | 05 | Exposure meters | 0 |
| 20 | 그 밖의 측정용 · 검사용 기기 | 11 | Other: Electronic: pH meters, rH meters and other apparatus for measuring conductivity | 0 |
| 10 | 피·에이치(PH) 미터 | 13 | Other: Electronic: Apparatus for performing measurements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semiconductor materials or of LCD substrates or associated insulating and conducting layers during the semiconductor wafer production process or the LCD production process | 0 |
| 20 | 열량계 | 17 | Other: Other | 0 |
| 30 | 점도계 | 91 | Other: Viscometers, porosimeters and expansion meters | 0 |
| 40 | 팽창계 | 99 | Other | 0 |
| 50 | 노출계 | | | |
| 90 | 기타 | | | |

자. 생활용품산업

1) LED 모듈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PLPL-WIT-2015-01679

신청물품: LED 모듈

- LED 스트립을 형성하는 조명시스템은 출력 회로 기판에 표시된 플라 스틱으로 만들어짐. 각 기능을 가진 모듈 바는 전원 공급 장치에 연 결하기 위하여 소형 전자 회로 및 출력에 관여하는 발광 다이오드 (LED)를 포함. 전자 부품은 트랜지스터, 저항 및 다이오드 체결을 포 함. LED 스트립은 보호를 위해 덮어 놓은 제거 가능한 분리형 종이를 접착제 층의 전체 길이에 맞춰 아래에 장착함. 상부 표면은 방수 겔을 덮어놓음.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빛을 제공. 전원 공급 12 V. 스트립의 폭: 80 또는 100mm, 길이: 5000mm

결정세번: 제9405.40-39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9405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PLPL-WIT-2015-00157

신청물품: LED 램프

- 조명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짐. 두 개의 LED 램프에 설치된 투명 한 커버를 공급함. 이에 광원은 포함되지 않음.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 한 건물 실내 외에서 사용이 가능함. 전원 전력 230 V AC. 치수 (mm): 1270 x 165 x 108 또는 1570 x 108 x 85.

결정세번: 제9405.40-39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405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 참조번호: PLPL-WIT-2015-00439

□ 신청물품: LED 모듈

- 원형 LED 모듈 (LED MOD 1151)은 강력한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유리 섬유 합판의 표면을 조립한 다이오드 형태로 만들어 짐. 양측 전원에 공급되는 양극판. 모듈은 조명 내부에 사용됨. 기본 작동 매개변수 - 온도: 3000 K, 공급 전압: 33.0 V, - 공급 전류: 350Ma, -무게: 35g. 기본 치수 (다이오드 직경 x 높이): 130,0 mm x 5,7 mm. 40개의 LED 를 한 단위로 포장함.

□ 결정세번: 제9405.40-39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9405호 해설서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LED MODULE PCB ASSY

- 폴리염화비페닐 재질의 인쇄 회로기판에 34개의 LED(발광다이오드)와 5개의 Resistor(저항)이 결합되어 있음(250mm×40mm)
 - 가정 및 일반 사무실 등에서 조명용의 LED 등기구의 광원으로서 사용됨

□ 결정세번: 제9405.40-9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405호 해설서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서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 853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는 LED램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⑤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LIGHTING FIXTUR(DECO LAMP)

- 램프홀더 · 전자식안정기 · 고정클립 · 출력단감전보호기구 ·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120V/0.129A)
 - 양 끝단에 전원연결커넥터가 부착되어 BUS WIRE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등기구를 연결시킬 수 있음(BUS WIRE는 미세시)
-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의 진열장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여 진열장 내에 진열된 물품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잘 보여지도록 형광빛으로 간접조명하는데 사용

□ 결정세번: 제9405.40-9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405호 해설서

- 본 건 물품은 램프홀더에 전자식 안정기를 내장한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소호의 결정에 있어 본 건물품은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매장의 진열장에 설치되는 것으로
- 관세율표 제9405.10호 내지 제9405.30호의 조명기구로 볼 수 없는 기타의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

⑥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405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405호 -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 ·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

이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9405.40 --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 1000 | 방폭형 | 10 | Searchlights and spotlights | 0 | |
| 2000 | 투광형 | 31 | Other; Of plastics; Of a kind used with filament lamps | 0 | |
| 3000 | 가로등의 것 | 35 | Of a kind used with tubular fluorescent lamps | 0 | |
| 9000 | 기타 | 10 | Electric light assembly of synthetic material containing 3 fluorescent tubes (RBG) of a diameter of 3,0 mm (±0,2 mm), of a length of 420 mm (±1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00 mm (±1 mm), for the manufacture of goods of heading 8528 | 0 | |
| | | | 90 | Other | 0 |
| | | | 39 | Other | 0 |
| | | | 10 | Ambient light module with a length of 300 mm or more but not more than 600 mm, based on a light engine of a series of 3 or more but not more than 9 specific one chip red green and blue light emitting diodes mounted on a PCB, with light coupled to the front and/or back of the flat TV set | 0 |
| | | 20 | LED array of white silicone, containing: - an LED matrix module measuring 38,6 mm !x! 20,6 mm (±0,1 mm), equipped with 128 red and green LED chips, and - a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equipped with a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 0 | |
| | | 70 | Printed circuit board with LED diodes: - whether or not equipped with prisms/lens, and - whether or not fitted with connector(s) for the manufacture of backlight units for goods of heading 8528 | 0 | |
| | | 90 | Other | 0 | |
| | | 91 | Of other materials: Of a kind used with filament lamps | 0 | |
| | | 95 | Of a kind used with tubular fluorescent lamps | 0 | |
| | | 99 | Other | 0 | |
| | | 10 | Hand-made | 0 | |
| | | 90 | Other | 0 | |

2) 리본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23836/14-1

신청물품: 리본

- 신청자 정보에 따르면 이 제품은 얇은 금속 (알루미늄)과 함께 분리층이 형성되어 인쇄기에서 냉간 스탬핑을 하는 데 사용되는, 폴리 에스테르 필름의 형태의 롤링 밴드이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색밴드로 인쇄하는 데 이용되며, 타자기에 사용되는 리본으로 분류된다. 9612 1010 10 에 의거한 하위그룹(TARIC)의 색밴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결정세번: 제9612.10-1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612호 해설서

①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DE9010/15-1

신청물품: 리본

- 요청 정보에 따르면 본 제품은 포일 형태의 카세트 테이프 필름 유형으로 한쪽면에 폴리에스터수지에 기반한 적색안료로 코팅되어 있다. 이 제품은 열전사 프린팅시 TTF-프린터로 이용된다. 도료는 인쇄 할 재료에 프린트 헤드의 각 가열점(가열 도트)이 가열되어 전송된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카세트 리본, 인쇄용 타자기 밴드로 분류되며, 9612 1010 10 에 의거한 하위그룹 (TARIC)에 해당하는 색밴드는 아니다.

결정세번: 제9612.10-1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612호 해설서

③ EU 사전심사 사례-3

참조번호: DE9618/15-1

신청물품: 리본

- 요청 정보에 따르면 제품기호 BEX60060RG2F 는 열전사 포일 형태로 된 플라스틱 테이프 필름 유형이다. 제품은 소위 바코드 프린터에서 열전사 인쇄에 사용된다. 도료는 인쇄 할 재료에 프린트 헤드의 각 가열점(가열 도트)이 가열되어 전송된다. 제품은 "플라스틱 카세트 리본, 인쇄용 타자기 밴드"로 분류되며 9612 1010 10 에 의거한 하위그룹 (TARIC)에 해당하는 색밴드는 아니다. 부록 사진 1 참조.

결정세번: 제9612.10-10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612호 해설서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물품설명: Typewriter or similar ribbons; THERMAL TRASFER FILM MATERIAL

- 일면에 흑색 잉크를 도포한 플라스틱 필름(두께 약 0.005mm, 제시규격: 880mm×18,000m/Roll)

- 용도 : 열전사프린터용 잉크필름(리본)

결정세번: 제9612.10-9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612호 해설서

- 제9612호 해설서에 따르면 리본은 보통 방직용 섬유 의 직물제이나 때로는 플라스틱제 또는 지제의 것도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은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어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열전사 프린터용으로 사용되는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 일면에 흑색 잉크가 침투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 9612.10-9000호에 분류함

⑤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9612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612호 -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리지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상자들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9612.10 -- 리본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타자기용 | 10 | Of plastics | 0 |
| 2000 | 자동자료처리기계용 | 10 | Ribbons of plastic with segments of different colours, providing the penetration of dyes by heat into a support (so called dye-sublimation) | 0 |
| 9000 | 기타 | 90 | Other | 0 |
| | | 20 | Of man-made fibres, measuring less than 30 mm in width, permanently put in plastic or metal cartridges of a kind used in automatic typewriters, automatic data-processing equipment and other machines | 0 |
| | | 80 | Other | 0 |

3) 낚시대

① EU 사전심사 사례

참조번호: DE11798/15-1

신청물품: 낚시대

- 낚시대. 조립품 형태로 구성된 "라텍스 재질의 낚시대". 망원경 낚시대로 불리는 이 낚시대는 유리섬유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손잡이는 플라스틱 소재이다. 길이 175 cm로 확장 가능하다. 다섯 개의 가이드링을 통과하게 되는 약 3미터 길이의 적색 낚시줄과 14cm 길이의 찌가 제공됨 - 요청정보에 따르면 라텍스 재질로 제조됨. 낚시 줄에 매듭이 있음. 낚시로 개의 게임과 사냥본능이 일깨워진다. 사용과 관련된 범위와 의미로 인해 망원 낚시대는 조립제품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 제품은 "낚시대"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9507.10-00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3 나 / 통칙 6 / 제9507호 해설서

② 품목분류 체계비교

제9507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507호 - 낚시대·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낚시용의 망·포충망과 이와 유사한 망 및 조류유인용구(제9208호 또는 제9705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 9507.10 -- 낚시대

| 한 국 | | E U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유리섬유로 만든 것 | 하위 분류 없음 | 0 |
| 2000 | 카본으로 만든 것 | | |
| 9000 | 기타 | | |

4) 장난감

① EU 사전심사 사례-1

참조번호: DE3695/16-1

신청물품:

- 장난감 철도에 이용되는 부속물품. 두 개의 전철기 형태. 주로 목재재질로 제조됨. 적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회전버튼과 이동식 판넬 장착. 한쪽 끝에는 등근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쪽 끝은 등근 플러그 헤드가 장착되어 있다. 이것은 다양한 재질로 된 장난감 철도용 부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기로도, 수동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철도를 식별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제품은 그 고유의 특성에 따라 제 9503번 내용으로 분류된다.

결정세번: 제9503.00-999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2 나 / 통칙 3 나 / 통칙 5 나 / 통칙 6 / 제95류 주3 / 제9503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참조번호: FR-RTC-2016-004755

신청물품:

- 다양한 형태, 크기 및 색상의 끼워넣을 수 있는 변형 블록으로 구성된 건설 장난감. 블록, 동물, 작은 기차 1개 및 인형 2개 조합이 가능하다. 운동 및 감각 능력, 조합, 논리, 논증, 창의성, 사회성을 개발한다. 내용물: 110 피스. 재료: 열가소성 TPR + PVC

결정세번: 제9503.00-3500호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 자료출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설명: Genies House

- 자석블록 41PCS와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집, 풍차, 성, 학교 등 여러가지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조립할 수 있는 자석블럭으로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발달, 창의성발달 등에 도움을 줌(3세이상 사용)

□ 결정세번: 제9503.00-33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제9503호 해설서

- 제9503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를 예시
 - 본 물품은 자석블럭으로 여러가지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조립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타의 조립식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④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503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503호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 |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완구 (예: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인형용 차 | 10 | Tricycles, scooters, pedal cars and similar wheeled toys; dolls' carriages | |

| | | | |
|------|--|----|---|
| 1100 |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 21 | Dolls representing only human being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Dolls |
| 1200 | 스쿠터 | 10 | Ornamental dolls dressed so as to reflect the folklore characteristic of the country of origin, hand-made |
| 1300 | 페달차 | 90 | Other |
| 1400 | 인형용 차 | 29 | Parts and accessories |
| 1800 | 기타 | 30 | Electric trains, including tracks, signals and other accessories therefor; reduced-size (scale) model assembly kits |
| 1900 | 부분품과 부속품 | 35 | Other construction sets and constructional toys: Of plastics |
| 2 | 사람모형의 인형 | 39 | Of other materials |
| 21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는 상관 없다) | 10 | Hand-made, of wood |
| 10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90 | Other |
| 20 | 고무로 만든 것 | 41 | Toys representing animals or non-human creatures: Stuffed |
| 3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49 | Other |
| 40 | 도자제의 것 | 10 | Hand-made, of wood |
| 50 | 유리로 만든 것 | 90 | Other |
| 60 | 유리로 만든 것 | 55 | Toy mus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
| 90 | 기타 | 10 | Hand-made, of wood |
| 29 | 부분품과 부속품 | 90 | Other |
| 10 |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 61 | Puzzles; Of wood |
| 90 | 기타 | 10 | Hand-made |
| 3 | 그 밖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다)와 각종 퍼즐 | 90 | Other |
| 31 | 전기식 기차(궤도·신호기와 부속품은 포함한다) | 69 | Other |
| 10 | 전기식 기차 | 70 | Other toys, put up in sets or outfits |
| 90 | 부속품 | 75 | Other toys and models, incorporating a motor; Of |

| | | | |
|------|---|----|---|
| | | | plastics |
| 3200 |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 10 | Cable car scale models for printing |
| 3300 |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 90 | Other |
| 34 |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 79 | Of other materials |
| 1 | 속이 채워져 있는 것 | 81 | Other; Toy weapons |
| 11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10 | Hand-made, of wood |
| 19 | 기타 | 90 | Other |
| 9 | 기타 | 85 | Die-cast miniature models of metal |
| 91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95 | Other; Of plastics |
| 92 | 고무로 만든 것 | 10 | Cable car scale models for printing |
| 93 | 고무로 만든 것 | 20 | Portable interactive electronic education devices primarily designed for children |
| 94 | 금속으로 만든 것 | 90 | Other |
| 95 | 도자제의 것 | 99 | Other |
| 96 | 유리로 만든 것 | 10 | Hand-made, of wood |
| 97 | 나무로 만든 것 | 90 | Other |
| 99 | 기타 | | |
| 3500 | 완구용 악기류 | | |
| 3600 | 퍼즐 | | |
| 3700 |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3800 |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39 | 기타 | | |
| 1 | 그 밖의 완구 | | |
| 11 |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 | |
| 19 | 기타 | | |
| 90 |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5) 플라스틱 가구

① EU 사전심사 사례-1

□ 참조번호: PLPL-WIT-2014-00818

□ 신청물품: 유아용 점퍼(바운서)

- 아이를 위한 제품, 장난감 점퍼.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든 제품. 세 개의 스프링이 시트에 부착되어 있고, 금속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튜브로 구성되어 있음. 조절이 가능한 시트는 아이의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공간(홀)이 있고, 놀이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이 삽입됨. 다양한 기능의 장난감이 데스크톱에 부착됨 (플라스틱 및 섬유), 추가적으로 데스크톱의 하단에는 장난감의 빛과 소리를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 기능도 있음. 추가적으로 프레임에는 장난감 플러시 천이 부착된 마크가 포함되어 있음. 이 제품은 체중이 11kg이내의 아이들을 위해 설계된 제품임. 이 점퍼는 아이가 점프를 하거나 360도 회전 등을 하여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임.

<그림> 유아용 점퍼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9403.7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403호 해설서

② EU 사전심사 사례-2

□ 참조번호: DE13814/12-1

□ 신청물품: 스툴

○ 28.5 X 24.5 X 21cm (길이 x 폭 x 높이) 플라스틱 재질의 큰 의자. 접이식이며 사다리꼴 형태. 발걸이가 있으며 상단에 운반이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음. 이 제품은 바닥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낮은 높이 때문에, 그리고 그로인한 앉은 자세 때문에 9401에 따른 의자용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로서 민간항공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9401과 9402에서 다루는 가구와는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분류된다.

<그림> 스툴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9403.70-00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4류 주2 / 제9403호 해설서

③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1

□ 자료출처: 품목분류 협의회

□ 물품설명: SPACESAVER JUMPEROO

○ 본 물품은 3개의 기둥이 있는 플라스틱제 틀, 스프링, 선반이 결합된 시트 등으로 구성되어 주로 실내 바닥에 놓고 쓰이도록 설계된 아기용 시트임. 시트부의 전면은 2개의 기둥에 고정되고 후면은 스프링으로 나머지 기둥 1개에 연결되어 있으며, 선반에 각종 장난감들이 설치되어 있음. 스프링을 통한 바운스 기능과 각종 장난감으로 아기의 흥미를 유발하여 아기가 지속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도록 제작됨. 신장 81cm, 11.3kg 미만의 생후 3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적합하며, 아기의 성장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휴대가 가능하도록 접이식으로 되어있음

<그림> 유아용 점퍼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9401.80-9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401호 해설서

○ 본 물품은 각종 보조놀이기구가 장착되어 아기를 앉혀두기 위해 실용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그 밖의 의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④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2

□ 자료출처: 품목분류 협의회

□ 물품설명: BOLMEN STEP STOOL

- 4개의 다리가 있는 수직제 사각기둥형상의 사출성형물로서 하중 약 150kg까지 가능한 물품으로 상부 디딤면은 평평하고, 지름 약2cm의 원형의 녹색계고무가 일직간격으로 총35개 붙어 있으며 바닥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녹색계 고무가 부착되어 있음 (크기: 35cm*44cm*25 cm)

<그림> 스티 (신형 물품)



□ 결정세번: 제3924.90-9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3924호 해설서

- 본 물품은 수직제 사각기둥형상의 사출성형물로서 아동들이 세면대나 변기를 이용할 때 또는 물건을 올리거나 내릴 때 용이하게 디딤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가정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⑤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403호, 제9401호, 제3924.90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403호 -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9403.70 -- 플라스틱제의 가구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보행기 | 0010 | For use in civil aircraft | 0 |
| 9000 | 기타 | 0090 | Other | 0 |

- 제9401호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9401.80 -- 기타의 의자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석재로 만든 것 | | 하위 분류 없음 | 0 |
| 9000 | 기타 | | | |

- 제3924호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 3924.90 -- 기타

| 한 국 | | E U | | 협정세율 (KOREU) |
|------|--------------------|------|--|--------------|
| 1000 | 비누접시와 통 | 0010 | Ironing boards, including sleeve boards, whether or not free standing, and legs and tops thereof | 0 |
| 2000 | 탁상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0090 | Other | 0 |
| 9000 | 기타 | | | |

6) 페인트볼

① EU 사전심사 사례

□ 참조번호: NLRTD-2009-002722

□ 신청물품: 페인트볼

- Paintballs, 액체 염색 또는-/염료를 포함하는 페인트볼은, 페인트볼 총에서 "탄약"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그 "탄약"은 해당 (외부의)특징들을 포함한다: - 둥근 모양; - 지름은 약 12mm; - 외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쉽게 씻겨지는 수성물감을 재료로 한다. 해당 품목은 소매점에서 취급되며 50개씩 한 팩으로, 즉 블리스터 형식으로 포장된다. 그 페인트볼은 일반 탄약처럼 합동 분류법에서 9306 코드의 세분화 방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해당 제품은 사용방법에 있어 어떤 부상이나 해를 입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페인트볼 총은 BTI 승인을 받아 증명서 번호는 NL-RTD-2009-000730이다. 본 BTI 는 09/379/4095/143코드의 이의 신청에 따라 마련된 NL-RTD-2009-000729 를 대체한 것 이다.

<그림> 페인트볼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9506.99-9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5류 주3 / 제9506호 해설서

② 우리나라 사전심사 사례

□ 자료출처: 품목분류 협의회

□ 물품설명: 페인트볼

- 서바이벌 훈련용 또는 예비군훈련시에 사용되는 페인트볼로 총알임
- 성분: 폴리에틸렌글리콜, 젤라틴, 글리세린, 솔비톨, 이산화티타늄 등

<그림> 페인트볼 (신청 물품)



□ 결정세번: 제9306.90-0000호

□ 결정근거: 관세율표 통칙 1 / 통칙 6 / 제9306호 해설서

- 본 물품이 사용되는 Paintball Marker(페인트볼 건)은 제9304호에 분류되고, 본 물품은 제9304호의 총에 사용되는 총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3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306.90-0000호에 분류함

③ 품목분류 체계비교

□ 제9506호 및 제9306호의 우리나라와 EU 품목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제9506호 -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 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